

## 청소년보호 정책토론 자료집

# 청소년사이버문화 정책의 수립 필요성과 방안

2001. 7. 2

일 시 : 2001. 7. 5(목), 13:30~18:00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국립  
청소년보호위원회

# **청소년사이버문화 정책의 수립 필요성과 방안**

일 시 : 2001. 7. 5(목), 13:30~18:00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 인사말씀

우리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인터넷매체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그동안 다각적인 측면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와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사실 인터넷과 관련한 우리사회의 담론은 인터넷의 발전속도 만큼이나 빠르고 또 많이 전개되어 왔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그동안 단편적이고 지엽적인 문제에 국한되어 논쟁 당사자간의 대립과 오해만 가중시켜 문제해결의 실질적인 대안은 합의해 내지 못하고 오히려 상호간 불신만 키워오지 않았나 생각 되어 집니다.

이에 우리위원회에서는 그동안의 논쟁점을 중심으로 종합적이고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감안, 청소년보호의 맥락에서 종합정리한다는 차원에서 이 토론의 장을 마련 하였습니다.

이러한 토론과 논쟁이 궁극적으로 정보화사회의 연착륙을 견인하고 우리 청소년에게 새로운 매혹의 대상으로 등장한 사이버세계가 멋있고 유익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발제자 및 토론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토론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청소년보호대책을 수립·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 7. 5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 김성이

## 진 행 순 서

■ 인사말씀 ( 김성이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 )----- 13:30 ~ 13:40

■ 발제 및 토론----- 13:40 ~ 17:50

○ 사회자 : 강대기(충실대 교수, 한국정보사회학회 회장)

○ 발 제

- 추병완(춘천교대 윤리교육학과 교수) : 사이버윤리의 정립방안
- 문미원(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대표) : 미디어교육의 정착방안
- 황성기(현법재판소 연구원) : 인터넷유해환경의 자율규제 방안
- 황승흠(성신여대 법대교수) : 인터넷시대의 법·제도정비 방안
- 김성조(중앙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 기술적 접근전략

○ 지정토론

- 사이버윤리
  - 황상민(연세대 심리학과 교수), 신국원(총신대 신학과 교수)
- 미디어교육
  - 이동연(문화연대 사무차장), 김기태(미디어교육학회 총무이사)
- 자율규제
  - 민경배(사이버문화연구소 소장), 최승훈(정보통신윤리위 대외협력팀)
- 법·제도정비
  - 김기중(변호사), 한상희(건국대 법학과 교수)
- 기술적 접근
  - 한동훈(한국통신 인터넷통신팀장), 신종철(송우I&T연구소장)
- 정책분야
  - 오승현(교육부 조정2과장), 라봉하(정통부 정보이용보호과장)

○ 자유토론

■ 폐 회 ----- 17:50

## - 목 차 -

### « 발제문 »

1. 사이버윤리의 정립방안 (추병완 : 춘천교대 윤리교육학과 교수) .....
2. 미디어교육의 정착방안 (문미원 :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대표) .....
3. 인터넷유해환경의 자율규제 방안 (황성기 : 헌법재판소 연구원) .....
4. 인터넷시대의 법·제도정비 방안 (황승흠 : 성신여대 법대교수) .....
5. 기술적 접근전략 (김성조 : 중앙대 컴퓨터공학과교수) .....

### « 지정토론문 »

1. 사이버 윤리 (황상민 :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 .....
2. 사이버 윤리 (신국원 : 총신대 신학과 교수) .....
3. 미디어 교육 (김기태 : 미디어교육학회 총무이사) .....
4. 자율규제 (민경배 : 사이버문화연구소 소장) .....
5. 자율규제 (최승훈 : 정보통신윤리위 대외협력팀) .....
6. 법·제도정비 (김기중 : 변호사) .....
7. 법·제도정비 (한상희 : 건국대 법학과 교수) .....
8. 기술적 접근 (한동훈 : 한국통신 인터넷통신팀장) .....
9. 기술적 접근 (신종철 : 송우I&T연구소장) .....

발 제

## 사이버 윤리의 정립 방안

추 병 완 (춘천교대 윤리교육학과 교수)

### 1. 사이버 공간의 개념 및 발전 과정

#### 가. 사이버 공간의 개념 및 특성

- 어원: 사이버(Cyber)는 키잡이(조타수)를 의미하는 흐랍어 ‘kubernetes’에서 유래한 것임
  - 변변한 지도나 장비 없이 대양을 항해하면서 독자적인 능력을 길러야 했던 흐랍의 조타수들이 기른 자립심이 내포되어 있다.
- 1984년 윌리엄 갑슨(William Gibson)의 소설 『뉴로맨서』(Neuromancer)에서 ‘사이버 스페이스’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되었으며, 그 의미는 ‘가상현실 기반 컴퓨터 네트워크’였다.
- 현재 사이버 공간은 컴퓨터 네트워크가 창출하는 공간적 은유를 의미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집단적으로 구성되는, 네트워크상의 가상 세계로서 일종의 물리적 공간인 동시에 사회적 공간이다.
- 사이버 공간의 발전 과정은 통신을 하고 정보에 접근하게 해 주는 진보적인 경제적 도구(데이터베이스 및 미디어)에서 채팅룸이나 가상 공동체와 같은 하나의 장소(네트워크) 개념으로, 그리고 구체적인 사회적 관계가 이루어지고 실제 생활의 대안이 되는 존재 양식(생활 세계)으로 3단계를 통해 발전하여 왔다.
- 사이버 공간은 영토도, 권력도, 구조도 존재하지 않는 탈영토화, 탈구조화, 탈물질화, 탈육체화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른바 특별한 중심점이 없는 탈중심적·개방적이고 상호 의존적인 네트워크에 의해 이루어져 있다.
- 현실 공간은 나무처럼 견고한 뿌리(본질)에 기초를 두고 가지(현상)를 치는 수목적인 모델이 특징인 반면에, 가상 공간은 ‘뿌리 없는 식물’처럼 특정한 영토(대지) 위에 뿌리를 내리지 않은 채 여기 저기를 돌아다니는 스텝의 식물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음: 개방형으로 구성된 그물형의 네트워크에는 어떠한 중심도 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 전통적인 출판, 영화, TV는 중세 유럽 도시에서 볼 수 있는 교회의 첨탑처럼 도로나 지도상에서 위치를 표시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공공의 규약과 도덕을 이끌어내는 모든 활동의 중심지대였으며, 사람들은 교회의 첨탑을 보면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고 스스로의 의지를 도시의 질서 내에 복종시켜 왔다.

- 이에 비해 사이버 공간의 상징처럼 여겨지고 있는 인터넷은 뉴욕이나 LA와 같은 메갈로 폴리스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바, 어떤 외연적인 중심 없이 마치 정글처럼 얹혀 있는 미로에 의해 서로 연결되어 있음: 정형화된 틀이 없이 어느 하나의 중심점을 상실한 채 온갖 지점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거기에는 오직 ‘관계’만이 존재한다.
- 인터넷은 전 세계를 하나로 연결함으로써 국가의 경계로부터 이탈하고 있기에, 사이버 공간은 국가의 제도적 장치와 규범, 통제로부터 벗어나 있음: 현실 공간에서 인간은 특정한 장소에서 지위와 역할을 부여받은 채 살아가고 있는 ‘정착민’(sedentaries)이지만, 사이버 공간에서의 인간은 특정한 장소에 뿌리를 내리지 않은 채 여기 저기 부동하는 ‘유목민’(nomads)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다.

#### \* 근대적 공간과 사이버 공간의 비교

근대적 공간	사이버 공간
매스미디어(TV, 라디오, 신문 등)	인터넷
일방적인 정보 흐름	쌍방향의 상호작용
직렬 방식(방사형)	병렬 방식(그물형 네트워크)
폐쇄형 시스템	개방형 시스템
물적 집합체	분자적 덩어리
중세 도시(교회의 침략)	메갈로폴리스(megalopolis, 미로)
통제/조정	항해/분산
중심화의 공간	탈중심화의 공간

## 2. 사이버 문화의 현 주소

### 가. 사이버 문화의 개념

- 사이버 문화는 사이버 공간이라는 새로운 정보 통신 기술의 개발 및 이용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다양한 문화적 현상을 의미하는 바, 이 문화는 인간의 자아실현을 위한 새로운 거대한 가능성을 제공하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암울한 파멸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 사이버 문화의 긍정적 측면은 유익한 정보의 교환, 건전한 인간 관계 형성, 다양한 체험을 통해 인류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 누구나 참여하고 접속할 수 있는 열린 문화
  -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유지시켜 주는 공동체 문화
  - 자율적 개인들이 표현의 자유를 만끽하면서 사회 전체의 지적 자원을 확장해 가는 자율 문화
  - 인간의 미래에 대한 이미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해 주는 미래 문화
  - 네티즌의 참여민주주의에 의해 현실 개혁을 지향하는 저항 문화
- 사이버 문화의 부정적 측면은 음란물 유통, 통신(인터넷) 중독, 사이버 폭력, 잘못된 통신 언어 사용, 개인 정보의 오·남용, 인터넷 사기, 크래킹, 바이러스 제작 및 유포, 저작권

침해, 사이버 훌리건,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집단 따돌림, 폭탄·엽기·자살 사이트 등의 유해 사이트 만연·확산으로 심각한 사회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에 있다.

#### 나. 우리 나라 청소년 사이버 문화의 실상

- 우리 나라 청소년의 90% 이상이 현재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을 정도로 양적인 측면에서의 정보화는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중고생의 40% 이상이 음란물을 접촉한 경험이 있을 정도로 질적인 측면에서의 정보화는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 청소년 사이버 범죄의 몇 가지 사례들
  - 1994년 채팅 도중 성적인 욕설에 상처를 받은 여중생이 자살함
  - 1996년 남중생 3명이 노트북 마련을 위해 통신 사기 행각을 벌임
  - 1997년 국제 음란 폰팅에 빠진 한 여고생의 가정집 전화 요금이 수천만원에 달함
  - 1998년 중학생이 졸업을 자축하는 의미에서 바이러스를 무차별 유포함
  - 1999년 온라인 자동차 경주에 몰두한 초등학생이 실제 자동차를 몰다가 사고를 냄
  - 2000년 고교생이 특정 회사의 회원 정보를 크래킹한 뒤에, 금품을 요구함
  - 2001년 유명 가수 콘서트 티켓 판매 사기 사건, PC 통신망을 통한 사이버 소녀 매춘(일명 원조 교제), 폭력·엽기·자살 사이트의 만연으로 도덕적 황무지를 초래하고 있다.
- 사이버 공간에서의 청소년의 비도덕적 행동 유형
  - 자신 및 타인을 존중하지 않는 경우: 지적 재산권 침해, 잘못된 통신 언어 사용, 통신 중독, 타인 비방 등
  -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우: 개인 정보의 오·남용 등
  - 남에게 해로움을 주는 경우: 크래킹, 바이러스 유포, 인터넷 사기, 엽기·폭탄·자살 사이트 등의 반사회적 사이트 제조 등
  - 공정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경우: 사이버 폭력, 사이버 성폭력, 유언비어 유포, 사이버 훌리건, 사이버 따돌림 등
- 현재 정보초고속도로에서 대형 ‘교통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결여되어 있다.
  - 인터넷이 최소한의 수치심과 양심도 없는 무정형의 공간으로 치닫고 있음
  - 과거와는 달리 청소년이 단순 ‘피해자’가 아닌 의도적 ‘가해자’가 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
  - 현실 세계의 비도덕적 행동들을 사이버 세계에 전파하는 경우와 사이버 세계에서 접한 비도덕적 행동을 현실 세계에 그대로 적용하는 행동들이 혼재하는 가운데 심각한 사이버 사회 병리 현상을 초래하고 있음

#### 3. 사이버 공간에서 청소년의 비도덕적 행동이 급증하는 이유

##### 가. 정보 기술적 요인

- 정보 기술 자체의 속성이 인간의 도덕감을 약화시키는 유혹 요인이 되고 있다.
  - 속도감 : 비도덕적 행동이 단 한 번의 클릭을 통해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날 수 있음
  - 익명성과 프라이버시 : 거의 완벽한 익명성을 통해 남에게 발각될 확률이 적으며, 적어도 범행의 순간에는 제 3자가 이를 인지하기가 어려움
  - 매체의 본질 : 원래의 정보를 제거하거나 훼손시키지 않는 가운데 정보를 훔칠 수 있거나 무단 복제할 수 있음
  - 심미적 매료 : 크래킹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타인이 만든 기술을 뛰어 넘는 자신의 능력 과시에서 얻는 기쁨
  - 최소 투자에 의한 최대 효과 : 인터넷 사기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적은 노력으로 많은 사람에게 접근하여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음
  - 국제적 범위 : 전세계를 무대로 활동할 수 있게 해 줌
  - 파괴력 : 단 한 번에 치명적인 상처나 피해를 입힐 수 있음
  - 분권적 구조 : 인터넷은 포괄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단일한 관리인 혹은 중앙 통제 장치가 결여된 무정부 상태임
  - 개방성 :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음

#### 나. 인간 심리적 특성

- 사이버 공간은 현실 공간과는 다른 심리적 기제를 만들어 내고 있다.
  - 무지 및 도덕적 유추 능력의 부족: 정보 기술과 도덕의 상관성에 대한 무지
- ※ 남의 집 과수원에 들어가서 아무 것도 따먹지 않은 것이나, 남의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그냥 자료를 들러보고 나온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함
- ※ 친구에게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무단 복제해 주는 것을 우정의 표시로 생각하고 있음
  - 능동성 : 현실 공간과 달리 마음 먹은 대로 스스로 조종할 수 있는 데서 얻어지는 기쁨
  - 평등 의식 : 가장 약한 자도 가장 강한 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을 정도로 수평적 평등 의식이 가능함
  - 지배성 : 각 개인의 사회적 지위, 권력, 권위 등을 나타내는 사회적 맥락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메시지를 보낸 사람에 대해서는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주로 메시지 자체에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의미를 부여함 → 문서 중심의 의사 소통 기술이 뛰어나면 쉽게 주도권을 쥐고 타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익명성과 탈대면성으로 인한 행동의 탈억제(disinhibition) :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음으로 인해 감정의 조절이나 표현에 대한 억제가 풀리고, 이것은 개인으로 하여금 도덕적 민감성(moral sensitivity)의 약화를 초래함
  - 배설 심리 : 가상 공간을 원초적 본능이나 욕구의 충족을 위한 대리 경험의 장소로 여김 → 가상 공간이 실생활에서 실현 불가능한 것들을 표현 · 실행해 볼 수 있는 모의 훈련장으로 여겨지고 있음.
  - 복합적 정체성 : 상황에 따라 자신의 모습을 임의로 바꿀 수 있는 유연성 → 아이디만 바꾸어 또 다시 ‘치고 빠지기’의 범행 수법이 얼마든지 가능함
  - 결과의 무시와 왜곡 : 상대방에게 해를 입히고자 할 때, 상대방이 눈에 보이지 않거나 행위자가 피해자로부터 시간적 ·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는 더욱 쉽게 비도덕적 행동에 빠지게 됨

## 다. 사회 환경적 요인

- 대중 매체의 감각주의와 상업주의
- 가정의 해체 및 도덕교육 기능 약화
- 청소년 놀이 공간 및 문화의 부족
- 입시 및 경쟁 위주의 학교교육이 낳은 폐해
- 깊은 성찰이 없이 ‘새로운’ 것에 무조건 열광하는 우리 사회의 병폐

## 4. 사이버 윤리 규범 정립의 필요성 및 쟁점

### 가. 사이버 윤리의 개념

- 사이버 윤리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인간의 도덕적 관계에 관심을 가지며, 그러한 관계를 규율하는 도덕적 원리들에 의거하여 사이버 세계 속에 거주하는 모든 인간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 나. 사이버 윤리 규범 정립의 필요성

- 사이버 공간은 개별화되어 있는 개인들의 수평적이고 평등한 만남, 그리고 상호작용에 의해 구성되기에, 사이버 공간의 미래는 네티즌들이 만드는 문화와 가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 사이버 공간은 익명성, 자율성, 개방성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공간이므로 현실 공간의 윤리가 기계적으로 그대로 적용되기에 분명히 한계가 있다.
  - 공자 시대의 윤리 규범을 현대 사회에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것, 혹은 미국 사회의 윤리 규범을 우리 사회에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것과 유사한 이치임
  - 사이버 공간은 가이게스 효과(Gyges effect)를 가능하게 만들고 있기에, 현실 세계와 달리 마음만 먹으면 어떤 부정의나 부도덕도 쉽게 행해질 수 있음
- ※ 가이게스 효과란 희랍 신화에 나오는 리디아의 왕 가이게스로부터 유래한 것임 : 가이게스는 원래 양치기였으나 어느 날 우연히 반지 하나를 얻게 되었는데, 그것은 위에 달린 보석을 돌리면 반지를 끈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는 요술 반지였다. 이러한 신통력으로 가이게스는 결국 왕비를 범하게 되고 그녀와 공모하여 왕을 살해한 뒤 왕좌를 차지하게 된다.

- 사이버 윤리는 면대면 만남과 상호 작용이 아닌 익명적 만남과 상호 작용을 전제로 하여 구성되어야 하는 독특한 특성을 안고 있으나, 그 새로운 윤리 규범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우려만 있을 뿐 실제적인 노력은 제대로 경주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 사이버 공간은 사회적 실재감을 저하시켜 줌으로써 나르시시즘적 퇴행을 부추기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에, 현실 공간보다 훨씬 강한 자기 통제력이 필요한 공간이다.
  - 그러나 사이버 공간에서 행위자들은 현실 세계와는 달리 타자의 실질적이고 독립적인 존

재를 인정함으로써 진입하게 되는 상호 의존과 책임의 관계를 거부하기에, 일상의 도덕적인 자기 규제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 그러므로 타자의 실종, 탈육체화된 정체성, 익명성과 같은 가상 공간의 특성에 부합하는 윤리 규범의 정립이 필요하다.

○ 특히 우리 사회의 경우 산업화와 정보화를 단 기간에 추진한 나머지 ‘비동시적인 것의 동시적 공존’에 의해 심각한 가치 정향의 위기를 안고 있는 실정이다.

- 산업 사회에 부합하는 올바른 시민 윤리가 정착하기도 전에, 사이버 시대에 부합하는 윤리 규범을 모색해야 하는 이중적 어려움을 안고 있다.
- 사이버 공간을 도덕적 진공의 상태로 간주하려는 일부 네티즌, 특히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행동으로 인해 각종 범죄와 비도덕적 현상이 사이버 공간을 얼룩지게 만들고 있다.
- 사이버 공간의 윤리적 공백이 현실 사회로 다시 스며들고 있어, 사이버 공간의 무도덕화 현상뿐만 아니라, 현실 세계의 무도덕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 다. 미국의 사이버 윤리 규범 정립 실태

○ 현재 사이버 윤리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 1976년 매너(Walter Maner)의 컴퓨터 윤리학에서 유래함: 그는 컴퓨터가 사용되는 상황과 컴퓨터가 사용되지 않는 상황 사이에는 어떠한 유추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덟 가지의 독특성(uniqueness) 사례(저장의 특이성, 다목적적 변용성, 기술의 복잡성, 처리의 신속성, 간편성, 복제의 용이성, 디지털 체제의 불연속성과 예측불가능성, 코드화의 독특성)를 통하여 입증하면서 컴퓨터 윤리학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반에 존슨(Deborah Johnson, 1984), 무어(James Moor), 스내퍼(John Snapper), 호프만(Lance Hoffman) 등으로 이어지게 됨: 특히 존슨은 컴퓨터 윤리학이 완전히 새롭고 독특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윤리학설을 상황에 따라 적절히 사용하거나 혹은 재해석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 컴퓨터 윤리학의 제 2세대인 정보윤리학이 등장하게 됨: 로저슨(Rogerson)과 바이넘(Bynum)은 정보 기술과 관련된 개념적 기초를 형성하고 더욱 정교하게 만드는 가운데 실천적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준거틀을 개발한다.
- 1996년에 고니액(Gorniak)은 컴퓨터 윤리학이야말로 2백년 전의 계몽주의 아래로 윤리학에서 거둔 가장 중요한 이론적 발전이라고 주장하면서 세계적 정보윤리학을 주장하였으나, 구체적인 윤리 규범의 내용은 지적하지 않았다.
- 2000년에 스피넬로(Spinello)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도덕 문제를 다루기 위한 사이버 윤리학을 주장하면서 자율성의 원칙, 선행의 원칙, 해악 금지의 원칙, 정의의 원칙을 사이버 윤리 규범으로 제시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주축으로 하여 정보통신윤리학회가 운영되고 있으나, 사회적 영향력은 미미한 실정이다.

#### 라. 사이버 윤리 규범 정립 과정에서의 쟁점

- 사이버 윤리 규범을 정립하게 되는 과정에서 부딪치게 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이버 윤리를 기준 현실 사회 윤리의 재해석에 의한 확대·적용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전혀 새로운 윤리로 볼 것인지의 문제이며, 이에 대해 윤리학자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논쟁이 일고 있다.
  
- 새로운 윤리가 필요하다는 입장
  - 일반적으로 산업 사회와 정보 사회의 불연속성, 즉 정보 사회가 산업 사회와는 획기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새로운 윤리’를 주장하고 있음
  -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른 정책적 진공 상태(policy vacuum)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음
  - 개념적 혼란 및 사이버 공간의 특성 때문에 기존의 윤리 이론을 단순하게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함
  - 문제점: 새로운 윤리의 필요성만 역설할 뿐, 그 새로운 윤리가 과연 무엇인지 구체적인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음
  
- 새로운 윤리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
  - 산업 사회와 정보 사회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사이버 공간이라고 해서 우리의 윤리적 규범이나 기준이 달라질 것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 사이버 공간에서는 가치 기준의 적용 방식과 수단만이 변화할 따름이지 윤리적 규범이나 기준 자체가 변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임
  -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문제들을 오래된 도덕적 문제들의 새로운 종으로 생각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 \* 종과 속의 비유 : 종(species)과 속(genus)이라는 비유는 하나의 새로운 종은 어떤 다른 종들로부터 그 자신을 구별시켜 주는 어떤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동시에 종은 속의 모든 성원들에게 공통된 발생론적 혹은 근본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 사이버 공간은 현실 공간과 다르며,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고 있는 윤리적 문제는 이전의 것과는 다른 어떤 독특한 특색을 지니고 있으나, 그것들이 전혀 새로운 범주의 윤리적 이슈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임
  
- \* 일례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위협은 컴퓨터 기술의 경우와 같은 형태로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위협은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주변에서 있어 왔던 것임. 또한, 소프트웨어가 소유권에 대한 우리의 개념에 도전을 가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지금까지의 새로운 발명품들도 마찬가지였었던 것임.
  
- 또한, 정보 통신 기술을 둘러싼 정책 및 규칙들의 진공 상태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정보 통신 기술이 진공 상태 속에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함
  
- 따라서, 우리가 지금 당장 새로운 윤리 이론이나 윤리 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는 입장임

으로서의 도덕 문제들과 싸워야만 하는 것이다.

-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종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전통적인 도덕적 원리들과 이론에 여전히 의존할 수 있다.
- 사이버 공간이나 현실 공간이나 궁극적인 도덕적 선은 인간 번영에 있는 것이기 때문임
- 사이버 공간은 그 자체가 궁극적 선이 아니며, 인간의 번영을 위한 하나의 기술적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 그러한 기술적 수단의 특성에 맞추어 대안도 없이 무조건 인간의 윤리를 바꾸어야 한다거나, 윤리가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

## 마. 사이버 윤리의 성격

- 전통적으로 윤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방하는 기능보다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도덕적 평가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며, 그 결과 늘 시대 변화를 제대로 따라 가지 못하는 심각한 윤리적 지체(ethical lag) 현상을 겪어 왔으며, 윤리규범의 절대성과 보편성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국지적 성격의 윤리로 기능하여 왔다.
-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볼 때, 향후 사이버 윤리는 다음과 같은 성격을 지닌 윤리가 되어야 한다.
  - **처방 윤리**(prescriptive ethics): 사이버 공간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분명하게 규정해 주어야 함
  - **예방 윤리**(preventive ethics): 향후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이버 공간이 수반하게 될 윤리 문제에 대해 사전에 숙고하고 예방하도록 도와주어야 함
  - **변형 윤리**(transformative ethics): 사이버 공간의 무질서와 혼돈에 대한 하나의 반응으로서 출현한 것이기에, 사이버 윤리는 인간 경험이나 제도·정책의 변형 필요성을 강조해야 함
  - **세계 윤리**(global ethics): 사이버 윤리는 국지적 윤리가 아닌 세계 보편 윤리가 되어야 함

## 5.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이버 윤리의 기본 원칙(RRJN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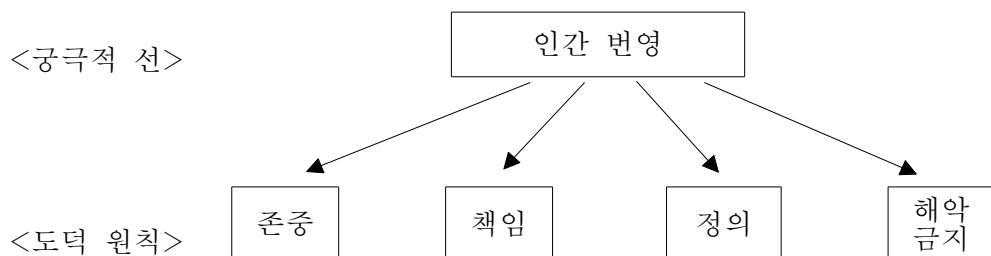
### 가. 기본 원칙의 필요성

- 사이버 공간은 현실 세계와는 다른 매우 복잡한 특성을 가진 새로운 공간이기에, 이 추상적이고 복잡한 현상 속에서 우리가 규범적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하나의 도덕적 척도나 나침반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 원칙이 필요하다.
- 사이버 공간이 참된 삶의 터전과 생활 세계가 되려면,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가꾸어 나가려고 한다면, 서로간의 신뢰와 존중에 바탕을 둔 상호 교감의 공간으로 자리 매김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도덕적 원칙이 사이버 공간의 실질적 규제자인 것이다.

- 현실 윤리가 사이버 공간의 특성에 기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이버 공간 자체가 도덕적 무중력 상태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 네티즌은 그러한 실천적 원칙에 유의하여 행동 방침을 선택하고, 정책 및 기술 개발자들은 도덕적 관점에 일치하는 주의력과 신중성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 나. 기본 원칙의 내용: 'Principles of RRJN'

- '우리의 선택은 언제나 인간 완성(human fulfilling) 혹은 인간다움(humanity)을 향하여 열려 있어야 한다.'는 도덕의 최고 원리는 사이버 공간에서도 그대로 존중되어야 함
- 인간 번영에 필수적이며 영원히 존속될 도덕적 가치들이 사이버 공간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도 하나의 장치로서 직접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함
  - 따라서 사이버 윤리는 사이버 세계의 식민지화가 아닌 사이버 세계의 인간화를 구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율적 규제로서 인식되어야 함.
- 인간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사이버 공간의 윤리 규범은 다음의 네 가지 도덕적 원칙을 중시하는 형태가 되어야 함



##### 1) 존중(Respect)

- 본래 존중은 사람이나 사물이 지닌 고귀한 가치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것을 의미함
- 사이버 공간은 익명적 의사 소통 및 타자의 상실에 의해 상대방에 대한 존중심이 쉽게 약해질 수 있으므로,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더라도 상대방의 실체나 견해를 적극적으로 존중하려는 자세가 더욱 필요한 공간임
- 사이버 윤리의 원칙으로서의 존중은 먼저 자신에 대한 존중을 의미하는 것이며, 자신에 대한 존중은 우리 자신의 생명과 몸을 본래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대우할 것을 요구하는 것임
  - ※ 사이버 공간에 탐닉하여 자신의 몸을 들보지 않는 것은 바로 육체와 정신의 합체로서의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에 위배되는 것임

- 또한, 존중은 타인에 대한 존중을 의미하며, 특히 타인에 대한 존중은 타인의 지적 재산권, 프라이버시,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을 의미함
  - 타인에 대한 존중은 모든 다른 사람들을 우리 자신과 똑같은 존엄성과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 대우할 것을 요구하는 것임
  - 사이버 공간에서는 상대방이 눈에 보이지 않는 ‘타자의 상실’ 속에서 모든 행동이 일어나므로,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려는 존중의 원칙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존중의 원칙이 중시되지 않을 경우, 사이버 공간은 평등한 개인들끼리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만인 대 만인의 투쟁’ 장소가 될 수 있음

## 2) 책임(responsibility)

- 책임의 사전적 의미는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다른 사람을 회피하지 않고 향하는 것,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 그들의 필요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을 뜻함
  - 책임은 서로를 보살피고 배려해야 할 우리의 적극적인 책무를 강조하는 것임
- 사이버 공간에서는 통일적 정체감의 상실, 역할의 상실에 따른 책임 회피가 쉽게 일어날 수 있으므로, 현실 세계보다도 더 수준 높은 책임 의식을 요구하고 있음
- 사이버 윤리의 원칙으로서의 도덕적 책임은 예상적 책임(prospective responsibility)과 소급적 책임(retrospective responsibility)으로 구별할 수 있음
  - 예상적 책임이란 내가 어떤 사건 전에, 내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혹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들에 언급되며,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사이버 공간에서 예상적 책임을 지니고 있음
- ※ 일례로, 수영장에 근무하는 구조원은 수영자들의 안전에 대해 책임이 있으며, 이 때 구조원은 미래에 놓여 있는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 소급적 책임이란 내가 그 사건 후에, 한 행위자로서 나에게 원인으로 돌려질 수 있는 사건이나 결과들에 대해 지는 책임을 의미함: 우리가 의도적으로 한 행위의 결과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분명하게 소급적 책임이 있음
  - 소급적 책임은 책무(liability)를 수반함: 만약 나에게 누군가가 고통을 당한 것에 대해 책임이 있다면, 나는 그 고통이나 해로움을 야기시킨 것에 대해 대한 비난 혹은 벌을 감수하거나 그것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하거나 혹은 그것에 대해 사과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
  - 내가 어떤 예견된 결과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것, 혹은 내가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행동해야 할 방법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결과 혹은 그 해로움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는 것을 뜻하며, 이러한 책임의 원칙은 존중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이기도 함
- 우리는 정보 이용자 및 정보 제공자로서 예상적 책임과 함께 소급적 책임을 갖고 있으며,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는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인지에 대해 미리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음

- ※ 네티즌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예절과 윤리 규범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려는 책임 의식을 지닌 사람들에게 타당하게 인급될 수 있는 용어이지, 사이버 공간에 접속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획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용어는 아님
- 사이버 공간에서 책임의 원칙에 입각하여 행동하는 것은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신뢰(trust) 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음
- ※ 후쿠야마(Fukuyama)에 의하면, 사회적 자본은 종교, 전통 또는 역사적 관습과 같은 문화적 메카니즘을 통해서 전수되는 것으로서, 사회 전체 또는 그 일부분(가족 등)에서 신뢰가 일반화되어 생기는 능력을 의미함
  - 현대 사회는 지식과 신뢰 관계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가 새로운 조직 틀로 부상되고 있는 바, 사실상 지식이 꽂힐 수 있는 체계와 네트워크는 신뢰의 기초 위에서 발전해 나가는 것임
- 사이버 공간은 인류에게 있어서 새로운 책임 문화(new culture of responsibility)의 정립을 위한 실험대가 되고 있음
  - 모두를 위한 기회(opportunities for all)가 가능한 사이버 공간은 모두로부터의 책임(responsibilities from all) 및 모두를 위한 책임(responsibilities for all)을 요구하는 사회적 공간임

### 3) 정의(justice)

- 선(善)의 절대적 개념으로서의 ‘공정’과 ‘옳음’을 뜻하는 정의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남
- 먼저 보편적 덕목으로서의 정의는 세 가지 측면에서 도덕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
  - 첫째, 한 개인의 내면과 관련하여, 정의는 옳음 그 자체를 추구하려는 사람의 태도를 뜻함
  - 둘째, 함께 살아가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관련하여 정의는 이타적인 삶의 태도를 뜻함
  - 셋째, 공동체의 법(제도)과 관련하여 정의는 법을 준수하고, 그러면서도 때로는 법을 초월하는 삶의 태도를 뜻함
- 한편, 권리의 규범으로서의 정의는 도덕적인 관점에서 공동 생활의 규칙을 절대적으로 정당화하거나 비판할 수 있게 하는 기준이 되고 있음
  - 현재 정의 이론의 상징처럼 여겨지고 있는 롤즈(John Rawls)의 ‘공정으로서의 정의’ 이론에 의하면, 정의란 모든 인간이 자율적 의지로서 공정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이어야 함 : 평등한 자유의 원리, 공평한 기회의 원리, 차등 원리
- ※ 이것을 사이버 공간에 적용하면, 모든 인간은 각 개인의 기본적 자유를 최대한으로 펼칠 동등한 권리(平等權)를 갖고 있으며, 공평하고 동등한 기회와 자유로운 분위기의 보장에도 불구하고 능력의 차이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는 오히려 차등의 원리에 따라 능력과 결과에 적합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사이버 공간에서 각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의 진실성(truthfulness), 비편향성(unbiasedness), 완전성(fullness), 공정한 표현(fair representation)을 추구해야 하며, 타인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함

#### 4) 해악 금지(non-maleficence)

- 해악 금지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며, 타인의 복지에 대해 배려하는 것을 뜻함
  - ‘남에게 해로움을 주지 말라’는 소극적 의미에서의 해악 금지는 흔히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불리고 있음
  - 한편 적극적 개념으로서의 해악 금지란 우리가 다른 사람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방식으로 행동해야 하는 것을 뜻함
- 사이버 성폭력, 크래킹, 바이러스 유포 등과 같은 행위들은 타인에게 명백하게 해로움을 주는 것이므로 마땅히 지양해야 할 행동임
  - 사이버 공간에서의 비도덕적 행동은 헤아릴 수 없는 불특정 다수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음
- 따라서, 사이버 공간이 인간의 모습을 한 따뜻하고 정감 있는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각자가 나르시시즘에서 탈피하여 타인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행동해야 함
- 사이버 공간에서 우리는 적어도 이 네 가지의 도덕적 원칙에 입각하여 판단하고 행동함으로써 인간의 고결함과 존엄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인간 번영을 지향해야 함
- 우리는 네 가지 기본 원칙을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문제들에 적용하여 도덕적인 답을 찾아 나가려는 적극적이고 자기 성찰적인 삶의 태도를 지녀야 함

### 6. 사이버 윤리 규범의 확산을 위한 고려 사항

#### 가. 사이버 공간 및 사이버 윤리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기회의 확대

##### 1) 사이버 공간 및 사이버 윤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기회 제공

- 사이버 공간은 현실의 문제를 잊게 해 주는 일종의 탈출구인가?
  - 사이버 스페이스는 개인의 욕구 충족을 위한 단순한 도구나 도피처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쌍방향적 의사소통을 위한 사회적 공간임
  - 현실 문제로부터의 탈출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올바르게 인식해야 함
  - 컴퓨터를 끄고 나면, 환상적인 세계가 펼쳐졌던 화면은 까만 플라스틱 상자의 한 면에 불과함
  - 현실 세계의 문제가 되살아나고, 우울함이 깊어지고, 외로움이 심해지며, 가족이나 배우자를 소홀히 했다는 죄책감이 생기게 됨

- 이의 극복을 위해 더 오랜 시간 온라인에 머물고자 하며, 이러한 순환 과정은 결국 중독 상태를 초래하므로, 현실 세계의 스트레스에 대한 해독제가 아님

### ○ 사이버 공간은 현실 세계의 모든 규제로부터 자유로운가?

- 사이버 공간은 모든 인류의 행복과 자유, 평등이 실현되는 새로운 전자 공간임
- 한 개인이 마구 남용하거나 오용할 수 있는 사적 자산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사용하고 보호해야 할 ‘공적 자산’임
- 이 공간의 주체는 바로 우리 인간이기에, 인간 관계의 이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결코 ‘도덕적 진공’ 상태가 아님
- 이 공간은 인간의 번영을 위한 공간이지 인간을 파멸시키는 공간이 아니므로, 이 공간에서의 인간 관계 역시 ‘나와 너’의 대등한 인격의 만남이지 ‘나와 그것’의 도구적 만남이 아님
- 따라서 이 공간에서도 공동 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규범, 즉 이 공간의 무질서와 혼돈을 예방하기 위한 참여자들의 합의와 약속이 필요함
- 이 공간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열린 공간이며, 모든 사람은 가상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그에 수반하는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음
- ‘네티즌’ 혹은 ‘인터넷 시민’에 걸맞게 타인을 존중하고 품위를 인정하며, 개성과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자세가 필요함
- 이 공간은 참여자(제공자/이용자)인 네티즌의 성숙된 자율적 도덕 의식에 의해 건전하고 바르게 운영되어야 함
- 네티즌 각자가 올바른 인터넷 서핑을 위한 ‘조타수’가 되어야 함: 그러므로, 사이버 공간은 현실 세계의 모든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공간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성숙된 도덕 의식을 요구하는 공간임

### ○ 사이버 스페이스에 대한 규제는 인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인가?

- 자유는 자유를 올바르게 향유할 줄 아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이지, 누구에게나 무조건 부여될 수 있는 것은 아님
- 자유는 자유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안전 장치가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임
- 따라서 사이버 공간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는 현실의 권력 구조로 사이버 공간을 식민지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전한 사이버 문화를 형성·유지해 나가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특히 아직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을 사이버 문화의 유해 요소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모든 사회의 기본 의무임

## 나. 기술 현실주의적 입장 견지

- 사이버 공간에서 사이버 윤리의 기본 원칙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기술 현실주의적 입장을 견지하려는 자세가 필요함
- 일반적으로 기술 현실주의(technological realism)란 비록 기술 체계가 그 자체의 힘을 가

지고 있기는 하지만, 정치적·사회적 힘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중시하는 입장임

- 기술이 우리의 삶과 일의 방식을 어느 정도 결정해주는 면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방향을 다시 고쳐 잡거나 또는 필요한 때에는 그 작용을 억제할 수도 있다는 입장 을 지녀야 함
- 기술이 보편적 선이나 인간 가치들과 갈등을 일으킬 때에는 그것을 억제할 수 있어야 함.

※ 기술 중립론 : 기술은 인간의 목적과 목표에 완벽하게 토대를 두고 있는 중립적인 힘이라고 보는 입장. 기술 체계는 단지 도구일 뿐이며, 그것이 좋은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가 나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인간 자신에게 달려 있다고 보는 입장임. 그러나 이 입장은 기술이 우리의 삶의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무시하고 있음.

※ 기술 유토피아론 : 어떤 특정 기술 체계가 우리의 생활 양식과 직장의 여건을 개선해 줌으로써 이상 세계를 이루어 줄 것으로 보는 입장. 이 낙관적 견해는 인간성이 기술의 부정적인 효과를 거의 다 극복시키고, 이 도구를 인간 조건의 개선을 위하여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함. 이 입장은 기술의 부정적 영향을 간과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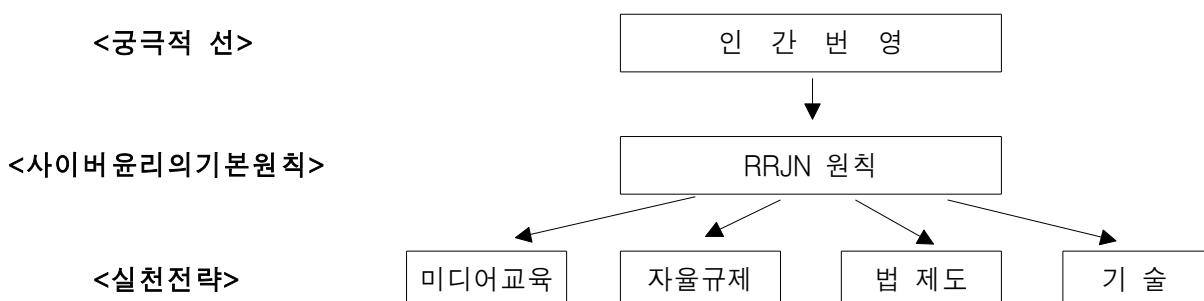
※ 기술 결정론 : 기술은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뛰어 넘는 독립적이고 비인간적인 힘이라고 보는 입장. 기술은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 있다고 보는 입장임. 이 입장은 인간의 능력에 의한 사회 변화의 가능성을 무시하고 있음

#### 다. 개인윤리적 접근과 사회윤리적 접근의 조화 모색

- 개인윤리적 접근: 도덕 문제의 근본 원인이 개인에게 있다고 보며, 개인의 도덕성으로서의 양심을 회복하는 일을 목표로 함(방법론적 개체주의)
  - 개인의 도덕적 이성과 양심을 성숙시키는 일이 곧바로 사회를 도덕화하는 일에 연결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임
- 사회윤리적 접근: 도덕 문제의 원인이 사회 제도·정책·구조에 있다고 보며, 사회적 개혁을 통하여 사회의 도덕성으로서의 정의 실현을 목표로 함(방법론적 전체주의)
  - 사회를 도덕적으로 만드는데 있어서 개인윤리적 접근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음
  - 개인 이성의 한계와 집단 이기심의 발로를 직시하고, 사회를 도덕화하는 일은 그 사회 자체의 논리에 맞는 관점과 방법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입장임
  - 도덕 문제의 해결은 사회적 원인의 극복 내지 제거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함
- 사이버 공간을 윤리가 살아 숨 쉬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하여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 개인적 차원에서의 양심 회복을 기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
- ※ 예를 들어, 우리는 돈이 없어 병을 치료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도덕성이 높은 의사들이 양심과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염가로 또는 무료로 치료해 주기를 기대할 수 있으나,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모든 의사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한, 그 문제는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의료 보험 정책을 통해 상부상조의 정신을 사회적으로 제도화함으로써 해결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그러므로, 사회의 구조·제도·정책의 개선을 통해 사회 정의를 구현해 나가려는 노력이

### 반드시 병행되어야 함

- 예를 들어, 사이버 공간에서 개인의 양심 회복을 촉구하는 정보통신윤리교육의 실행도 필요하지만, 그러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한 학교 교육의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하려는 노력이나 사이버 공간의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의 제정·실행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함
- 막연하게 네티즌의 네티켓과 양심에만 호소하는 소극적 대처 방안에서 탈피하여 미디어 교육, 자율 규제, 법 제도, 기술적 차단 장치의 도입을 통해 사회 구조·제도·정책의 변화를 모색해 나가야 하며, 사이버 윤리의 기본 원칙은 모든 대처 방안의 기저를 이루는 가운데 구체적 실천 전략의 타당성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해 주어야 함
- 사이버 윤리의 기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실천 전략으로서의 미디어 교육과 자율 규제는 개인의 양심 회복을 촉구하기 위한 개인윤리적 성격이 강한 반면에, 법 제도와 기술적 차단 장치는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윤리적 성격이 강함
- 건전한 사이버 공간을 만들기 위한 실천 전략으로서의 미디어 교육과 자율 규제는 온건론적 접근(softline approach)인 반면에, 법 제도와 기술적 차단 장치는 강경론적 접근(hardline approach)이라고 할 수 있음
- ‘인간 번영’이라는 궁극적 선은 법 제정과 사회 제도 개발 및 인터넷 규제 등을 위한 하나의 토대로서 구실하는, 영구 불변의 가치를 지향하는 처방적 이정표로서 계속 기능해야 함
- 인간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사이버 윤리의 네 가지 기본 원칙은 미디어 교육, 자율 규제, 법 제도, 기술적 차단 장치를 통해 모두 구현될 수 있으나, 실천 전략에 따라 강조점의 차이가 있음
  - 미디어 교육은 존중과 해악 금지 원칙, 자율 규제는 존중과 책임 원칙, 법 제도는 정의와 해악 금지 원칙, 기술적 차단 장치는 책임과 정의의 원칙을 구현하는 데에 있어서 더욱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음



## 미디어교육의 정착방안

문 미 원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대표)

### I. 들어가는 말

#### 1. 미디어교육의 필요성

일상생활의 한 부분이 되어버린 대중매체의 소비와 더불어 이제는 인터넷이 현대인의 삶에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인터넷은 정보를 추구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며 오락적 기능을 한다. 인터넷의 사용으로 인해 우리 생활에 여러 가지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부터 비롯된 부정적인 문제점들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의 경우, 컴퓨터와 인터넷의 사용이 학습의 형태와 놀이문화, 친구와의 유대관계 등 다른 행동들을 바꿔놓았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장래희망까지 바꾸어가고 있다. 이들에게 컴퓨터가 갖는 의미는 의식주활동 이상의 의미 있고 영향력 있는 활동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태어날 때부터 TV가 친숙하고 밥 먹는 것보다 컴퓨터 게임이 더 좋다. 이들 사이에서 컴퓨터를 얘기하지 않으면 이미 대화가 되지 않는다.

컴퓨터와 인터넷은 일상의 언어사용에도 영향을 준다. 왜곡된 언어사용보다 더욱 문제가 되는 부분은 윤리적인 부분인데 사이버 공간이 현실과 동떨어진 가상 인물간의 가상의 관계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프라인 상에서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많은 일들이 온라인 상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실행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청소년들이 통신과 여가활동을 위해, 또는 인간관계를 확대하기 위해 사용하는 채팅방의 경우를 보자. 얼굴도 볼 수 없고 실명으로 공개되지 않는다는 일탈적 사고가 상대방에 대한 거침없는 언어폭력이나 기본적인 도덕성을 상실한 무례한 대화내용, 나아가 불확실한 정보유포 등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는 청소년에게 접근이 금기 시되어 왔던 음란물과 폭력적 내용을 담은 내용, 사행심리를 조장하는 불법유해사이트들이 넘쳐난다. 그 결과 이에 대한 무분별한 접촉으로 인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인터넷이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의 속성에서 기인하는 무한한 정보의 자유와 개방적 활용은 건전하지 못한 다양한 내용과 이를 통한 사이버범죄의 가능성에도 같은 기회를 열어주고 있다. 인터넷은 약속의 땅인 동시에 무방비의 전쟁터인 것이

다.

아직 변별력이 성숙하지 못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변별력을 심어줌으로써 비판적 활용(critical use)을 할 수 있고 일상생활에서의 윤리를 사이버 상에서도 준수할 수 있도록 사이버 미디어교육(또는 인터넷 미디어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미디어교육의 방향은 적당히 거리를 두고서 능동적으로 정보를 선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가상의 현실에 너무 깊숙이 빠져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의 다음 단계로 이를 분석 평가하고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제작 능력을 키워주는 일이 필요하다. 사이버 미디어교육을 통해 청소년 스스로 사이버문화의 지킴이 역할을 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인터넷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인터넷이 건강한 어린이·청소년 문화로 기능하도록 해야한다.

이러한 미디어교육의 대상이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미디어교육은 같은 미디어 환경에서 살아가면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지도해야 하는 교사와 학부모에게도 필수적이다. 학생과 교사, 나아가 학부모가 더불어 미디어교육을 수행하고, 실시해나갈 때 가장 이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미디어의 소비가 일상적인 텍스트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학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미디어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 이들이 인터넷의 활용에 따른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면서 청소년들의 인터넷 활용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고 이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 2. 미디어교육의 정의

미디어교육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미디어교육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립이 우선되어야 한다. 미디어교육이라는 용어는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그 단어가 뜻하는 바는 넓게는 수용자 주권 운동으로부터, 모니터링, 미디어 제작 교육과 미디어를 이용한 학교 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디어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미디어, 즉 텔레비전, 영화, 비디오, 라디오, 사진, 대중음악, 인쇄물, 컴퓨터 소프트웨어, 인터넷 등에 대한 어린이·청소년들의 비판적인 이해능력을 향상시켜 주고자 하는 것이다.

미디어교육이란 인쇄 혹은 청각미디어나 영상 또는 멀티 미디어의 메시지에 접근하여 이를 분석, 평가, 그리고 커뮤니케이트할 수 있는 능력<sup>1)</sup>이며, 나아가 스스로 이러한 메시지들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sup>2)</sup>을 말한다.

1) Aufderheide,P. (1993) *National leadership conference on media literacy*. Conference report. washington, D. C.: Aspen Institute. Hobbs, R.(1998) 글에서 재인용.

2) Hobbs, R. (1998) "The seven great debates in the media literacy movement", *Journal of Communication*, Winter.

미디어가 어떻게 작용하는가, 또 어떻게 의미생산을 하는가와 더불어 미디어 산업은 어떻게 조직되어 있으며 수용자는 어떻게 의미창출을 하는가 등이 미디어교육에서 다루는 주요 이슈들이다. 미디어교육을 통해 미디어가 생산한 상품을 분석하고 직접 생산하게 함으로써, 어린이·청소년들이 비판적이고 창조적인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미디어가 제공하는 즐거움과 오락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미디어교육은 더 광범위하고 다양한 미디어 생产业을 요구하고 그것에 기여할 수 있는 보다 능동적이고 비판적인 미디어 사용자의 창출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sup>3)</sup>.

미디어교육은 미디어를 다루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와 함께 살아가는 ‘의미’를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며 나아가 미디어와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교육이다. 미디어교육의 정의를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이 요약된다.

- ① 미디어교육은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높이는 것이다.
- ② 미디어교육이란 미디어가 생산되는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포함한다
- ③ 미디어의 비판적 소비자일 뿐만 아니라 비판적인 생산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④ 미디어 환경이 우리의 삶에 긍정적으로 기능하도록 감시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 ⑤ 그리하여 미디어와 함께 즐겁게 살아가는 방법을 함께 배워 나가는 교육이 바로 미디어 교육이다.

## II. 미디어교육 추진내용 및 분석

### 1. 미디어교육 실시 현황

현재 각 기관과 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미디어교육을 사회단체와 학교, 정부기관 등으로 구분해 현황을 살펴보겠다.

사회단체 미디어교육은 종교단체, 언론단체, 교육단체,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10여 개 단체에서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학교 미디어교육은 초등학교의 경우 주로 통합교과의 형식으로 교과과정 내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교사 개개인의 지도아래 운영된다. 중등학교의 경우 특별활동 시간이나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의 형태로 실시되고 있다. 정부기관의 경우 청소년보호위원회(9~2000, 2회)와 방송진흥원(교수, 대학생, 시민단체 실무자, 교사 대상), 정보통신부에서 (주부

3) Bazalgette, C. (ed.) (1989), *Primary Media Education: A Curriculum Statement*, London: BFI Education. Alvarado, M. & Boyd-Barret, O. (1992) *Media Education: An Introduction*, London: BFI.

인터넷 교육실시: 2000년, 1,057개 지정학원 30만 명 교육) 각각 주관하고 있다.

## 2. 문제점

이렇게 실시되고 있는 미디어교육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사회단체 미디어교육의 경우 미디어 감시비평활동과 방어적 문제해결 위주의 미디어 수용자 운동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몇몇 단체의 경우 이런 경향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기도 한다.

학교에서 실시되는 미디어교육은 교과과정 내에 포함되지 못해 제도적으로 체계화되지 않고 있었다. 연령별로 세분화된 커리큘럼이 없어 교수 방법이 실험적이며 실시되는 교육내용도 교사 개인의 관심도나 능력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초·중등학교 교과과정 내에 포함된 정보화 윤리교육은 극히 저조하여 전체 교육내용의 2.5%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표 II-1 초·중등학교 교과과정 내 정보화 윤리교육>참조)

영 역	정보화 윤리	정보화 기초	컴퓨터 일반	소프트웨어	고급기술	컴퓨터통신	계
단원수	1	7	20	5	3	4	40
비율(%)	2.5	17.5	50	12.5	7.5	10	100

<표 II-1 초·중등학교 교과과정 내 정보화 윤리교육>

정부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미디어교육의 문제점은 간헐적 이벤트성 교육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각 부처별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교육내용이 중복되는 등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미디어교육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미디어교육이 아닌 기능교육위주로 흐르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부가 지원하는 주부인터넷 교육은 100% 기능 중심 교육으로 정보통신윤리교육의 내용이 포함되어있지 않았다. (<표 II-2 정부통신부주관 주부인터넷 교육> 참조)

영 역	컴 퓨 테 기초지식	한글윈도98	인터넷일반	인 터 넟 정보검색	계
교육시간	2	3	12	3	20
비율(%)	10	15	60	15	100

<표 II-2 정부통신부주관 주부인터넷 교육>

### III. 청소년 대상 미디어교육

청소년대상 미디어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즐겁고 멋진 인터넷 문화 확립(Cool-net project)이다. 청소년대상 미디어교육은 무엇보다도 청소년들로 하여금 비판적인 변별력과 윤리의식을 확립하게 함으로써 미디어의 올바른 소비자임과 동시에 올바른 생산자의 역할을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미디어와 더불어 즐겁게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하는데 있다. 청소년을 외압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유쾌한 인터넷을 즐기기 위해 사이버 미디어교육이 필요하다.

그러자면 청소년대상 사이버 미디어교육의 내용은 정보화 사회에 대한 바른 이해와 인터넷 내용에 대한 비판적 변별력 함양과 네티켓(Netiquette) 준수, 사이버 윤리의식 습득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또 미디어 소비자이자 생산자로서의 책임감과 의무감 배양, 미디어를 능동적으로 즐길 줄 아는 능력습득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청소년대상 미디어교육의 기본방향은 먼저 학교교육과 사회단체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이 좋다. 영상세대 취향에 부합할 수 있는 교육방법을 개발하는데 주로 실습과 토론을 중심으로 교육방식을 채택하여 생각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교사가 학생을 지도한다는 마인드보다는 함께 논의하는 자세를 지향하는 것이 좋다. 그리하여 창의적 제작과 실습이 가능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미디어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 1. 학교 교과과정 내의 교육

이상적인 미디어교육의 형태는 전과목의 미디어 교사화를 통해 각 과목별 수업내용 중에 연결성이 있는 주제별로 학생들과 토의를 통해 학생들 스스로 결론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미디어교육은 단일 과목의 정규교과화가 궁극적으로 바람직하나 입시위주의 현 교육 풍토상 당분간 관련 교과목 내에서 교사의 지도능력으로 수행하면서 방과후 교육이나 특별활동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방법이다.

각 과목별 수업과정에서는 미디어윤리를 내면화 할 수 있는 교수법을 적용한다. 학생들간의 토론과 경험담 교류를 통해 미디어의 본질을 스스로 깨닫게 한다. 국어, 윤리, 영어, 기술, 미술과목 등에서 각기 수업 중에 실시할 수 있는 미디어교육의 예를 들어보겠다. 국어과목에서는 채팅방에서의 인터넷 활용 언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윤리과목에서는 사이버윤리에 대한 필요성 강조, 네티즌으로서의 윤리와 책임을 강조 바른 활용을 통한 건전한 문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다. 영어과목에서는 인터넷의 기본 언어가 영어인 점을 감안해 외국 건전 사이트(외국의 청소년 권장 사이트 목록 활용)를 주제별로 서평하게 하고 이를 우리 나라의 비슷한 사이트와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기술과목에서는 정보화시대에 대한 균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가르쳐주고 컴퓨터 활용 교육을 실시한다. 미술과목에서는 영상매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실시하며 사진교육, 대중문화와의

접맥 등 새로운 매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방향으로 교육하며 다양한 예술의 형태를 접해보면서 특정한 조류나 매체에 있어 역사와 사회성, 사회와의 관계 등에 대해서 공부한다.

전 과목에 미디어교육을 적용하기 위해 관련과목 교사들에 대한 단기교사연수를 의무화하고 교육부에 의한 교과과정 개발에 각 과목별 구체적 방안 수립 및 포함하며 교사 연수 프로그램에 미디어교육 전문가의 의견 반영해야한다. 교과과정 개발에 교사를 참여시켜야하며 미디어교육의 내용 뿐 아니라 민주적, 참여적 교육 구현하도록 하는 교수법에 대한 현장의 참여연구가 필요하다. 그리하여 교사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 예시와 청소년의 인터넷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다.

교육부 차원에서는 교육정보제공 네트워크를 통해 시청각 교재 리스트나 미디어교육 방법론, 연령별 커리큘럼 제시, 교사용 교재 및 학생용 워크북 자료 등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학교에 미디어교육을 확대시키려면 관련 CEO가 미디어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 학교 운영을 책임지는 교장 교감선생님의 의지야말로 미디어교육 확대 및 정착에 중요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과목에 필수적으로 미디어교육을 포함한다. CEO 교육과 더불어 일반교사연수에도 미디어교육을 필수적으로 포함시켜야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미디어교육 운영하고 이를 교원양성과정에 미디어교육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한다.

## 2. 학교 인터넷방송국 운영을 통한 체험교육

학교 인터넷 방송국을 구축·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참여와 메시지 생산자로서의 기회를 확대시키는 것이 이 교육의 목표다. 라디오 방송국 등 기존시설을 인터넷 방송으로 전환할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경비로 운영이 가능하며 활용도도 높다. 인터넷 방송에 대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학내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를 꾀하고 두발 자유화나 전교임원선출 등 학내 문제에 대해 민주적 토론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공개적 담론을 형성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연습을 한다.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적극적인 참여기회를 부여해 학내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한다. 인터넷 방송국을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장으로 활용함으로써 사회민주화 방법을 연습하고 공론의 장으로 삼는다.

16개 시·도단위로 인터넷 방송국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시범운영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이를 전 학교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공기관 서버를 활용하여 인터넷방송국 운영기반의 구축을 돋고 운영경비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인터넷 방송을 위한 기본 기술 및 운영 교육에 대한 지원을 실시한다. 이렇게 하여 인터넷과 새로운 매체에 대한 긍정적인 활용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영상 컨텐츠 산업의 새로운 인프라 구축에 기여한다. 관련 교과목과의 연계를 통한 미디어교육 이외에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한 교사-학생, 학생-학생간 커뮤니케이션 증

대이나 "컴퓨터 일기" 작성, 등을 미디어교육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일이 필요하다. 또 특별활동 시간을 통한 제작교육이나 학교교지를 인터넷 신문으로 만드는 방법도 활용할 만 하다.

### 3. 청소년 문화시설을 활용한 교육

청소년문화회관, 정보문화센터 등 기존의 청소년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미디어교육을 강화한다. 미디어교육을 이미 실시하고 있는 사회단체의 강사를 초빙하여 강의를 듣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영상제작 실습, 사진·만화제작 등 교육인프라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한다. 현재 미디어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진 청소년 문화공간으로는 정보문화센터와 청소년 정보문화센터, 각 지역별 문화의 집 등이 있다. (아래의 <표 II-3 미디어 교육이 가능한 청소년문화시설> 참조)

시설	정보문화센터	청소년정보문화센터	문화의집
주 관	정보통신부	서울시	각 자치단체
개 수	1	1	51

<표 II-3 미디어교육이 가능한 청소년문화시설>

### 4. 청소년 창작 작품전 활성화

영상은 사물을 인지하는 방법이나 스스로를 표현하는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청소년들이 영상작품을 창작하는 일은 매체 제작과정에 직접 참여케 함으로써 미디어의 본질과 원리에 대한 이해를 고취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아울러 '청소년 영상제' 등 청소년이 직접 제작한 영상물을 대상으로 하는 창작 작품전은 이들에게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여 성취감과 함께 자기 비판의 기회를 준다.

미디어 제작교육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이야기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여러 가지 기법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교육이다. 그러나 매체에 대한 비판적 이해에 대한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작교육이 실시된다면 단순한 영상표현이 자칫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 미디어 제작교육이 반드시 미디어교육이라는 커다란 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은 필수다.

청소년 창작 작품전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작품을 평가받고 보여주는 자리다. 작품을 제작하기 위해 특활시간이나 특기적성교육 시간을 이용해 미디어 제작교육을 실시한다. 학교 내에서 관심있는 교사가 지도하는 방법과 실습인프라가 갖춰진 민간 단체와 연계하여 제작하는 방법이 있다. 작품제작은 시민단체들이 이미 운영하고 있는 영상제작캠프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활성화시킬 수 있다. 기존의 미디어 제작교육 교사의 인력풀제를 활용하거나 시민단체 연간 교육 강좌 개설 지원하고 시민단체로부터 전문강사를 지원 받아 제작활동을 하는 방법을 고려할 만하다. 이외에도 제작에 관심있는 학부모를 특활교사로 활용하는 방법도 권할 만 하다.

창작작품의 발표창구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 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민단체 중심의 청소년영상 창작작품 시상행사를 지원하고 케이블TV지역 SO와 연계하여 청소년이 제작한 작품을 방영하는 기회를 부여하며 학교·청소년단체의 인터넷방송을 활용한 작품발표 기회도 열어두어야 한다.

미디어 제작교육은 영상을 통한 표현의 활성화로 영상세대에 맞는 교육효과를 도모하며 학습능력과는 다른 능력을 개발할 기회를 제공하여 다양한 인성발전과 잠재력 개발을 유도한다. 미디어제작을 통해 이루어지는 자발적인 참여로 청소년들의 참여욕구를 해소하고 그룹 작업을 통해 협동심을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양한 주제에 대해 관심을 가짐으로서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학습하고 있으며 앞으로 필요한 인터넷 컨텐츠산업과 영상 컨텐츠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조기 개발할 가능성도 있다.

## 5. 청소년 인터넷 지킴이(Cool-Net Patrol) 활동 활성화

건전한 사이버 문화를 청소년 스스로 지켜 나간다는 책임감을 인식시켜 인터넷을 사용하는 청소년 누구나 인터넷 지킴이(Cool-Net Patrol)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 이 활동에는 사이버 윤리를 홍보하는 일(Cool-net Etiquette: Cool Netiquette)과 기타 인터넷에 관련된 다양하고 즐거운 활동 및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봉사(Cool-Netizen) 같이 사이버 윤리의 기본원칙인 RRJN원칙을 모두 지킬 수 있는 내용으로 실시한다.

유해 사이트를 발견하면 즉각 신고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네티켓을 지키지 않는 네티즌에 대해 청소년들 스스로 정화시키려는 실천의지 교육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홍보하고 레드카드 발급제를 실시하며 이에 대한 각자의 경험담을 공유하고 자신의 피해사례를 공개한다. 이러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Say No' 사업을 전개한다. 'Say No'란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는 사이트에는 접속 'No',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는 개인에게 진입 'No', 남을 비방하는 사연이 담겨있거나 유언비어 유포 'No', 폭력적 언어를 구사하는 등 남에게 불쾌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접했을 때 누구든지 'No'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 결과 인터넷 문화를 스스로 지켜나간다는 책임감을 인식시켜 외부로부터의 강압적인 통제가 아니라 자율적인 정화작업이 이루어지는 인터넷 문화를 조성한다. 인터넷 지킴이 활동을 하면 사회봉사활동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이점을 두어 청소년들이 책임감 있게 사이버 지킴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돋는다.

## IV. 학부모대상 미디어교육

### 1. 일반 학부모대상 교육

학부모대상 미디어교육은 가정 내에서 자녀의 미디어 활용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한다. 미디어교육이 실시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가정이다. 부모가 가정 내에서 자녀의 인터넷 이용 행태에 적절히 개입하고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자녀가 인터넷을 사용할 때 안심할 수 있도록 할 때 효율적인 사이버 미디어교육이 정착될 것이다.

학부모 미디어교육은 일반 학부모와 활동가형 학부모대상 교육으로 구분해 실시한다. 이를 위해 사회 단체의 커리큘럼을 활용해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이러한 과정교육시스템의 제도적인 정착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학부모대상 미디어교육의 내용에는 인터넷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한다. 학부모가 청소년의 인터넷 활용 실태와 이에 따른 영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며 자녀들을 위한 건전한 인터넷 환경 수호의 책임을 인식을 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더불어 음란물 차단 소프트웨어를 소개하는 등 자녀에게 유해한 콘텐츠를 차단하기 위한 기술방안에 대해 정보를 알려주고 피해사례가 발생했을 때의 대처방안을 미리 숙지하도록 교육해야한다.

학부모대상 미디어교육의 방법은 단기교육 중심으로 높은 효과를 내도록 지역 평생학습센터나 문화시설, 시민회관의 강좌 등을 통해 자치단체의 주관 하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학부모대상 미디어교육은 이를 정보통신부 주부 정보화 교육과 병행하는 것과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학부모회 대상의 미디어교육을 강화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 2. 활동가 양성 학부모교육

활동가를 양성하기 위한 학부모대상 미디어교육은 가정 내에서 자녀의 미디어 활용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 수준을 넘어서서 불법사이버 문화를 감시하고 축출할 수 있는 활동가 수준의 능력 배양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활동가를 양성하는 미디어교육의 내용에는 기본적으로 일반 학부모대상의 교육내용과 함께 구체적 활동가로서의 활동의미와 방법, 활동단체 현황과 가입방법 등이 포함되어야한다.

활동가 양성 학부모교육은 활동가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전문단체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들이 각 단체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일원이 되도록 하며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V. 교사대상 미디어교육

교사대상 미디어교육의 목표는 학습증진에 유익한 도구로서의 인터넷 문화 확립(Useful-net Project)에 있다. 더불어 학생지도 차원에서 사이버문화를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고 관련 교과목 수업과정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체득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킨다.

교사대상 교육에는 인터넷 일반에 관한 이해를 돋는 내용과 사이버문화의 특징과 그 특징을 반영한 사이버윤리의 방향과 원칙에 대한 이해를 돋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교사연수과정 활용하여 미디어교육지도자 양성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관련교과목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와 CEO 대상교육, 인터넷 중독을 전문으로 상담하는 교사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 1. 관련교과목 교사연수

각 담당과목별 미디어교육이 가능하도록 전 교사가 미디어교육 전문가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각 과목의 교사 연수 시 미디어교육 과정을 의무화하고 교육대학, 사범대학, 교육대학원 등 교원을 양성하는 고등교육과정에 미디어교육과정을 개설하도록 한다. 교사간 미디어교육 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교원단체 차원에서 상호교류를 위한 장을 열고 정보공유채널을 운영하는 것도 교사대상 미디어교육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방안이다.

### 2. 교장교감 연수

미디어교육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실시방안에 관해 학교의 책임자급 CEO에 대한 연수가 필요하다. 각급 학교의 운영에 관한 결정권이 교장 교감에게 있으므로 그들에게 미디어교육이 무엇이며 왜 해야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시해야하는지에 대해 정기적으로 교육하여 교사들이 실제로 학교에서 미디어교육을 실시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한다.

### 3. 인터넷 중독 전문 상담교사 양성 프로그램

인터넷 중독 같은 인터넷 활용과 관련된 청소년 문제를 학교 내에서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지도해줄 수 있는 교사를 양성해내야 한다. 그러자면 기존 상담교사를 재교육하거나 사이버 중독에 관심 있는 교사가 전담할 수 있도록 전문 교육과정을 개설한다. 상담실이나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전문상담역을 수행하고 상담교사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호정보를 교류해야한다.

## **VII. 제도적 정착을 위한 추진전략**

### **1. 미디어교육지도자 양성 전문교육기관 운영**

일정자격을 갖춘 교육기관 중 정부에서 지정한 단체를 선정하여 미디어교육 지도자 전문양성교육을 실시한다. 여기에는 사회단체 미디어교육 담당실무자와 관심 있는 활동가학부모, 학교 내 전문상담교사 등을 대상으로 전문교육과정이 각각 설치되어 운영해야 한다. 교육 이수자에 대해 미디어교육 지도사 자격을 부여하고 이의 지정절차와 운영방법 등의 구체적 방안은 교육인적자원부 중심으로 수립한다.

### **2. 미디어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미디어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추진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여기에는 미디어교육 단체와 학계가 공동참여해야 한다. 지금같이 여기저기에서 간헐적으로 만들어지는 교재가 아니라 연령층을 세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여 학계와 시민단체 전문가, 교사들이 참여하는 커리큘럼개발 프로젝트팀을 운영하는 등 체계적인 커리큘럼의 개발이 있어야한다. 각 교육대상별 특성에 부합하는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정부는 재정지원을 아끼지 말아야한다.

### **3. 각급 교육과정에 “미디어교육”과목 신설**

공무원 교육과정에 미디어교육을 신설해 국가 및 지방공무원 교육과정에도 모두 미디어교육과목을 신설하여 미디어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마인드를 심어주어야 한다. 민간기업의 직원 연수과정에도 미디어교육을 신설할 것을 권장하며 보편적 사이버윤리의 필요성과 실천방안 등을 알고 실천하도록 교육한다. 이에 대한 전문강사로 시민단체의 미디어교육 전문 강사진을 활용한다.

### **4. 정부의 재정지원 방안**

정부의 재정지원 방안으로 검토할 수 있는 재원으로는 정보화촉진기금(정보통신부), 청소년 육성기금(문화관광부), 방송발전기금(방송위원회) 등이 있다. 기금의 활용방안으로는 각 기금의 용도에 「미디어교육 지원」을 명시하고 각 기금을 활용한 미디어교육 종합계획을 사업 시행연도 개시 3개월 전에 관계부처 협동으로 마련한다. 현재 미디어교육에 대한 지원이 명시되어 있는 기금으로는 방송발전기금이 있다. 정부예산의 경우 각 부처별 소관기능에 따라 미디어교육에 관

련된 예산을 각기 확보하여 사업을 실시한다.

## 5. 인터넷 피해 청소년 지원센터(가칭) 설립·운영

인터넷 피해 청소년 지원센터는 인터넷 매체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피해 구제센터로 예방과 치료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

주요 대상별 컨설팅 지원으로는 사업자지원과 학교지원, 가족지원, 상담전문가 지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사업자 지원에는 청소년대상의 게임, 컨텐츠 등 제공사업자에 대한 윤리적 컨설팅 지원이 포함된다. 학교를 지원하는 방법에는 피해학생 지도운영 등에 대한 상담교사 컨설팅이 포함되며 가족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등교거부나 게임중독에 빠진 자녀를 지도하기 위한 부모에 관한 컨설팅이 포함된다. 상담전문가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각종 상담활동 전문가에 대한 인터넷 피해상담 기법을 컨설팅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부분은 중증 청소년에 대한 의료적 개입이다. 정신과 전문의와 연계하여 중증청소년에 대한 조기치료를 통해 사회복귀를 돋는 역할을 한다. 다양한 치료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 인터넷유해환경의 자율규제 방안

황 성 기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

## I. 인터넷에서의 자율규제의 필요성 및 한계

### 1. 인터넷환경의 등장과 규제철학의 변화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매체환경이 조성되면서, 그에 대한 규제방식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방식에 대한 시도가 진행중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인터넷의 등장으로 대표되는 매체환경의 변화가 ‘청소년의 보호’라는 규제목표의 변화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즉 청소년보호라는 규제목표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단지 그 규제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의 변화가 요구될 뿐이다.

다만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변수가 존재한다. 첫째, 매체의 특성이다. 즉 청소년보호를 위한 규제시스템이 규제의 효율성과 표현의 자유의 극대화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매체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표현물 규제시스템은 청소년보호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위험성을 내포할 수도 있다. 둘째, 규제수단의 효율성이다. 규제수단의 효율성은 청소년보호라는 규제목표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한, 그 목표달성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결국 이 두 가지 변수로 인하여 규제방법의 변화는 필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청소년보호라는 공익달성과 표현의 자유의 극대화라고 하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체규제의 합리화’가 필요하며, 이러한 매체규제의 합리화는 특히 오늘날 인터넷환경에서는 자율규제시스템의 구축을 통해서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청소년보호라는 공익달성과 표현의 자유의 극대화라고 하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중 자율규제모델에 대한 하나의 추상적인 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모델은 매우 추상적인 수준의 것으로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위해서는 보다 깊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물론 ‘자율규제’ 그 자체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고, 또한 다양한 자율규제모델들이 존재할 수 있다.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이제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어떠한 형태의 자율규제모델을 채택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이제는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2. 자율규제의 필요성 및 한계

#### (1) 자율규제의 필요성과 장점

##### 1) 자율규제의 필요성

그럼 왜 자율규제가 필요한가? 여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논거들이 제시되어 왔다.

우선 인터넷은 기존의 매체에 비해서는 진입장벽이 낮고 또한 이용자의 접근가능성이 높은 매체이다. 하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불법정보가 만연하게 되고, 청소년유해정보도 아무런 여과 없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기존의 법체계하에서는 매체에 대한 통제가 가능했으나, 인터넷이 등장함으로써 기존의 법체계로 통제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또한 인터넷의 국제적 매체로서의 특성 때문에, 자국 외의 컨텐츠에 대해서는 자국법을 곧바로 적용하여 통제하기가 쉽지 않다.

결국 이러한 매체환경의 변화 및 위에서 언급한 규제방법의 변화와 관련하여 설득력있게 제기되고 있는 것이 자율규제방식이다. 여기서 필자는 ‘자율규제’를 “자유방임”이 아닌 “민간영역이 전통적인 정부영역에 해당되었던 규제영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규제의 합리화 및 효율성을 추구하는 규제방식”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즉 불법정보에 대한 종국적인 규제권한은 여전히 국가가 가지고 있고<sup>4)</sup>, 단지 민간영역이 주도하는 자율규제시스템은 민간영역의 구성원들에 대해서 자신들의 책임의 범위 및 한계를 명확히하고(responsibility), 불법정보를 발견하여 사법기관에 신고하며(reporting), 인터넷상의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의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적절한 컨텐츠분류체계(rating)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터넷을 보다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규제방식이라는 점이다.<sup>5)</sup>

## 2) 자율규제의 장점

위와 같은 자율규제의 장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sup>6)</sup> 즉 인터넷에 있어서 효율적인 자율규제시스템은, 정부의 지원 및 협조와 상응하는 경우에는, 강제적인 정부규제에 비해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기술의 발전속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자율규제의 일반적 장점으로는 효율성, 융통성, 준수의 자발성제고, 사회적 비용의 절감을 들 수 있는데, 특히 인터넷에서의 자율규제는 인터넷의 매체적 특성과 조화되는 경우에는, 궁정적인 방향으로 인터넷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면서 자신들의 영업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적절히 운영하는 것이 사업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용자들이 인터넷상의 유해정보에 여과 없이 자신이 가족이나 자녀가 노출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의 이용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 (2) 자율규제의 한계

4) 물론 불법정보의 범위 내지 구체적 적용에 있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5) 참고로 영국에서 1996년 9월 23일 Internet Service Provider Association(ISPA), London Internet Exchange(LINX), Safety-Net Foundation에 의해 공동으로 채택된 「R3 Safety-Net: Rating, Reporting, Responsibility for Child Pornography & Illegal Material on the Internet」를 참조할 것.

6) Jens Waltermann & Marcel Machill(ed.), *Protecting Our Children on the Internet: Towards a New Culture of Responsibility*, Bertelsmann Foundation Publishers, Gütersloh, 2000, 35-36면.

하지만 인터넷에서의 자율규제는 정부영역의 지원없이는 결코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자율규제는 민간영역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자율규범과 이의 준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분명히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자율규제시스템의 구축은 가능한 한 정부영역, 사업자영역, 이용자영역(자율규제기구 포함)들간의 상호협조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자율규제와 법적 규제는 상호보완적인 장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3. 우리나라에서의 자율규제시스템의 부재원인

그런데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히 매체규제와 관련하여서는 자율규제시스템이 거의 부재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 자율규제역량의 부족을 들 수 있다.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우 자율규제의 경험이 거의 전무하였기 때문에, 민간영역에서의 자율규제역량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매체에 대한 민간단체에서의 활동이 체계화되지 못하였고, 불법정보에 대한 감시체계도 부재하였으며, 사업자영역에서의 자율규범을 통한 자율규제도 본격화되지 못하였다.

둘째, 자율규제도내의 결핍을 들 수 있다. 기존의 국가 주도의 내용규제시스템(특히 심의기관에 의한 등급분류제)의 존재로 인해 매체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자는 정부규제의 객체에 머물렀지, 규제시스템의 주체로서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셋째, 매체의 특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율규제시스템이 부재한 것은 기존의 매체들이 일방성을 그 특성으로 가졌기 때문에, 정보를 수용하는 이용자는 소극적인 정보수용자에 머물러 있었고, 적극적인 정보이용자가 아니었다는 점에서도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정보에 대한 통제권이 정보제공자에 있었지, 정보수용자에 있지 않았었다.

## II. 우리나라에서의 인터넷 자율규제시스템의 기본방향

### 1. 민·관 합동규제시스템의 구축

인터넷이라는 환경에서는 오직 하나의 방식 내지 어느 한 영역에서의 주체들에 의해서만 인터넷상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지 못한다. 즉 현재 “온라인상에서 청소년유해표현물로부터 청소년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기술이나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No single technology or method will effectively protect children from harmful material online).”<sup>7)</sup> 따라서 인터넷상의 불법정보에 대응하고,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종합적(integrated), 체계적(systematic), 동적(dynamic)이고도 공중의 요구(public needs)나 국가적 특성(national differences)에 적절히 반응하는 접근방법뿐만 아니라 국제적(international) 접근방법이 필요하다.<sup>8)</sup>

7) Commission on Child Online Protection(COPA), *Report to Congress*, 2000. 10. 20., 9면.

8) Jens Waltermann & Marcel Machill(ed.), *Protecting Our Children on the Internet: Towards a*

이러한 종합적, 체계적, 국제적 접근방법의 일환으로서, 그리고 ‘인터넷규제의 합리화’를 위해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의 새로운 인터넷 내용규제시스템은 민간영역과 정부영역이 상호협력하는 소위 ‘민·관 합동규제시스템’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sup>9)</sup> 이러한 ‘민·관 합동규제시스템’은 인터넷상의 자율규제를 근간으로 하여 표현의 자유를 극대화하면서도, 불건전정보(불법정보 및 청소년유해정보)의 합리적 규제를 통한 청소년보호의 공익실현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민·관 합동규제시스템의 구축을 위해서는, 현재 정부영역의 정책 및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의 자율규제능력의 제고 및 자율규제를 위한 기반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필자는 기본적으로 궁극적인 민·관 합동규제시스템의 구축 그리고 자율규제시스템의 정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측면에서 기본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민간 특히 이용자영역에서의 인터넷감시망의 구축(reporting or hotline)이다. 이것은 불법정보의 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둘째, 사업자영역에서 사업자행동강령에 의한 자율규제(responsibility)이다. 이것은 불법정보의 축출 및 청소년유해정보의 합리적 유통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셋째, 내용선별소프트웨어의 배포 및 등급시스템의 구축(rating)이다. 이것은 정보이용자의 정보통제권 내지 정보통제능력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 2. 자율규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기본전제

그런데 자율규제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본전제가 달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전제요소들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 (1) 민간영역(사업자 및 이용자)의 책임

인터넷사업자영역과 이용자영역으로 구분되는 민간영역은 자율규제를 운영하는 주체인 동시에 자율규제의 규율대상이 되는 객체가 된다. 그런데 자율규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자율규제의 주체이자 객체인 민간영역은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자신의 책임(responsibility)과 의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없이는, 정부영역의 지원과 정책은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다.

#### 1) 인터넷사업자의 책임

일반적으로 인터넷사업자는 영리목적의 인터넷서비스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 ISP), 인터넷컨텐츠호스트(Internet Content Host: ICH), 인터넷컨텐츠제공자(Internet Content Provider: CP)로 구분될 수 있다. 이를 사업자는 보다 안전한 인터넷(safer Internet)의 구축이 자신의 사업기반의 조성에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인터넷상에서 불법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그리고 청소년유해정보가 청소년에게 아무

---

*New Culture of Responsibility*, Bertelsmann Foundation Publishers, Gütersloh, 2000, 26면.

9) 예컨대 외국의 경우 영국, 호주가 민·관 합동규제시스템을 구축하여 가동중인 것으로 보인다.

런 통제없이 유통되지 않도록 이들 사업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청소년유해정보가 청소년에게 여과없이 유통되지 않도록 내용별소프트웨어를 학부모나 교사 등 청소년의 교육·양육을 책임지는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거나, 이것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인터넷컨텐츠호스트는 자신이 호스팅하는 컨텐츠가 불법정보라는 점을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삭제해야 하며, 청소년유해정보의 경우에도 청소년에게 아무런 통제없이 유통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호스팅하는 컨텐츠에 대한 이의제기(complaint)가 이용자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의제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가능한 한 빨리 취하고, 그 결과에 대한 통지를 이용자들에게 가능한 한 빨리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컨텐츠제공자는 자체적인 자율심의를 통해 불법정보를 유통시키지 않도록 하고, 청소년유해정보의 경우에는 청소년유해표시나 등급표시를 해야 할 것이다.

## 2) 인터넷이용자의 책임

인터넷이용자는 자율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이의제기(complaint)를 통해 인터넷사업자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율규제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한다. 따라서 인터넷이용자는 자신들이 단지 인터넷의 수혜자가 아닌 인터넷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참여자로서의 책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 (2) 사법기관의 권한행사에 있어서의 예측가능성보장

자율규제시스템이 정착되고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특히 규제기관<sup>10)</sup>의 권한행사가 예측가능성을 담보해야 한다. 그리고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규제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규제권한의 융통성있고 신중한 행사가 필요하다. 규제기관에 의한 규제권한의 발동이 융통성있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그 운영의 경직성이 자율규제의 정착을 위한 토대마련에 있어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규제기관의 권한행사에 있어서의 예측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행동강령에 의한 자율규제나 자율심의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본전제가 되기 때문이다. 즉 행동강령은 자율규범이기 때문에, 행동강령에 의한 자율규제나 자율심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법집행의 대상에서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행동강령에 의한 자율규제나 자율심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컨텐츠의 내용에 대한 법적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점은 바로 자율규제의 한계로서도 작용하는데, 결국 자율규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규제기관의 합리적인 권한행사가 필수적이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까지의 규제기관에 의한 규제권한의 행사는 다소 경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1998년의 이승희씨 누드사진사건, 1998년의 PC통신회사의 성인마당사건, 올해 초의 성인인터넷방송사건에서부터, 최근의 김인규 교사사건과 아이노스쿨사건까지, 규제기관의 규제권한발동은 이러한 예측가능성을 보장해 주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비판받을 여지가 크다.

10) 여기서 규제기관이란 검찰 등의 사법기관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 III. 우리나라에서의 자율규제모델의 내용

#### 1. 인터넷감시망을 통한 불법정보 감시체계의 구축

인터넷감시망은 불법정보에 대한 감시 및 축출에 있어서 정부영역이 갖는 한계를 보충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또한 인터넷감시망은 사법기관 - 인터넷사업자 - 인터넷감시망 - 이용자간의 원활한 네트워크구축을 통해 각 영역의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규제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8년경부터 온라인 감시단체들이 활동을 시작하여 학부모정보감시단(cyberparents.or.kr), 한국사이버감시단(www.wwwcap.co.kr), YWCA 등이 그 기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국내 인터넷감시망은 거의 대부분 민간단체형이며, 온라인감시만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단체가 만들어지기보다는 기존의 off-line 청소년보호 관련 단체 및 시민단체가 on-line 영역으로 그 기능을 확장한 것이다. 그리고 인터넷사업자형이나 공공기관형이 없는 것은 국내의 인터넷사업문화, 인터넷 산업분야의 자율규제 부진과 인터넷 내용규제의 심의구조 등 객관적인 조건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sup>11)</sup> 그런데 현재의 민간단체 주도의 인터넷감시망은 체계적인 운영과 상호협력을 위한 네트워크의 구축이 미미하여 본격적인 의미에서의 인터넷감시망이 구축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sup>12)</sup>

따라서 인터넷감시망의 구축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정책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특히 인터넷사업자형과 민간단체형이 주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sup>13)</sup> 인터넷사업자형 감시망의 구축과 관련해서는, 그 구축에 관한 사항은 사업자행동강령에서 그 내용으로 포함되도록 해야 하고, 구축비용은 전적으로 사업자들에 의해 제공되도록 하며, 자율규제의 취지에 맞게 인터넷사업자형 인터넷감시망의 조직과 운영은 전적으로 사업자들의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반면 민간단체형 감시망의 구축과 관련해서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감시망에 대한 충분한 재정지원 및 행정지원을 통해 효율적인 체계구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민간감시단체에 대한 지원을 위한 입법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러한 인터넷감시망의 구체적인 역할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상정할 수 있다.

첫째, 인터넷상의 불법정보에 대한 신고 및 고발을 상정할 수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불법정보에 대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을 가이드라인의 형태로 인터넷감시망에 제공할 필요가

11) 최승훈, “인터넷 감시망 구축을 위한 연구”, 「지식문화아카데미 포럼」 2001년 2월호 제1권 제1호(통권 1호), 89-90면. 한편 외국의 경우에는 특히 영국의 IWF(Internet Watch Foundation)가 대표적인 인터넷감시망으로서, IWF는 사업자형 인터넷감시망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유럽의 인터넷감시망의 연합네트워크인 INHOPE가 존재한다.

12) 물론 최근에 ‘안전한온라인을위한민간네트워크(safeOnline network)’가 결성되어, 앞으로의 활동이 주목된다. www.safeonline.or.kr 참조.

13) 한편 최승훈은 민간감시망의 환경을 볼 때, 공공기관형이나 인터넷사업자형보다는 민간단체형의 감시망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왜냐하면 인터넷규제의 공적 기구가 사법기관과 심의기관으로 나누어져 있는 하부구조를 감안할 때, 공공기관형(사법기관이 운영하는)의 감시망은 적절하지 않고, 또한 신뢰성있는 인터넷사업자단체 및 인터넷사업자윤리강령의 부재, 상대적으로 많은 인터넷사업자의 수 등을 감안할 때, 인터넷사업자형의 감시망은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최승훈, “인터넷 감시망 구축을 위한 연구”, 「지식문화아카데미 포럼」 2001년 2월호 제1권 제1호(통권 1호), 93-94면.

있을 것이다.<sup>14)</sup>

둘째, 해외 호스팅 불법사이트에 대해 필터링 DB에 추가도록 해당 필터링업체에 통보하는 것을 상정할 수 있다.

이외에도 기타 국제 NGO간 공조체제의 유지를 위해 국제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할 수도 있다.

## 2. 사업자행동강령에 의한 사업자의 자율규제

영리의 목적으로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므로, 인터넷에 대한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져야 한다. 사업자들의 법적 책임 이외에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사업자행동강령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업자행동강령에는 법적 책임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에 의해서만 규율될 수 없는 사업자들의 각종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사업자행동강령에 의한 자율규제는 국가에 의한 법적 규제의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즉 사업자행동강령에 의한 자율규제는 규제기관의 권한행사의 예측가능성의 확보와 맞물려 있다. 따라서 사업자행동강령에 의한 자율규제가 원활하게 작동되는 경우에는, 국가가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법적 규제권한을 발동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현재 사업자행동강령의 유형에는 사업자단체의 순수한 자율에 의해 제정되는 인터넷사업자단체형 강령(Industry Association Codes), 정부 주도형 강령(Government Enhanced Codes), 개별기업형 강령(Company Codes)이 있다.<sup>15)</sup> 그리고 인터넷사업자단체형 강령의 대표적인 경우는 영국의 인터넷서비스제공자협회(ISPA)의 강령이고, 정부 주도형 강령의 대표적인 경우는 호주<sup>16)</sup>, 싱가포르가 해당되며, 개별기업형 강령의 대표적인 경우는 AOL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14) 영국의 IWF([www.internetwatch.org.uk](http://www.internetwatch.org.uk))는 특히 아동포르노에 대한 감시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5) 정보통신윤리위원회, 「SafeSurfing 2001 보고서」, 2001.3., 18면.

16) 호주의 인터넷사업자협회(Internet Industry Association)에 의해 제정되고, 1999년 12월 16일 호주방송청에 등록을 하였으며, 2000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 호주의 인터넷사업자행동강령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첫 번째 부분(Content Code 1)은 인터넷접근 일반과 관련된 인터넷서비스제공자들(ISP)의 의무에 관한 것이다. 두 번째 부분(Content Code 2)은 호주 외에서 호스팅되는 컨텐츠에 대한 접근과 관련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의무에 관한 것이다. 세 번째 부분(Content Code 3)은 호주 내에서의 컨텐츠호스팅과 관련된 인터넷컨텐츠호스트(ICH)의 의무에 관한 것이다.

한편 호주의 인터넷사업자행동강령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인터넷사업자행동강령은 자율규제를 담보할 수 있는 자율규범으로서, 말 그대로 호주방송청과 같은 국가기관이 직접적으로 그 준수를 명령하지 않는 한 그 준수 여부는 전적으로 자발적인 것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사업자들이 행동강령을 채택하지 않거나 채택하더라도 그 내용이 매우 부실한 경우에는, 온라인서비스법에 의해 호주방송청은 사업자행동기준(industry standard)을 제정할 권한을 유보하고 있다(온라인서비스법 제68조-제71조). 그리고 이러한 사업자행동기준의 준수는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강제되는 것이다(온라인서비스법 제72조). 둘째, 호주의 인터넷사업자행동강령은 컨텐츠규제와 관련하여 컨텐츠제공자에 대한 직접적인 규율이 아니라,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내지 인터넷컨텐츠호스트(ICH)들에 대한 간접적인 규율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인터넷사업자행동강령이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인터넷서비스제공자나 인터넷컨텐츠호스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컨텐츠제공자 등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당연하다.

라의 경우는 1997년 4월 29일 제정된 정보통신사업자 윤리실천강령이 있으나, 내용이 매우 부실하다.<sup>17)</sup> 그리고 현재 컨텐츠제공과 관련된 사업자단체로는 한국콘텐츠사업연합회, 한국인터넷방송협회 등이 있으나, 이를 사업자단체들이 제정하거나 이를 사업자단체에 적용되는 행동강령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사업자행동강령의 제정에서부터 그 내용, 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보다 깊은 논의가 필요하고, 또한 다양한 모델이 존재할 수 있다.<sup>18)</sup> 하지만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행동강령의 제정을 유도하는 방안인데, 여기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 중의 하나로 사업자의 행동강령준수의무를 법제화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sup>19)</sup> 물론 행동강령 준수의무 그 자체는 선언적 성격에 머무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업자행동강령을 자발적으로 제정하고 시행할 수 있는 별도의 사업자협회 내지 자율규제기구(self-regulatory agency)의 구성이 필요할 것이다.<sup>20)</sup>

---

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호주의 인터넷사업자행동강령의 적용대상이 되는 인터넷사업자영역(section of the Internet industry)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와 인터넷컨텐츠호스트(Internet Content Host)를 의미한다. 셋째,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규제와 불법정보에 대한 규제를 분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불법정보에 대한 취급과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취급은 법적으로 엄연히 다르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다. 넷째, 이용자들에 대한 정보제공을 중요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인터넷의 내용규제시스템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사업자, 이용자의 자율규제방식이 근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즉 이용자에 의한 자율규제가 실효성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이 인터넷서비스제공자, 인터넷컨텐츠호스트, 컨텐츠제공자 등 사업자뿐만 아니라,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및 유통되는 컨텐츠 전반에 대한 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17) 1997년 4월 29일에 제정된 「정보통신사업자 윤리실천강령」은 '실천강령'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일반영역의 윤리강령 내지는 전문가영역의 윤리강령에 비해 그 형식이나 내용에 있어서 가장 부실하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즉 사업자윤리와 관련된 기본적인 덕목만 추상적으로 나열해 놓았을 뿐 구체적인 행동지침이나 이를 위반했을 때의 처벌규정 등이 전혀 없어서 그야말로 명목만 실천강령일 뿐 실제로는 강령으로서의 기본적인 역할과 기능을 전혀 발휘할 수 없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윤희, "정보통신윤리의 확립방안-정보통신윤리강령을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제3호(1998), 34면.

18) 예컨대 영국의 Stephaan Verlust 교수가 제시한 인터넷의 사업자행동강령 모델에 따르면, 강령의 집행에 관한 기구(제1장), 강령의 적용범위(제2장), 공공의 자문에 따른 강령의 재검토(제3장), 불법컨텐츠에 대한 처리절차(제4장), 청소년유해컨텐츠에 대한 처리절차(제5장), 필터링 제품 및 유사기술의 지원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제6장),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제7장), 이의제기처리절차(제8장), 사법기관과의 공조(제9장), 집행기구의 결정의 구속력 및 제재에 관한 사항(제10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SafeSurfing 2001 보고서」, 2001.3., 42-48면.

19) 사업자행동강령의 제정에 관한 사항이 입법화된 예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안전한 정보통신 환경조성을 위하여 윤리강령을 제정·실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최초 개정안 제36조 제4항과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기술사회(이하 "기술사회"라 한다)는 기술사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성실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윤리에 관한 강령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기술사법시행령 제3조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사업자의 행동강령준수의무를 명문화한 입법례로는 "학예사는 국제박물관협의회의 윤리강령과 국제협약을 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6조(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제3항을 들 수 있다. 한편 참고로 호주 온라인서비스법은 행동강령의 준수는 원칙적으로 자발적이지만, 호주방송청이 특정 사업자에게 행동강령을 준수하도록 지시하는(direct) 경우에는 강제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20) 구체적인 사업자행동강령의 제정과 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송석윤·박선영·황성기, 「신유형의 인터넷 컨텐츠에 대한 심의모델 개발」, 정보통신부, 2001.2. 참조.

이외에도 사업자에 의한 자율규제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으로서는 첫째, 사업자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자율적인 규제노력에 대해서는 각종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개별 사업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둘째, 사업자단체의 자율심의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도 있으며<sup>21)</sup>, 셋째, 소비자불만센터의 운영을 강제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sup>22)</sup>

### 3. 내용선별소프트웨어의 개발·보급 및 등급시스템의 구축(rating)

특히 청소년유해정보 규제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청소년유해정보(이른바, 성인정보)에 대해서 성인층의 접근을 보장하되, 청소년의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인터넷 내용등급제(Internet Content Rating System)가 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등급시스템의 구축 및 내용선별소프트웨어의 개발·보급을 통한 학부모 및 교사의 컨텐츠통제능력의 제고는 원래 기술적 규제방식이자 자율적 규제방식으로 출발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라고 하는 법적 규제방식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법적 규제방식인 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와 자율적 규제방식인 등급시스템 및 내용선별소프트웨어의 이용이 상호 보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작년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통해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채택하려고 하였으나, 시민단체 등의 강력한 반대로 ‘전면적인 인터넷 내용등급제’는 채택되지 못하였다. 다만 현행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의 연장선상에서 그 범위가 축소된 형태로 채택되었다고 할 수 있다.<sup>23)</sup> 결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표시의무는 청소년보호법상의 표시의무를 인터넷에 적용하기 위해 신설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표시의무와 그 위반시 제재를 가하는 제도는 염밀히 이야기하면 인터넷 내용등급제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표시의무는 다음과 같은 특징 및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1) 예컨대 현행 청소년보호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사업자단체에 의한 자율심의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 청소년보호법 제12조(유해매체물의 자율규제): ① 매체물의 제작·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는 자율적으로 청소년유해여부를 결정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에 그 결정한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매체물의 제작·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한 매체물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본다.

22) 예컨대 독일 청소년유해물법 제7조 a: 청소년보호문제에 관해 이용자와 상담을 하고 서비스제공자에게 조언을 하는 청소년보호담당자(Jugendschutzbeauftragte)를 임명하도록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보호담당자를 임명해야 하는 서비스제공자의 의무는 서비스제공자가 자율규제단체에 대해서 위와 같은 과제수행을 위임한 경우에는 실현된 것으로 보고 있다.

2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2조: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 중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전기통신을 통한 음성정보·영상정보 및 문자정보)로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당해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동 법 제64조: 제4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해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첫째, 표시의무의 대상이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기타 심의기관에 의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정보에 국한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기타 심의기관에 의해 현실적으로 심의될 수 있는 정보는, 인터넷상의 컨텐츠의 양적 확대의 추세를 감안할 때,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

둘째,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해서는 표시의무가 법적으로 강제되고,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유통시키는 경우에는 형사벌이 가해진다. 즉 표시의무가 입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현행 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의 연장선상으로서 그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형태의 인터넷 내용규제시스템이 민·관 합동규제시스템을 목표로 하는 것이고 또한 자율규제방식이 기본적인 방식이어야 한다면, 이러한 입법적 의무화가 갖는 한계는 분명히 존재한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문제점 때문에, 인터넷 내용등급제 즉 정보내용분류표시제는 분명히 확대되어야 한다. 하지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채택된 것 이상으로 확대하는 경우, 그 방식은 법적 의무화가 아닌 자율규제방식이어야 한다. 즉 비록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되지 않은 정보일지라도 정보제공자로 하여금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분류·표시하도록 유도하는 장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등급시스템의 구축 및 내용선별소프트웨어의 개발·보급을 통한 학부모 및 교사의 컨텐츠통제능력의 제고와 관련하여서는, 단기적 방안과 장기적 방안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여기서 단기적 방안은 내용선별소프트웨어의 개발·보급 및 가족전용네트워크의 활성화(filtering/blocking)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고, 장기적 방안은 등급시스템의 구축(labeling and rating system)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서 단기적 방안과 관련하여, 내용선별소프트웨어의 개발은 전적으로 규제기구가 아닌 민간자율기구 내지 시장원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단 내용선별소프트웨어의 개발을 국가가 하는 경우에도, 서비스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국가가 개발한 내용선별소프트웨어를 강제할 수는 없다. 가족전용네트워크의 활성화도 원칙적으로는 시장원리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민간부문에 의한 내용선별소프트웨어의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개발업자 내지 제조업자에 대한 여러 정책적 수단을 통해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sup>24)</sup>

한편 장기적 방안과 관련하여, 등급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는 원칙적으로 규제기구가 아닌 민간자율기구 내지 시장원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규제기구가 등급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를

24) 정부영역은 재정적·행정적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용선별소프트웨어와 가족전용네트워크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위해 소위 ‘승인제’를 채택하는 방안도 존재할 수 있다. 예컨대 호주의 경우에는, 설치의 용이함(ease of installation), 사용의 용이함(ease of use), 필터링되어야 하는 컨텐츠에 관한 업데이트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인터넷사업자협회로 하여금 필터링프로그램을 승인하도록 하는 승인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승인필터링프로그램(Approved Filters)의 종류는 1999년 12월 현재 호주의 인터넷사업자윤리강령(Internet Industry Codes of Practice) 부칙 1에 규정되어 있는데 모두 16종류에 이르고 있다. 즉 AOL PARENTAL CONTROL, BAIR FILTERING SYSTEM, CSM PROXY SERVER, CYBER PATROL, CYBER SENTINEL, EYEGUARD, GENESIS, IFILTER, INTERNET SHERIFF, I-GEAR, KAHOOTZ, KIDZ.NET, NET NANNY, SURFWATCH, TOO C.O.O.L, WEBSENSE가 바로 그것이다.

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에 의한 등급기준의 강제로 파악되어, 검열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sup>25)</sup>

기존의 RSACi모델이 컨텐츠분류표시(labeling)와 컨텐츠등급판정(rating)을 정보제공자 자신이 하느냐 아니면 제3자가 하느냐에 따라 자율등급시스템(First-party labeling/rating system)과 제3자등급시스템(Third-party labeling/rating system)으로 구분되었다. 새로운 ICRA모델에 의하면, 컨텐츠분류표시는 정보제공자가 함으로써 ‘통일성’을 보장하고, 컨텐츠등급판정은 제3자가 함으로써 ‘다양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등급시스템의 개발이 시도되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 방안은 컨텐츠분류표시(labeling)을 장려하는 방안과 컨텐츠등급판정(rating)서비스의 개발·보급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구분해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IV. 결론

이상에서는 민간영역과 정부영역이 상호협조하는 형태의 자율규제모델에 관해 매우 추상적인 수준에서 언급하였다. 자율규제의 문제는 사실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자율규제’ 개념 그 자체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구체적인 자율규제모델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할 수 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인터넷규제와 관련하여 민간영역이든 정부영역이든 일정 정도 자율규제방식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의 자율규제모델을 채택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논의를 진지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발표를 마치고자 한다.

---

25) 여기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해 준비중인 등급시스템이 비판을 받는 이유가 바로 정보통신윤리 위원회의 법적 위상 즉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규제기관이라는 점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규제기관으로서의 성격을 탈피하지 않는 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해 준비중인 등급시스템은 ‘정부에 의한 서비스’라기보다는 오히려 ‘정부에 의한 검열’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게 된다.

# 인터넷 시대의 법 · 제도정비 방안

황승흠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

## I. 현행 법 · 제도 개관

### 1. 인터넷 불건전정보규제에 관한 정부의 정책

- 전자 · 통신기술 발달에 따라 청소년보호를 위한 기술개발 · 연구사업의 지원, 국가간 협력체계 구축 (청소년보호법 제5조제2항)
- 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 확립(정보화촉진기본법 제12조의2)
- 정부의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시책 강구(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제4조제7호)
- 불건전정보 규제를 위한 기술 개발 및 보급(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41조제1항)
- 공공기관에 대한 불건전정보 접속 차단 소프트웨어 설치 권고(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건전 서비스 기술기준 준수권고(정보화촉진기본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
-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제3조제3항 및 제41조제2항, 청소년보호법 제28조제7호)
- 국제협력(청소년보호법 제5조제2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3조제3호)

### 2. 인터넷관련 용어 규정현황

-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
  -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 가공 · 저장 · 검색 · 송신 또는 수신

## 하는 정보통신체제

- “전기통신”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
  -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 컴퓨터통신 (청소년보호법 제20조제1항제3호)
  - 별도의 용어정의 규정 없이 동조문에서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이 없는 컴퓨터통신”으로 용어사용

### 3. 불건전정보에 대한 정의

- 불온통신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제1항)
  -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
- 불건전정보 · 유해정보
  -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3호)
  - 음란물 및 폭력물 등 불건전정보(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 제11조의2제1항)
  - 음란·폭력정보 등의 유해한 정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 청소년이용음란물(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
  - 청소년이 실연한 음란물

### 4. 유해컨텐츠에 대한 규제

#### 가. 불온통신에 대한 규제

- 정보통신부장관의 불온통신 규제권(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제3항)
  - 정보통신부장관은 불온통신에 대하여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음 (명령 미이행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 및 시정요구(이용자 경고, 해당정보삭제, 불온 통신자 이용정지 · 해지)
  -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전기

통신사업법 제53조의2제4항 제2호)

#### 나. 음란정보의 형사처벌

- 정보통신망이용음란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 ※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 가능
- ※ 형법 제243조(음화반포 등)는 인터넷에 적용되지 않음 (대법원 판례 '99. 2. 24)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반포 등에 관한 죄(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제8조)
    -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
    -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 청소년을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 ※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수입·수출한 자에 대해서는 신상공개 (청소년성보호에 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 다. 청소년유해정보의 규제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 결정 ⇒ 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 ⇒ 효력발생

- 청소년유해매체물 판매금지(청소년보호법 제17조)
  -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이를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함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16조제1항)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의무 (청소년보호법 제14조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모든 매체물에 대해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함 (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정보보관의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3조)

- 이용자의 컴퓨터에 저장 또는 기록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정보제공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당해 정보를 보관 (위반시 500만원이하 과태료)

○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훼손금지(청소년보호법 제16조)

- 누구든지 청소년 유해표시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시 500만원이하 벌금)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구분·격리(청소년보호법 제18조)

-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허용되지 않는 매체물을 구분·격리하지 아니하고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진열 하여서는 아니됨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라. 게임물의 규제

○ 게임물의 정의(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

- 컴퓨터프로 그램에 의하여 오락을 할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유형물에의 고정여부를 가리지 아니한다)

○ 게임물의 등급분류(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18조)

- 게임물의 유통을 목적으로 제작하거나 수입 또는 반입 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함
-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사행성이 지나쳐서 등급을 부여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게임물에 대해서는 사용불가로 결정할 수 있음. 이 경우 사용불가로 결정된 게임물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유통되어서는 아니됨.
-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작·유통·시청제공 또는 오락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18세이용가> 등급에 해당하는 게임물은 연소자에게 유통·시청제공 또는 오락제공을 하여서는 아니됨.

#### 마. 유사방송정보의 규제

○ 유사방송정보의 범위 (방송법시행령 제21조제1항)

- 방송·중계유선방송 및 전광판방송의 내용과 기타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 중 방송과 유사한 것으로서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 방송사업자가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방송”, “TV” 또는 “라디오”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일정한 편성계획에 따라 유통시키는 정보

○ 유사방송정보의 심의(방송법 제32조제1항)

- 방송위원회는 유사방송정보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방송 또는 유통된 후 심의·의결함. 이 경우 매체별·채널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함
- 방송위원회는 유사방송정보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그 정보의 제공자에 대하여 이의 시정을 권고할 수 있음(방송법시행령 제21조)

## II. 우리 나라의 인터넷 내용규제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

### 1. 인터넷 내용규제 시스템의 전반적 문제점

○ 법·제도 정비의 미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로 재정비하였으나,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제도, 불법정보의 감시체계, 인터넷 사업자의 책임 등에 관한 법제도가 정비되지 못함으로써 여전히 많은 법적 과제를 안고 있음

○ 온라인에 고유한 체계적인 시스템의 미비

- 현행 규제 시스템은 불온통신에 대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시정요구 및 정보통신부장관의 취급거부·정지·제한명령,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정보통신윤리 위원회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로 대별
- 그러나 불온통신에 관한 규제는 적용범위가 광범위하고, 전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청소년 유해매체물 제도는 주로 오프라인의 매체를 전제로 규정되어 있고 인터넷에 관련되어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뿐임
- 온라인에 고유한 체계적인 내용규제 시스템 구축 차원에서 기존 법제도의 정비가 요구됨

○ 여러 차원의 법규정이 혼재되고 비체계적으로 적용

- 인터넷 내용규제 관련 규정이 체계적 관점에서 도입된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을 전제로 만들어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거나, 다른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법규정이 중첩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관할기관이 중복적으로 관계하고 있음

○ 민관공동규제 체제의 미비, 정부중심의 내용 규제

- 법·제도에서 제시하고 있는 규제수단이 정부기구에 의한 행정규제 및 사법기구에 의한 형사

처벌에 한정하고 있어서 사업자 및 민간단체에 의한 자율규제, 민간감시망 구축, 이용자의 선택권강화를 위한 다양한 수단의 개발 및 보급 등 세계적인 추세인 민·관공동 규제체계 확립에 대한 접근이 미흡함

- 유통이 금지되는 불온통신의 규제에 있어서는 민간에 의한 자율규제 시스템이 전무하고,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있어서는 청소년보호법에 민간자율단체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 확인제도가 규정되어 있으나 인터넷 컨텐츠에 있어서는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는 실정임

## 2. 법체계상의 문제점

### ○ 법률간 상호 연계성 결여

- 인터넷 내용규제 관련 법규정이 각기 다른 목적으로 제정되고, 다른 개념을 사용하는 여러 법률에 상호 연계성이 없어 혼재되어 있어 체계적인 법적용에 어려움이 있음
- ※ 정보화촉진기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성폭력특별법,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방송법

### ○ 법률규정의 낙후성

- 기술의 변화에 따라 법규정이 변화해 왔으나 이전 기술에 기반을 둔 법규정이 그대로 존속하는 경우가 많아 인터넷 내용규제의 범위가 모호하여 과도한 규제로 비판받거나, 규제가 곤란한 경우가 많음
- ※ 전화 중심의 전기통신에서 출발하여 인터넷의 등장으로 정보통신망의 규제 등 법규정이 변화되고 있으나, 전기통신 개념이 여전히 사용
- ※ 청소년보호법은 종전 오프라인 매체 기준의 법조문을 그대로 온라인에 적용하고 있어 현실과 괴리

### ○ 법률규정의 불명확성

- 사업규제 또는 산업진흥, 행정편의 등을 위하여 적용대상 및 적용범위가 광범위한 법개념(전기통신,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사용되는 법률에 내용규제에 대한 사항이 삽입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내용규제에 적용대상 및 적용범위가 광범위하게 되고,
- 정부기관의 과도한 권한집중 및 표현의 자유 억제 등의 결과를 낳고 있음

## 3. 적용대상 및 적용범위의 문제점

### ○ 법률적 개념의 불명확성

- 인터넷이라는 특수한 매체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전화 혹은 PC통신을 기반으로 하는 법개념이 그대로 통용되고 있음
- 현재 전기통신, 정보통신망, 컴퓨터통신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나, 이는 서로 적용 범위가 다른 개념임

- 현재의 법규정으로 볼 때, ‘정보통신망’이 가장 인터넷의 특성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매체를 지칭할 때는 정보통신망이라는 용어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함
- ※ 전기통신은 주로 ‘전화사업’을 기반으로 하는 개념으로 여기에 ‘전자적 방식’이라는 개념이 있어 인터넷을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르면, 인터넷과 전화, 전신 팩스 등 다른 통신수단과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고, 인터넷에 고유한 성질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어려움이 있음
- 컴퓨터통신이라는 용어는 비교적 인터넷의 성격을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별개의 용어정의가 없고 현재 컴퓨터가 여러 가지 통신기기에 응용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이 역시 적용범위가 넓다는 한계가 있음

○ 인터넷 내용규제 대상의 불명확성

- 현행 법제도가 전기통신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전제로 1:1 커뮤니케이션이나 1:다수 커뮤니케이션을 구별하지 않아 내용규제 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한 일반전자우편과 같은 1:1 커뮤니케이션 까지 적용되고 있음
- 예측가능성의 확보를 위하여 법규정으로 내용규제가 적용되는 1:다수 또는 다수:다수 커뮤니케이션의 범주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전기통신사업법의 내용규제에 따른 문제점

- 산업규제법인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인터넷내용규제 사항까지 규정하고 있어 산업규제 목적으로 설정된 전기통신사업자가 인터넷 내용규제의 적용대상이 되고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 야기

※ 전기통신사업자 개념은 통신산업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주로 통신서비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컨텐츠를 공중(public)에게 전달하는 인터넷 환경에는 적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전기통신은 통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주로 프라이버시 보호, 구체적으로 통신 비밀보호가 주된 문제임. 인터넷의 경우에도 일반 전자우편, 채팅 등 일대일 커뮤니케이션의 경우에는 통신비밀 보호가 주된 문제로 나타남
- 그러나 월드와이드웹이나 뉴스그룹 등은 일대다 또는 다대다 커뮤니케이션 방식으로 내용 규제의 문제가 중심과제로 등장함
- 인터넷 내용규제의 문제는 일대다 커뮤니케이션 방식에서 문제되는 것이므로 전화나 일반 전자우편의 경우는 통신비밀보호의 영역으로 내용규제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모든 통신사업자를 포괄하고 있는 전기 통신사업자의 개념은 인터넷 내용규제에는 적합하지 않고, 별도의 인터넷 사업자 개념을 도입하여야 함
- 인터넷 사업자 개념에는 인터넷 전송방식의 특성을 반영하여 단순히 인터넷 접속 만을 제공하는 사업자 (이 사업자의 지위는 통신사업자와 유사함)와 인터넷 컨텐츠를 직접 호스트하는(매개하는) 사업자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개념의 포괄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동법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전기통신사업자, 정보제공자, 정보매개자를 포괄하는 매우 넓은 적용폭을 가진 개념임
  - 그러나 각각 개념은 인터넷 환경의 역할에 있어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는바, 이들 각각 사업자에 대한 법률적 적용도 차이가 있어야 함
  - 그럼에도 이들 사업자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는 획일적 개념으로 동일하게 적용함은 무리가 있음
  - 따라서 인터넷 내용규제에 있어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는 개념을 사용하기보다는 정보제공자, 인터넷(정보통신망) 접속 서비스제공자, 정보매개자로 구분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음

#### **<정보제공자>**

- 인터넷 내용규제에 있어서 정보제공자는 컨텐츠를 제작하거나 또는 이를 업로드시킨 자이므로 원칙적으로 자신이 제공한 정보에 대한 내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함. 따라서 별도의 규제조항이 없어도 각종 형사법규와 청소년보호법 등에 의해서 규제대상이 됨

#### **<인터넷 접속 서비스제공자>**

- 인터넷 접속 서비스는 타인의 정보를 매개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제공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므로 일종의 통신서비스라고 볼 수 있음. 인터넷 접속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경우 타인의 정보를 매개하는 것이 아니므로 전화회사가 전화의 실제 통화 내용에 책임을 지지 않는 것처럼 타인이 제공한 정보의 내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세계적인 경향임

#### **<정보 매개자>**

- 정보매개자는 타인의 정보를 매개하는 다시 말해서 호스트 하는 사업자임. 여기서 타인의 정보를 매개하는(호스트하는) 것과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구별하여야 함. 정보매개자는 타인이 제공한 불법정보에 대하여 공중이 접근하는 것에 대하여 결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이에 대한 법적 책임 여부가 문제되고 있음

※ 이와 같은 논의에 비추어 볼 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인터넷 내용규제에 적용하는 것은 상당한 법적 문제를 야기 할 수 있음

## 4.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제도의 문제점

- 개념의 불명확성
  - 유통금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불온통신’이라는 개념이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 특히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불온통신의 범위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에는 사실상 청소년유해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데, 이는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유통을 허용하는 현행 청소년보호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음

#### ○ 적법절차의 결여

- 불온통신에 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취급거부·정지·제한 명령은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서 발할 수 있는 반면에 사실상 이러한 명령으로 인해 ID가 정지되거나 내용이 삭제되는 등 기본권을 침해받는 주체는 정보제공자임
- 그런데도 정보제공자의 의견청취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 5. 청소년유해매체물 제도의 문제점

#### ○ 법적의무 주체의 불명확성

-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제도는 오프라인 매체에 있어서는 비교적 적용 범위와 대상이 분명 하지만 인터넷 환경에서 법적 의무의 부담 주체는 명확하지 않음
- 인터넷 컨텐츠의 경우 정보제공자 및 정보제작자는 분명하게 특정할 수 있지만 정보를 유통시키는 자는 오프라인 매체와는 달리 여러 사업자가 중첩적으로 개입하게 되므로 현재의 법규정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자가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음
-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서는 정보제공자가 오프라인 매체의 유통행위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바, 이의 특징을 반영한 법적 의무 주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 ○ 지정방법에 따른 문제점

-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컨텐츠가 특정되어야 하나, 인터넷 컨텐츠는 유동적이므로 특정하기가 곤란함. 예를 들어 특정 정보의 제목과 내용을 지정하고 관보에 게재한 경우 정보제공자가 그 정보의 제목과 내용을 변경하면 동일한 정보인가의 문제가 발생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음

#### ○ 인터넷 매체에 부합하지 않는 제반 법규정의 문제점

-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포장의무가 오프라인 매체를 전제로 하고 있어 인터넷 컨텐츠에는 실효성의 문제가 제기됨. 다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새로운 표시의무가 도입되었으나, 구체적인 표시방법을 정하는 대통령령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임
- 인터넷 컨텐츠에 대한 구분·격리 및 연령확인의무 역시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지 않아 의무부담주체에게 예측가능성이 부여하지 못하고 있음
-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의 법적 효과인 표시, 포장, 청소년이용제공금지, 전시·진열금지, 구분·격리 의무가 인터넷 컨텐츠에 있어서는 각 의무간 상호 중복될 수 있으므로 이를 인터넷 환경에 맞게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 ○ 청소년유해매체물 제도의 실효성 문제

- 청소년유해매체물 제도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지정후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고시라는 절차를 수반하기 때문에 특정 인터넷 컨텐츠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청소년보호의 실효성이 문제될 수 있음
-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의 특성인 신속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유통전 또는 유통직후에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될 필요가 있는데, 인터넷 컨텐츠에 대한 사전심의 제도를 도입할 수 없는 이상, 사업자 또는 관련단체의 자율규제가 현행 청소년유해매체물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제기됨
- 이를 위해서 현행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유해매체물 확인제도(법제12조)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으나 현재 인터넷 컨텐츠에 관하여는 거의 활용되고 있지 못하는 실정임

#### ○ 외국매체물에 대한 특례(법제23조의2)의 문제점

- 외국매체물에 대한 특례의 취지는 외국에서 수입되는 경로를 통제할 수 있는 오프라인상의 매체물을 전제로 하여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서 수입된 매체물에 대해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지정없이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나 국제적으로 유통되는 인터넷 컨텐츠에 적용되면 사실상 모든 인터넷 이용자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다는 결과에 이르게 됨
- 현재 외국매체물에 대한 특례규정이 인터넷 컨텐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용된 사례가 없기는 하나, 인터넷 컨텐츠에 대해서 사실상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6.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제도의 문제점

#### ○ 시정 요구권의 법리적 실효성 문제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 및 시정요구권을 규정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2의 규정에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결여되어 있다는 법논리상의 문제점이 제기됨
- 법규정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에 대한 심의 및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고 할 뿐, IP나 ISP가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별도의 제재수단은 없고,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 정보통신부장관의 불온통신취급거부등명령권 발동을 건의할 수 있을 뿐임
- ‘건의’만으로 정보통신부장관이 명령권을 발동해야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명령권이 시정요구권의 법적 기반이라 보기 어려움

#### ○ 인터넷 환경에 부합하는 심의시스템의 결여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제도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전화서비스와 부가통신사업자의 PC통신 서비스의 내용 규제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발하였으나 이를 인터넷 환경에 적용했을 때 상당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기간통신사업자의 전화서비스와 부가통신사업자의 PC통신 서비스의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와가입자의 구분이 명확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정보의 유통을 일차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매개

하고(정보제공자의 정보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서버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음) 있기 때문에, 가입자가 불건전 정보를 유통시킨 경우에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시정요구를 하면 이들이 가입자(개인이나 소규모 사업자)의 정보를 삭제하거나 가입자의 서비스 이용정지(ID정지)의 처분을 하는 구조였으나,

- 인터넷 환경의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주로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제공자 이외에 정보제공자의 정보를 매개하는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가 별도로 존재하는 바(정보제공자의 정보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서버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 아님),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보의 유통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단지 인터넷 접속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있을 뿐인데 이들에게 시정요구를 하게 되면 정보삭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단지 인터넷 접속 서비스의 이용정지(ID 정지)만을 할 수 있을 뿐임
  - 현행 제도하에서는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우, 자신의 서버 컴퓨터에는 불건전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접속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정지를 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고, 자신의 서버 컴퓨터에 불건전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가 전기통신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시정요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며, 정보제공자의 경우에는 정보의 삭제 정도로 가능한 문제를 인터넷 접속 서비스 이용하지 못하는 하는 과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 인터넷 접속 서비스의 이용정지는 인터넷 사업체의 입장에서 본다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한 인터넷 비즈니스를 폐쇄해야 한다는 결과에 이를 수 있으며, 과연 내용심의기관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가 영업폐쇄를 수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관할인 인터넷 컨텐츠에 대한 심의 결과에 따라서 인터넷 비즈니스 전체의 폐쇄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반면, 심의기준이 불명확하고, 의견진술권을 보장하지 않는 절차상의 문제, 결정근거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심의대상자들의 반발이 문제되고 있음

#### ○ 심의결과에 대한 정보제공자의 불복절차의 결여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정보제공자가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적정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 현행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 및 시정요구제도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실상의 시정요구에 대한 준수로 인해서 제도가 유지되는 바, 이러한 구조에서는 정보제공자에 대한 절차적 보장이 매우 취약하며, 정보통신윤리 위원회에 대하여 직접 불복할 수 있는 길이 보장되어 있지 않음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정보제공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조치를 행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자이므로 정보 제공자에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부당한 서비스 거부(계약위반)를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음. 현행법에 의하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에 따를 법적 의무가

없으므로 당해 전기통신사업자는 자기책임으로 시정요구를 수용하고 이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해석됨

- 위와 같은 민사소송이 제기되었을 때는 부당한 서비스거부, 구체적으로 약관의 해석문제가 쟁점이 되는데, 법원의 입장에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에 따랐다는 것이 면책 사유로 고려될 수는 없고, 전기통신사업자가 내용심사를 적정하게 하였는가가 심리대상이 됨. 이 경우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인터넷 컨텐츠의 내용에 대한 심사권 [편집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현행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제도는 강제심의가 아님. 즉 내용등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이 없는 관계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한 심의와 적합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정보제공자가 법적 책임이 완전히 면제되는 것이 아님. 따라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한 심의와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정보제공자는 법집행기관(특히 검찰이나 경찰)에 의한 형사처벌이 사실상 가능함
  - 온라인 게임, 푸싱(pushing)기술을 이용한 인터넷방송·인터넷영화 등의 경우에 방송위원회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기능 및 권한과의 충돌문제가 예상됨. 또한 관할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실시간(real time)으로 전송되는 인터넷방송의 경우 심의제도가 사실상 적용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 III. 개선방향

#### 1. 원칙

-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
- 규제의 합리화로 예측가능성 확보
- 사업자의 참여를 통한 자율규제 체제 확립
- 사업자 부담의 최소화 및 관련산업발전에 기여
- 이용자의 선택권 강화를 통한 내용규제에 있어 이용자 이니셔티브 확립
-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 및 활성화

#### 2. 개념정의의 명확화

- 전기통신에서 인터넷 개념으로 전환

- 인터넷 내용규제 관련법에서는 전기통신이라는 용어의 사용 대신 정보통신망이라는 용어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를 위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인터넷 내용규제 관련 규정인 제53조와 제53의 2를 삭제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옮겨서 규정하도록 하여, 인터넷 내용규제에서 전기통신사업법을 분리하여야 함
  - 전기통신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의 경우도 전기통신개념을 폐기하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정보통신망 개념과 연계시키도록 함

#### □ 사업자의 개념 및 책임의 범위 설정

- 인터넷 내용규제에 있어서 전기통신사업자 개념을 폐기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념을 정보통신망접속서비스제공자,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 정보 제공자로 구분하여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정보통신망접속서비스제공자 : 이용자에게 정보통신망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하려는 자
    - ※ 정보통신망접속서비스제공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 정보통신망접속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의 컴퓨터에 정보를 저장하고 있지 않으면서 단지 정보통신망의 접속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함
    - ※ 경우에 따라서는 정보통신망접속서비스제공자가 정보매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때는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의 지위를 겸하게 됨
  -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 : 국내에서 정보를 매개하거나 매개하려는 자
    - ※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의 컴퓨터에 정보를 저장하고 있으면서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접속하도록 하는 자를 말함
    - ※ 자신의 컴퓨터에 정보를 저장한다는 것은 정보저장장치에 지속적으로 저장한다는 의미이며, 정보의 처리 또는 정보통신망 접속을 위하여 정보를 일시저장하는 경우는 제외함
  - 정보제공자 : 정보를 제작하거나 제공한 자
    - ※ 경우에 따라서는 정보제공자가 직접 정보매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때는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의 지위를 겸하게 됨

#### ○ 인터넷 관련 사업자의 책임범위의 명확화

- 정보통신망접속서비스제공자는 타인이 제공한 정보의 내용에 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하여 안정된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함
- 정보제공자는 자신이 제공한(제작하거나 업로드한) 정보의 내용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부담하여 자기책임의 원리가 관철되도록 함
- 정보매개자는 특정한 경우에만 타인이 제공한 정보의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함

- 1안)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및 “기대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책임부과(독일 멀티미디어 법 제5조)
- 2안) 원칙적으로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지만, 규제기관의 삭제고지에 대해서는 이에 따를 법적 의무 부과. 이 때 부담하는 책임은 타인이 제공한 정보의 내용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규제기관의 삭제고지에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호주 온라인서비스법)
  - 다만, 정보통신망접속서비스제공자와 정보매개자의 법적 책임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경우 이를 사업자에 의한 자율규제 체제의 확립이 전제되어야 함

#### □ 불법정보 및 청소년유해정보의 이원적 체제 확립

-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 불온통신규제 조항을 폐지하고, 이를 불법정보와 청소년유해정보의 이원적 관리체제로 전환
  - 전기통신사업법의 목적은 전기통신사업의 관리에 있으므로 여기에 내용규제 관련 규정을 두는 것은 법체계상 바람직하지 않음
  - 전기통신사업법의 전제가 되는 전기통신, 전기통신사업자는 인터넷 내용규제에 적용하기에 부적합한 규정이므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또는 청소년보호법, 아니면 별개의 입법을 통하여 인터넷 내용규제에 대한 사항을 두는 것이 바람직함
- 불법정보의 규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청소년유해정보는 청소년 보호법에 의하여 규율되도록 법체계를 정비
  - 경우에 따라서는 불법정보와 청소년유해정보를 포괄하는 별개의 입법을 제정할 수도 있음
- 불법정보는 “형법 등 다른 법령에서 제작 또는 유통이 금지되는 정보”로 정의
  - 불법정보는 성인과 청소년을 구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유통이 금지되는 정보임
  - 불법정보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방안이 제기될 수도 있음. 가령,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유통이 금지되는 정보
    - 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유통이 금지되는 정보
    -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하여 유통이 금지되는 정보
    - 청소년보호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정보로서 청소년 보호법상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유통되는 정보
    - 기타 국가보안법, 선거법에 의하여 유통이 금지되는 정보
- 청소년유해정보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정보로 정의함
  - 청소년유해정보는 청소년에게는 유통이 금지되지만 성인에게는 유통이 허용되는 정보임
  - 청소년 및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정의는 현행 청소년보호법의 규정을 적용함

#### 3. 불법정보에 대한 규제 시스템 개선방안

- 불법정보의 규제에 대해서는 민간감시망, 등급분류기구, 정부, 사법기관이 협력 체제 구축

##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불법정보 분류 및 삭제고지

-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등급분류기구로의 전환을 전제로 정부, 관련기구 및 단체,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 민간감시망단체, 정보제작자 및 정보제공자 등의 요청 및 직권으로 등급 분류업무를 수행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등급분류는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X등급), 청소년의 접근이 금지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R등급) 이하 등급으로 이루어지게 함
-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불법정보로 분류한 정보가 국내의 정보매개서비스 제공자에 의하여 매개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매개하는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정보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삭제고지를 함
  - ※ 최종이용자의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접속서비스제공자는 불법정보 삭제고지의 대상이 아님
-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불법정보로 분류한 정보가 해외의 정보매개서비스 제공자에 의하여 매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영업중인 필터링 소프트웨어 제작사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또는 자체에서 구축한 불법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이를 수록함
-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특정 정보를 불법정보로 분류한 경우에 당해 정보의 정보제공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하도록 함
-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불법정보에 대한 삭제고지에 대해 이에 따라야 하는 법적 의무를 규정하도록 함
  - ※ 당해 인터넷 정보를 매개하는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는 삭제의무 이외에 정보의 내용과 관련하여 별도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삭제고지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제재를 할 필요는 있음. 제재방안으로는 정보통신부장관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이 행강제를 위해서는 과태료의 상한선을 높게 책정할 필요가 있음
  - ※ 최종이용자의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서비스제공자는 삭제고지 대상이 아니므로 유통되는 정보의 내용에 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아니함

##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삭제고지에 대한 불복절차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삭제고지에 대해서 불복하는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 또는 정보제공자가 별도의 기구에 재심사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삭제고지에 대해 재심사를 제기할 수 있는 기구는 행정기구로 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의한 사법적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재심사를 제기할 수 있는 기구로는 <1안>정보통신부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민간전문가로 구성한 정보재심의위원회[비상설기구로 함]를 구성하도록 하여 삭제고지의 타당성에 대한 재심의를 하도록 하는 방안과 <2안> 청소년 보호위원회로 하여금 재심의를 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음
  - ※ 어느 방안으로 하건간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달리 행정기구로 되므로 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 에 의한 사법적 통제가 가능함

- 재심사 절차에서는 정보제공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 다만, 정보제공자의 신원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시하도록 함
-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가 불복하는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삭제한 후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4. 청소년유해매체물 제도의 개선방안

-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해서는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를 인터넷환경에 부합하도록 개편하여 대처하도록 함
- 인터넷 컨텐츠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의 경우 개별지정이 실효를 거둘 수 없으므로 청소년보호법 제8조 제5항이 규정하는 포괄지정을 적극 활용하도록 함
  - 법조문의 정비는 필요하지 않으나, 포괄지정의 경우는 사업자의 예측가능성 확보가 중요하므로 별도의 고시를 할 필요가 있음
- ※ 인터넷 컨텐츠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경우 발생하는 법적 의무는 표시의무, 유해 매체물 구분의무, 이용제공금지의무의 3가지로 정비하여 규정하도록 함
-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무]는 청소년보호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두 가지 형태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간에 경계를 분명히 하여 이중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청소년보호법상의 표시의무는 “19세 이용불가”라는 취지의 경고문구(text)를 넣는 것이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표시의무는 내용등급표시와 같은 기술적 조치를 하는 것으로 해석함
  - 표시의무는 원칙적으로 정보제공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함
- 인터넷 컨텐츠에 있어서는 포장의무와 전시·진열금지의무 및 구분·격리의무가 사실상 구분될 수 없으므로 이를 묶어서 하나의 법적 의무를 규정함
  - 포장의무와 전시·진열금지의무 및 구분·격리의무의 취지는 청소년유해매체물에 청소년이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에 인터넷 컨텐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
  - 청소년유해매체물은 그 자체로 유통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에게만 유통이 제한되는 것이므로 인터넷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유통될 수 있음. 다만 청소년이 접근할 수 있는 초기 화면 및 연령 확인하여 성인만이 접근 할 수 있는 화면 이전 단계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의 표현을 금지하는 것으로 법적 의무(유해매체물 구분의무)를 구성함
  - 유해매체물 구분의무는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함
-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이용제공금지 및 연령확인의무는 인터넷 컨텐츠에 있어서는 사실상

동일한 의미이므로 이를 [이용제공금지의무]로 끓어서 규정함

-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자[정보제공자]는 이용자의 연령을 반드시 확인하여 청소년이 아닌 자에게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도록 함
  - 사업자의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해서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연령확인의 기술적 방법에 대하여 고시하도록 함
  - 연령확인의무는 원칙적으로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함
- 이미 다른 심의기구(간행물윤리위원회, 방송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하여 심의를 받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내용과 동일한 컨텐츠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별도의 심의 · 지정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간주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하여 중복심의의 비효율성을 제거하도록 함
  - 정보통신망접속서비스제공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으나, 이들에게는 이용자에게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술적 장치를 할 것으로 권고하고, 다양한 선택적 접근을 위한 기술적 수단에 대해서 이용자에게 홍보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함
  - 외국매체물에 대한 특례(법 제23조의2)는 인터넷 컨텐츠에 대해서는 실효성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
  - 인터넷 컨텐츠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제도에 대해서는 청소년보호법에 별도의 장(章)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규정하도록 함

## 5. 사업자 및 이용자의 자율규제 활성화 방안

- 자율규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서는 현행 청소년보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 확인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함
- 이용자에 의한 자율규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감시망 네트워크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이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에 근거규정이 있음), 이용자 또는 이용자단체,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불법정보 및 청소년유해 정보에 대하여 신고할 때 최소한의 요건을 규정하도록 하며, 이러한 요건을 갖추어서 신고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심의하도록 하고, 심의결과 및 조치사항을 신고한 자에게 통보하게 함
- 사업자에 의한 자율규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자 스스로 불법정보 및 청소년유해정보를 발견하고 이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게 하는 사업자 행동강령을 제정하고 실천하도록 하며, 사업자에 의한 자율적 조치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도록 함
  -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해서는 사업자단체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간주되는 제도(청소년보호법 제12조)가 마련되어 있음

- 불법정보에 대해서도 사업자단체가 불법정보로 결정하고 이를 정보제공자 또는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인 회원사에게 통보하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고지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부여함. 다만 불법정보 통보를 받은 정보제공자 또는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는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이용자의 선택권강화를 위하여 불건전정보에 대하여 선택적 접근을 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의 개발에 대하여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고(이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근거규정이 있음), 정보통신망접속서비스제공자가 이러한 기술적 수단을 이용자에게 권고하게 하며, 다양한 선택적 접근을 위한 기술적 수단을 홍보하도록 함

## 6. 교육 · 홍보전담 민간기구 설치

- 교육 및 홍보기능을 지금처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같은 규제기구에서 담당 하는 경우 사실상 규제기능에 비하여 교육 및 홍보기능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 인터넷 내용규제에 있어서는 교육 및 홍보기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규제기구가 이를 담당하는 것은 민간의 자율규제를 활성화하려는 취지에 맞지 않음. 일반적으로 사업자는 규제기구에 대한 불신이 상존하는데, 규제기구가 교육 및 홍보를 하면, 규제의 일환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음
  - 현재 인터넷 내용규제와 관련한 국제협력은 민간기구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같이 규제기구의 성격을 가지는 단체는 정부기구로 인식되므로 국제 협력 관계를 활성화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교육 및 홍보, 사업자 자율규제에 대한 지원, 민간감시망 네트워크 구축, 국제협력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별개의 기구를 설립하여 이를 사업자가 재정지원하고(정부가 일부를 보조 할 수 있음), 사업자단체 및 이용자단체가 이 기구를 운영하게 하는 것이 교육 및 홍보, 자율규제, 국제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기술적 접근 전략

김 성 조 (중앙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 I. 현행 기술적 대책의 주요 현황

### 1. 유해사이트 차단 소프트웨어

#### 가. 개요

##### ○ 개념

- 차단사이트의 목록을 이용하여 사용자 또는 서버 단위에서 소프트웨어적으로 특정 인터넷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는 방법
- 현 수준에서 가장 일반화된 기술적 대책

##### ○ 국내 유해정보 차단 프로그램 현황

제품명 (업체명)	주요기능	출시일	가격
NOX2 (이노텍정보통신)	‣ 인터넷 유해정보 차단 ‣ 이터넷 접속 기록 생성 및 조회 ‣ 리다이렉션 기능	NOX-98년8월 NOX2-99년6월	38,500원
아이사랑 (엔트랙)	‣ 음란사이트 차단	2000년4월 발표 시장출시안됨	미정
지키미2.0 (인터넷피아월드)	‣ 음란사이트 차단 ‣ 인터넷 사용기록 생성 및 저장 ‣ 하드디스크 검사	2000년9월	20,000원
수호천사3.1 (플러스기술)	‣ 인터넷 음란사이트 차단 ‣ 인터넷 사용시간 설정	수호천사1.0-98년12월 수호천사3.0-2000년12월	28,000원
컴지기 (세넥스테크놀러지)	‣ 인터넷 음란사이트 차단	시장 출시안됨	-
파로스 (아이탑)	‣ 인터넷 음란정보 차단 ‣ 인터넷 사용시간 설정 ‣ 모니터 기능(통계보기)	2000년6월	22,000원
넷피아 (아이비아이)	‣ 인터넷 음란사이트 차단	2000년8월	무료
안티엑스 (KIES)	‣ 음란사이트 차단 ‣ 인터넷 사용시간 설정 ‣ 방문한 웹페이지 내용 저장	99년8월	연회비 1만원
키즈레디 (웹티즌)	‣ 음란사이트 차단 ‣ 유해차단 설정	2000년8월	무료
맘씨3.0 (이이지시스템)	‣ 음란사이트 차단 ‣ 화면자동기록 및 조회	2001년2월	33,000원

## 나. 문제점

### ○ 차단율 저조

- 유해 사이트 DB의 지속적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차단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차단율 저조

<Black List 차단실패율>

소프트웨어	차단실패율
녹 스	15%
수호천사3.0	23%
수호천사 배포판	31%
아 이 사 랑	31%
파 로 스	31%
넷 피 아	31%
지 킴 이	31%
컴 지 기	38%
키 즈 레 디	46%
안 티 엑 스	46%

<White List 허용 실패율>

소프트웨어	허용실패율
녹 스	13%
넷 피 아	13%
파 로 스	25%
키 즈 레 디	38%
수호천사 배포판	38%
수호천사3.0	50%
아 이 사 랑	50%
지 킴 이	50%
컴 지 기	63%
안 티 엑 스	63%

(자료 : 불건전정보차단소프트웨어 평가보고서, 한국정보문화운동협의회, 2000. 9월)

### ○ 차단장치 설치율 저조

- 학부모 84.1%가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나 실제 설치율은 15.2%에 불과 (2000. 10, 한국소비자보호원 조사)

### ○ 청소년이 차단소프트웨어 기능을 얼마나 무력화시킬 수 있어 실질적인 효과가 저조함

## 2. 내용등급 자율표시제

### 가. 개요

#### ○ 개념

- 정보제공자들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스스로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내용에 등급을 부여하면 이를 바탕으로 정보이용자들이 정보내용 선별 소프트웨어를 통해 원하는 정보내용을 선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법

○ 차단S/W와 내용등급 자율 표시 제와의 비교

구 분	사이트 목록차단	인터넷 내용 등급 시스템
기능	내용차단	내용선별
방법	특정목록에 포함된 정보내용 차단	정보내용에 등급을 부여
규제주체	목록을 배포하는 회사 또는 기관	등급 서비스기관 및 정보이용자
정보유통 경로에 대한 영향	정보유통 경로에 영향을 줌	영향을 주지 않음
정보선택권	타율/자율	자율
표현의 자유	제한	제한하지 않음(부분적으로 제한)
사업친화도	낮음	높음
학부모의 개입	제한적이거나 불필요	지속적인 감시 필요

#### 나. 추진현황 및 전망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주관으로 오는 7월 시범실시 예정
  - 동제도가 원활히 진행된다면 종전 차단 소프트웨어를 통한 대책에 비해 진일보한 대책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주관으로 추진되는데 대해 인터넷검열이라 반대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상호 충분한 협의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II. ISP에 의한 필터링 서비스 (일명 : 가족 네트워크)

### 1. 개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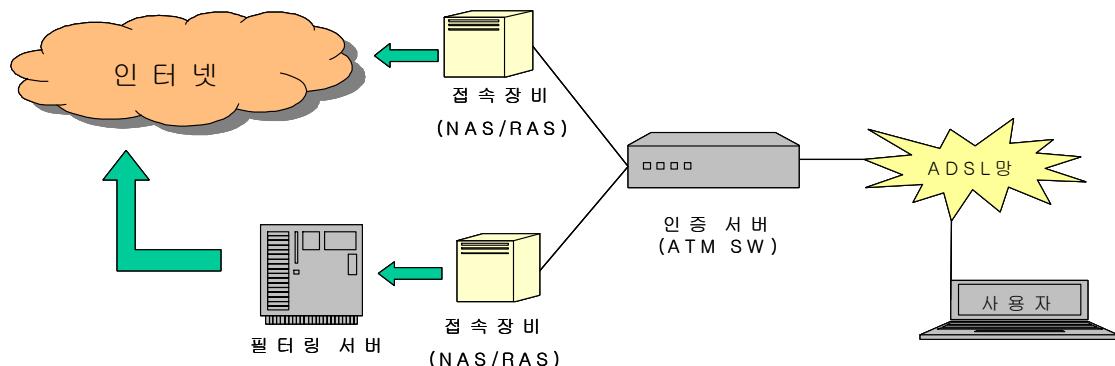
- 가족 네트워크란 음란·폭력물 등 유해정보가 차단되는 청정네트워크로서 가정에서 이용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ISP 차원에서 제공되는 부가서비스를 말함
- ISP가 원하는 가입자에 한해 차단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최종 소비자의 정보 선택권이 강화되고, 가입자가 직접 번거롭게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하는 등의 문제점을 해소 할 수 있다는점이 커다란 장점으로 평가됨
- 호주, 미국, 싱가포르 등에서 부분 시행중

### 2. 차단 방법

- 국내 초고속망의 경우 DHCP를 이용하여 IP가 동적으로 할당되므로 DHCP 서버와 필터링 서버와의 연계 방안이 필요함
- 국내의 경우 안정성 등의 문제로 RADIUS 서버가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CATV 망의 경우 인증 방법이 ADSL 망과 달라 해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과는 다른 차단 기술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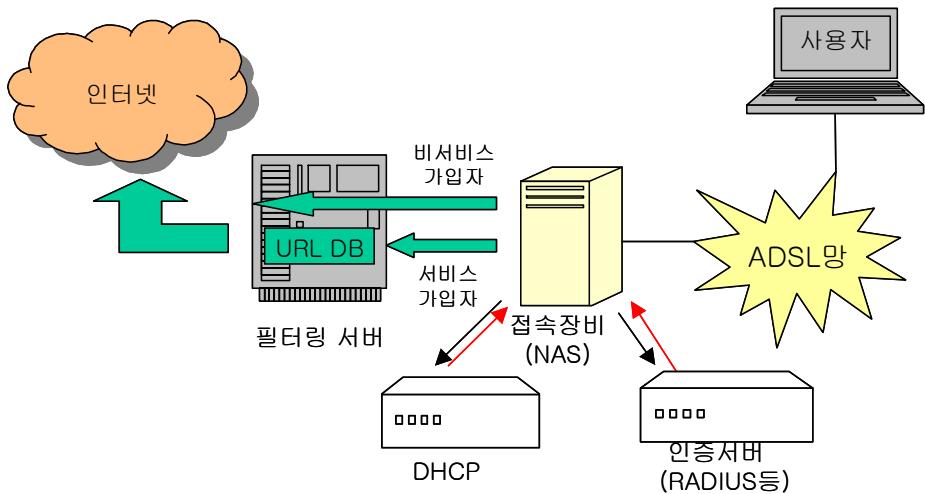
### 가. ADSL망

- 각 ISP마다 ADSL망을 구성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터넷 접속을 위한 접속장비(NAS 또는 RAS)와 인증을 위한 서버(RADIUS 등), 그리고 사용자에게 IP를 할당하기 위한 DHCP 서버가 사용됨. 이때 DHCP 서버는 일반적으로 접속장비 내에 포함되어 있음
- 국내 ADSL망의 구성은 사용자를 인증하는 위치에 따라 [그림1]처럼 사용자 인증 후 인터넷 접속 장비에 연결이 되는 경우와 [그림2]처럼 인터넷 접속장비에 연결된 이후에 인증이 이루어지는 경우로 구분될 수 있음



[그림 1] 인증 후 접속장비에 연결(CAS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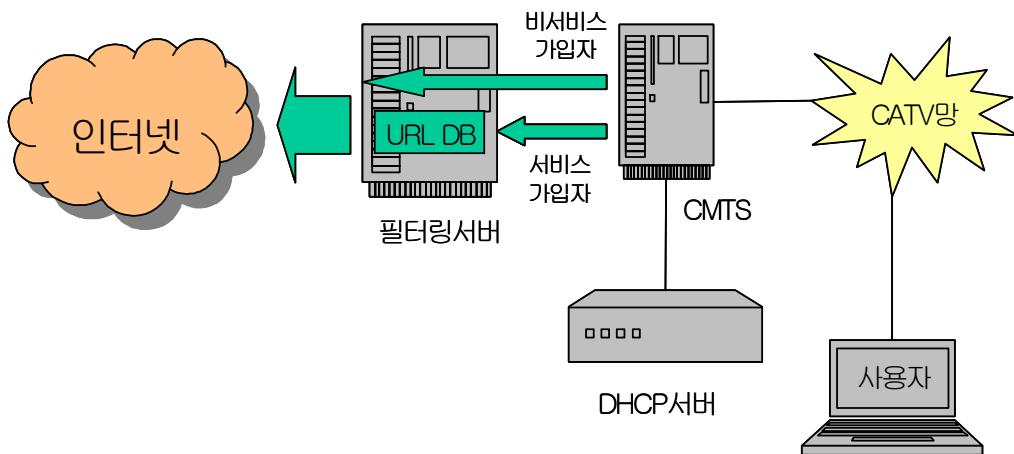
- CASE 1 : 사용자 인증 후 인터넷 접속 장비에 연결이 되는 경우
  - 이 경우 인증은 ATM 스위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처음 ADSL 망을 가설할 때 세팅된 PVC/Private Virtual Circuit)를 활용하여 차단 서비스 가입자와 비 가입자를 구분함
  - 인증 서버는 이러한 구분을 통해 차단 서비스 가입자로부터의 접속 요구를 필터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당 인터넷 접속장비로 포워딩함
  - 포워딩된 접속 요구의 차단 여부는 필터링 서비스를 통해 결정됨
  - 이때 요구되는 인터넷 접속장비는 차단 서비스 가입자의 증가에 따라 저렴한 비용으로 점진적인 확장이 가능함



[그림 2] 접속 장비 연결 후 인증(CASE 2)

○ CASE 2 : 인터넷 접속장비에 연결된 이후에 인증이 이루어지는 경우

- DHCP 서버가 사용자에게 동적으로 IP들을 할당할 때, 차단 서비스 가입자의 IP와 차단 서비스를 원하지 않는 가입자의 IP를 구분하여 관리함
- 사용자가 인터넷 접속 장비에 연결이 되면 인증을 수행하면서 차단 서비스 가입여부를 판별함
- 이때 차단 서비스에 가입된 사용자가 연결되면, 차단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IP pool에서 IP를 할당함
- 필터링 서버는 패킷의 근원지 IP가 차단 서비스가 요구되는 IP pool에서 할당된 경우에만 차단함



[그림 3] 케이블 TV망 구성도

## 나. CATV 망

- CATV망의 경우도 ADSL망의 (CASE 2)와 유사한 형태로 [그림 3]과 같이 차단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
- CMTS(Cable Modem Termination System)에서 사용자 케이블 모뎀을 인증하고, DHCP 서버가 가입자에게 IP를 동적으로 할당할 때, 차단 서비스 가입자에 대해서는 특정 IP pool에 속한 IP를 할당함
- 서비스 가입자와 비가입자의 구분은 케이블 모뎀의 경우 PC의 MAC (Media Access Control) 주소를 통해 확인함
- 필터링 서버는 패킷의 근원지 IP가 차단 서비스가 요구되는 IP pool에서 할당된 경우에만 차단함

## 3. 장 · 단점

### 가. 장 점

- 차단 서비스를 원하는 가입자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제공할 수 있음
- 이용자가 이 부가서비스에 가입하면 별도의 소프트웨어 설치나 개선 없이 차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 또한 클라이언트 측에 차단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 자의적인 차단 프로그램 삭제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음
- 차단 효과 측면에서도 클라이언트에서의 차단에 비해 우수함

### 나. 단 점

- ISP 차원에서 차단 소프트웨어 구입, 장비 구입 등 추가적인 투자가 요구됨
- 차단 소프트웨어로 인하여 약간의 접속 속도 저하(약 5% 정도)가 예상됨
- 지속적인 차단목록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위한 투자가 요구됨

## 4. 문제점 및 해결책

- 현재 국내 각 ISP의 CATV망의 경우에는 케이블 모뎀의 시리얼 번호와 MAC주소를 등록하고 있지만, 이를 사용자 인증에는 사용하고 있지 않고 있어 현재로서는 가입자의 구분이 곤란함. 그러나 기존의 가입자 개통 및 관리 절차를 변경하여, PC의 MAC 주소를 등록하거나 케이블 모뎀의 MAC주소를 인증에 이용하면 서비스 가입자 구분이 가능함

- 현재 ISP차원에서 사용 가능한 필터링 제품들은 성능상의 문제로 대부분 캐싱 서버 상에서 동작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ISP들이 국제 인터넷 트래픽에 대해서는 캐싱을 하고 있지만 국내 인터넷 트래픽에 대해서는 캐싱을 하지 않고 있음
- ISP가 국내 인터넷 트래픽도 필터링하기 위해서는 ADSL 또는 케이블 모뎀의 전국 각 접속점이나 중앙관리센터에 캐싱 서버가 설치되어야 함
  - 전국 각 접속점에 캐싱 서버를 설치하는 것은 많은 투자를 필요로 함
  - 캐싱 서버를 중앙 관리센터에 설치를 하는 경우, 모든 국내 네트워크 트래픽이 중앙 센터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캐싱 서버 설치 지점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하여 네트워크 지연을 유발시킬 수 있음
  - 그러나, 국내 청소년 유해사이트의 경우 비교적 철저한 관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음란사이트 대부분이 해외 서버를 통해 서비스되므로 국제 트래픽만을 대상으로 하여도 실질적인 차단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됨
- 국내 인터넷 트래픽의 필터링을 위해서는 전용 임베디드 필터링 서버 (Stand-alone Embedded Filtering Server)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 III. 연령 확인 기술의 개선

#### 1. 현황

- 대부분 국내 성인사이트는 신용정보기관의 실명조회 서비스를 통해 신원확인
-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을 대조하여 상호 일치여부 확인
  - 동 제도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생성기를 통한 성인위장 청소년 차단 가능

\* 실명확인 서비스기관현황

(2001. 4월 현재)

기관	한국통신진흥협회	한국신용평가정보	한국신용정보
DB종류	통신정보	금융·유통 통신정보	금융·유통· 통신정보
DB수	2,300만	2,700만	3,000만
수수료	시설비 800만원 조회건당 20원	기본료 40만원(2만건) 초과시 조회건당 10원	기본료 40만원(4만건) 초과시 건당 20원
서비스 체결 업체수	24개사	30개사	30개사

\* 수수료는 개별 계약 상황에 따라 상호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 2. 문제점

- 보유 정보수가 충분하지 않아 확인불가 건수 많음
  - 특히 20대 초반 연령의 정보 극히 부족
- 데이터의 불확실성(특히 통신정보)으로 실명확인의 신뢰성 미흡
- 조회건당 요구되는 수수료가 영세업체에 있어서는 부담으로 작용

## 3. 개선 대책

### 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전산망”활용

- 현행 전화정보서비스(국번없이 1382)를 통해 제공되는 주민등록번호 인증 서비스를 인터넷 실명 확인서비스로 확대
- 현행 신용정보기관에서 제공되는 정보의 불완전성을 보완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
- 주민등록번호로 대조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에 대해 특별한 보완대책 필요

### 나. 전자서명의 확대 적용

-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을 인터넷상에서의 성인 인증용으로 확대 적용  
※ 전자서명 : 전자문서를 작성한 자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비대칭 암호화 방식을 이용하여 전자서명 생성키로 생성한 정보로서 해당 전자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함
-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하지 않음으로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전산망”활용의 단점을 보완 할 수 있고, 사이버 공간의 개인 식별장치로써 궁극적 대안으로 평가됨
- 현재 한국정보인증, 한국증권전산, 금융결제원, 한국전산원 등 4개 인증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전자서명 이용률이 극히 낮음(2001. 3월 현재 17만7천명 가입)
  - 전자서명의 활성화의 견인차로서 “성인사이트 실명확인 제도”활용

지 정 토 론

## ‘사이버 윤리의 정립 방안’에 대한 발제를 읽고!

- 선언적 규범의 윤리에서 행위를 인도하는 행동윤리로의 발전을 기대하며

황상민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 swhang@yonsei.ac.kr)

인터넷이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됨에 따라 사이버 공간에서의 인간행동에 대한 윤리나 도덕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와 동시에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인간관계의 갈등이나 사회적 규범의 혼란에 대한 윤리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공감은 사이버 공간의 윤리가 무엇이며, 또 이 윤리가 어떻게 현실과 사이버 모두에서 또는 특정 집단의 사람을 넘어서 모두 공유될 것인가의 문제에 직면해서는 당위성에 근거한 주장의 나열이 되고 만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일차적으로 사이버 공간의 윤리가 무엇인가를 논의하기 이전에 사이버 공간 속의 인간 행동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이루어지기 힘들기 때문이다.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인간행동은 현실 공간에서의 행위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 사이버 세상에서 내가 어떤 인물(아바타, 또는 캐릭터)에 대해 별인 행위(예를들면, 살인이나 공격행동)이 현실 공간에서의 특정 인간에 대한 동일한 행위로 취급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정말 사이버 공간은 현실 공간과 동일한 우리의 생활 공간인가, 아니면 말 그대로 가상의 공간이며 단지 꿈과 같이 인간의 상상력에 의한 사고의 단순한 반영인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사이버 공간의 윤리의 문제는 흥미롭게도 사이버 공간의 주된 이용자로 생각되는 청소년 집단의 행동에 대한 우려이기도 하다. 발제에서도 사이버 공간에서 청소년의 비도덕적 행동이 급증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것이 사이버 공간의 윤리를 논의하게되는 주된 동기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우리의 청소년은 현실공간이나 사이버 공간에서 모두 잠재적인 문제아로 잠재적인 윤리 교육의 대상(아니 보호의 대상)으로 취급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리 이상한 것도 아닐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윤리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 청소년들이 비도덕적 행동을 하게되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발제자는 그 이유를 정보기술적, 인간심리적,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하였으나, 이런 구분은 사이버 공간의 잠재적인 특성을 나열한 상황이다. 그리고, 이런 사항들을 나열하면서, 이런 이유들에 의해 사이버 공간의 일탈 행위가 일어난다면 아마 모든 사이버 공간의 참여자들은 잠재적인 일탈자라는 가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런 일탈 행위들이 청소년에 국한된다고 주장한다면 이것은 청소년들을 무시하거나 成人을 너무 聖人으로 취급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우려를 하게만든다.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다양한 일탈적 행위들이 현실공간에서의 유사한 행위에 비해 왜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그런 행위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원인 분석이 구체적인 행위를 근거로 논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잠재적으로 청소년의 비도덕적 행동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이버 공간의 윤리나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인간 행동의 문제를 모두 동일한 속성으로 볼 수 있다는 지나친 일반화나 보편성의 오류를 범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 발제자는 사이버 공간의 사이버 윤리가 무엇이며,

또 이 윤리가 현실 윤리와는 다르게 만들어지며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서로 상반된 논점을 명확하게 소개하였다.

발제자는 사이버 윤리를 기준 현실 사회 윤리의 재해석에 의한 확대·적용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전혀 새로운 윤리로 볼 것인지의 문제로 명쾌하게 구분하면서, 각각의 입장에 대한 장단점을 잘 논의해 주었다. 이에 덧붙여, 발제자는 향후 사이버 윤리가 처방 윤리(prescriptive ethics), 예방 윤리(preventive ethics)적 성격을 지니면서, 현실공간에서의 인간경험이나 제도 정책이 사이버 공간의 성격에 맞게 변형된 변형 윤리(transformative ethics)의 성격을 지녀야 한다는 기준도 제시하였다. 이런 경우, 사이버 윤리는 단지 우리 사회 문화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보편성에 기초한 세계 윤리(global ethics)라는 것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분명 이런 주장들은 향후 우리가 사이버 윤리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하며 또 어떤 성격의 윤리 규범을 만들어야 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을 제공해 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반적 지침은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일탈 행위가 왜 윤리적인 문제를 야기하는가에 대한 목적성이나 이유를 중심으로 더 발전되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발제자가 주장한데로 사이버 윤리의 기본 명제는 인간 완성(human fulfilling) 혹은 인간다움(humanity)이라는 도덕의 최고 원리에 기초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이버 공간에서 존중, 책임, 정의, 해약금지라는 도덕 원칙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 원칙은 현실 공간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몇가지 윤리원칙, 즉 예를들면 ‘착하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일반적인 도덕율이나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라는 황금율과 그리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사이버 공간의 윤리를 논의하고 또 이것이 무엇인가를 논의하는 것은 현실 공간의 도덕율이나 황금율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은 아닐 것이다, 또 이런 원칙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발제자는 인간다움의 도덕원리에 기초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지켜야 하는 윤리 원칙으로 존중, 책임, 정의, 해약금지라는 4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4가지 원칙이 왜 현실공간이 아닌 사이버 공간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논리적이고도 구체적인 아닐 실증적이고도 경험적인 설명이 없었다. 이 원칙들은 분명 사이버 공간에서의 다양한 일탈 행동의 문제에 적용될 수 있는 훌륭한 원칙이나 개념들임에도 불구하고, 현실 공간의 윤리의식이나 도덕률에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항목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본 발제에서 제시된 윤리나 원리들은 현실 공간에서의 윤리를 사이버 공간에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하나의 입장을 반영해 주는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현실 공간에서 논의되는 형식적이고 선언적인 윤리 내용이라면 사이버 공간의 인간 행동을 적절하게 예방하며, 향후 발생하는 다양한 윤리적 문제에 대한 적절한 처방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달성하지 못할 뿐 아니라, 현실의 윤리가 사이버 공간의 윤리로 변형되거나 보편적인 윤리 원칙에 기초한 세계 윤리로 발전하는데 어려움을 가질 것이다.

향후 사이버 윤리의 문제는 선언적인 도덕원칙에서 보다 인간의 행위에 기초한 행동윤리가 무엇인가를 탐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행동윤리는 선언적인 개념이나 원리의 제시가 아니

라 왜 특정 상황에서 인간이 그런 행동을 하게되며, 왜 현실 공간에서 작동하는 윤리적 규범이나 통제의 원리가 사이버 공간에서는 작동하지 않는가의 문제를 탐색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 사이버 공간의 윤리는 특정 경우에서 인간의 충동적이고 공격적이며 일탈적 행위를 억제하고 적절한 행위로 인도하는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바로 현실과 다른 사이버 공간에 적용될 수 있는 변형윤리이기 때문이다.

사이버 윤리가 필요한 이유는 단순히 선언적인 수준이 아닌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인간 윤리의 문제를 예방하고 처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인간이 사이버 공간을 새로운 인간 생활의 공간으로 이용하고자 할 때 이 속에서 벌어지는 행동 문제들에 대한 윤리가 무엇이며 어떤 행동윤리가 필요한지를 탐색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체적인 윤리적 문제에 대한 처방과 예방적 기능을 분명히 가질 수 있는 행동윤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행동윤리는 문제가 되는 일탈행위나 일탈 행위가 나타나는 조건이 무엇이며 이 속에서 작동하는 인간행동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있을 때 우리는 개별적인 행동문제를 기초로 한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윤리의 원리를 이해하고 또 이것을 처방과 예방을 위해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추병완 교수의 “사이버 윤리의 정립방안”에 대한 논평

신 국 원 (총신대 철학교수)

추병완 교수의 발제 논문은 정보화와 특히 인터넷의 발전이 가져온 시대적 요구인 사이버 윤리 정립의 필요를 다각도로 분석할 뿐 아니라 원론적이긴 하나 이를 메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사이버 윤리의 필요성은 정보화가 진척된 모든 나라들에서 일어나는 문제이다. 물론 정보화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우리 나라에서도 시급히 대책이 요청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선 사이버상의 윤리적 혼란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지만, 깊이 있는 연구는 물론이고 현실에 대한 파악도 미진한 가운데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이 마치 하나의 표준교과서와 같이 사이버 윤리에 관련된 거의 모든 현상과 실태, 쟁점 사안을 폭넓게 다루고 기본원칙과 그 윤리 규범을 확산하고 실천하는 방안까지 제시하려 한 점을 높게 평가할 수 있다.

지금 우리는 인터넷 사용인구 2000만에 초고속 인터넷망 설치율 세계 제일이라는 현실에 살고 있다. 자연히 관련 산업도 급성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 방송”이라고 불리는 웹캐스팅(webcasting)만 해도 97년도에 5개가 생긴 이래 지금은 300여개, 2005년 말에는 1000개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콘텐츠를 유료화하는 추세에 따라 다양한 상업적 콘텐츠 제공자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정보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성취되는 것은 반가운 일이나 문제는 순기능 뿐 아니라 역기능도 함께 급속도로 팽창한다는데 있다. 더욱이 인터넷의 역기능은 그 본질적 특성에 뿐만 아니라 우려가 더 크다. 인터넷 기술의 핵심은 종래 미디어처럼 중앙집중체제가 아니라 전체를 그물처럼 엮는데 있다. 이는 본래 그것이 군사적 목적에서 개발된 것에서 기인한다. 이 기술은 인터넷에 접속하는 모든 사람을 방송국이나 신문사와 같은 힘을 갖게되었다. 즉 인터넷에서는 누구나 쉽게 정보의 제공자가 될 수 있다. 또 모든 정보가 실(實)시간대에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하게 전세계로 퍼지고 무한정 복사가 가능하기 파급력이 대단하다. 과거에는 꿈도 꿀 수 없던 일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지만 그것이 악용될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결국 해악에 있어서도 가장 무책임하며 심지어는 통제불능의 매체라는 우려 역시 근거 없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추교수도 지적한 사회의 규범과 미풍양속을 해치는 불건전 정보의 유통이 양이나 유형의 다양성에 있어 상상을 훨씬 초월한다. 각종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복사도록 하는 지적 소유권 침해, O양 비디오 사건과 같은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허위정보 유포, 이념적 선전과 도박, 매춘의 매개는 물론 심지어 자살과 폭탄, 마약, 무기제조에 테러조장까지 문제가 되고 있다. 무엇보다 인터넷 방송의 선정성은 잘 알려진 문제이다. 이처럼 특히 상업적 정보제공자들이 늘어나면서 문제가 더욱 복잡해지며 커지고 있다. 대책이 시급하지만 대개의 경우 당국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문제가 발생한 후 뒤쫓아 수습하는 것이 고작이다. 또 그나마 규제에 나서기 이전에 이미 피해상황은 사실상 끝나버린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현실은 윤리를 갖추지 못한 정보화가 어떤 문제를 안고있는지 잘 보여준다. 과학기술에서 뒤져있는 우리가 정보화마저 뒤질 수 없다는 강박관념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전자통신과 정보산업을 키워만 놓으면 경쟁력이 생긴다는 생각은 미신이다. 기술보급과 함께 바르게 사는 길을 생각하고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건전한 인터넷 환경을 만들고, 가정과 학교에서 어린 시절부터 이 매체를 바로 사용하는 윤리의식과 예절을 심어야 한다. 기성세대들도 변화한 현실에 대한 바른 이해와 의식을 갖추고, 상황에 부합하는 윤리의 개발과 정착을 위한 노력에 앞서야 한다.

물론 인터넷의 문제가 교육이나 홍보로만 해결되리라 기대할 수 없다. 한 사이버 수사관의 말처럼 “도적놈에게 윤리를 가르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사실 자살, 폭탄사이트와 같은 반사회적인 장을 열어놓고 대단한 문화적 기여라도 하는 것으로 여기며 날밤을 새워 콘텐트를 손질하는 사람에게 윤리를 가르치려는 것은 헛수고일지 모른다. 하지만 법이나 공권력으로 불건전 정보제공자들을 규제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효과적이지도 못하다. 지난 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운동에 부딪친 일이나 미국에서도 법제화하는 것이 계속 어려움에 부딪쳐온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더욱이 인터넷은 지금도 하루가 다르게 계속 발전하고 있어 그것이 가져올 변화를 단정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미 지금까지 문제로 떠오른 것들 만해도 제도적으로나 기술적으로 해결하기에 역부족인 것이 태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도 그간 온라인 통신의 기술은 거의 기술적인 견지에서만 발전해온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바로 이런 문제점 때문에 교육과 법제도 정비 뿐 아니라 각종 네티즌 윤리강령이나 정보제공자 윤리강령의 제정과 같은 작업이 함께 요청되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인터넷의 역기능을 방지하고 사이버 윤리의 정립을 위한 대책이 하나씩 마련되고 있다. 이를바 “정책의 진공”(policy vacuum)을 메우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차츰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다. 우선 계획된 교육 및 홍보로 인해 정보통신윤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 결과 지난 해 6월엔 네티즌 윤리강령이 제정되고 하반기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의 개정되었다. 이에 덧붙여 이제는 인터넷 정보제공자(Information Provider) 윤리강령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제도적 장치와 윤리적 틀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학술적 토론과 함께 공중이 참여하는 보다 실질적인 논의의 장이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금번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특히 청소년 선도의 차원에서 이러한 논의의장을 여는 것과 같은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청된다고 생각된다.

무한경쟁 시대에 기술과 정보에 뒤질 수 없고 민주사회에 있어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그러나 인터넷과 같은 강력한 매체가 일부의 주장처럼 아무런 질서와 원칙 없이 방치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윤리적 반성을 게을리 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모든 기술발전은 순기능만을 가진 것이 아니며, 가능한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인터넷이 역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책임은 사용자 개인과 시민사회의 자율적

규제의 역할이 크다.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문화환경을 건전하게 지켜 가는 일은 다른 문화적 환경에 관한 문제와 마찬가지로 시민들 모두의 일이다. 바로 여기에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더불어 사이버 윤리의 정립이 절실히 요청된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 사이버 세계를 항해하는 일반인들 뿐 아니라 특히 주로 이 매체에 정보를 제공하는 이들이 누구보다 앞서 인터넷 환경을 바르게 가꾸기 위한 윤리정립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사이버 세계는 계속 확장되고 있으며, 그것은 단지 기술의 문제를 넘어 정치, 사회, 경제, 문화의 영역에 걸쳐 있어 매우 넓고도 복합적이다. 이는 사이버 세계를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한 컴퓨터와 인터넷 기술이 매우 적용성이 뛰어나 삶의 어느 부분에건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이버 윤리의 영역도 그 폭이 넓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추교수가 사이버윤리의 정립방안을 정보화 현실에 대한 전반적 고찰로부터 시작하여 이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포괄적으로 접근한 것은 옳다. 특히 정보화 역기능이 단지 개인의 일탈의 차원을 넘어 하나의 구조적 문제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 사이버 세계와 그 속에서의 비윤리적 행위가 현실 속의 그것과 어떤 점에서 다른지를 밝혀 그 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려 한 것도 문제를 접근하는 바른 방향임에 틀림없다.

추교수는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1) 법적 장치의 보완을 통한 효과적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도 그 한계와 문제점을 인식하여 오히려 (2) 시민단체와 관련업체들의 대응, 그리고 네티즌들의 자정노력이 활성화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임을 결론으로 밝혔다. 이 대책도 정보화 사회나 온라인 통신이라는 의사소통의 형식이 갖는 특징을 감안할 때 근본적으로 옳은 제안이라고 하겠다.

아쉬운 점은 추교수의 논문의 장점인 포괄성의 다른 면이다. 추교수는 본 논문에서 어려운 주제를 원인 분석에서부터 대책 마련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다루고자 했다는 것이다. 이 글이 다루고 있는 주제는 급속도로 발전하는 기술에 따라 나날이 복잡해지고 다양하게 변화하는 문화-사회적 환경 속에서 전개되는 전대미문의 영역과 현상이다. 사실 정보화의 역기능들에 대한 연구는 우리보다 앞선 나라들에서조차 아직도 초보적인 단계에 있으며 그에 대한 대책은 더 말할 나위 없다. 따라서 가능한 자료들을 충실히 검토하여 바른 현실이해와 정확한 현상 파악으로부터 착실하게 쌓아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위해 몇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여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

(1) 본 논문에서는 비록 사소한 부분에서이긴 하지만 기본적 개념이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예를 들어 사이버 공간은 과연 “일종의 물리적 공간”이기 보다는 매우 특수한 방식이긴 하지만 단지 기술적으로 투영된 현실의 반영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것이 아닌가 한다. 또 흔히 사이버 범죄나 일탈행위의 원인으로 꼽히는 “익명성”도 사실 매우 제한적인 의미에서만 그렇다는 사실을 주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실 사이버 세계에서는 모든 정보의 발신지를 원칙적으로 이전의 다른 매체에서 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다.

(2) 사이버 윤리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위해서는 기왕의 윤리적 논의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함께 정보화 사회의 특별한 사회-문화적 특징이 보다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즉 정보화 사회는 단지 심화된 “익명성”의 문제 등을 넘어서는 보다 근본적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를 가져온 점을 감안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정보화 사회의 특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정보화 사회는 중심과 체계를 갖춘 보편적이며 통일적 지식보다 비인격적이고 분산된 다양한 정보가 삶의 토대를 이루는 시대라고 한 리요타르의 말을 새겨볼 필요가 있다. 이런 정보화 사회의 특징은 획일적인 논리와 윤리의 상실을 특징으로 하는 시대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에서는 자율적인 시민적 상식은 물론 법적 공감대를 윤리적 기준으로 도출하기가 과거 어느 때보다 더욱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3) 사이버 범죄나 비행의 문제는 과거의 현실세계에서의 그것과 연속성과 함께 매우 다른 점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즉 사이버세계의 특징 가운데 “익명성” 뿐 아니라 “비실재성”이나 “불특정 다수의 피해가능성”, 엄청난 파급력이나 신속성 등 컴퓨터와 인터넷 기술이 갖는 특성이 사이버 윤리를 다룸에 있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4) 오늘날 특히 정보화 후발 국가이면서도 매우 단 시간내에 세계 최고의 정보화 수준에 도달한 우리 현실이 가진 특이한 문제점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정보통신의 분야는 주된 사용자들이 청소년이며 기술적으로나 감성적으로도 인터넷 사용에 있어 우위에 있어 문화나 정보의 흐름이 나이를 역행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부모나 교사의 권위가 흔들리고 있다. 또 어른들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정신적으로 미숙하고 판단력이 완전하지 않은 청소년들이 이를 무분별하게 접근하도록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런 현실에다 민주화이후 사회의 성향이 급속도로 자유화되는 가운데 거의 모든 규제나 제한은 악으로 몰아가는 추세가 강해 진보적인 목소리는 힘을 얻지만 조금이라도 윤리적인 반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보수로 치부되어 지탄과 타도의 대상이 되기 일쑤이다. 이러한 분위기에 대해서도 사회적인 반성이 요구된다.

이상은 비판이기 보다 논의를 위한 제안이다. 아직까지 생소하고 자료도 많지 않은 상황 가운데 방대한 영역의 주제를 현실성 있게 분석 정리하여 대책을 제시한 후 병완 교수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이 글을 계기로 앞으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계속되기를 기대해본다.

# 미디어교육 토론판

김기태 (미디어교육학회 총무이사, 언론학 박사)

## 1. 서론

문미원 대표의 발제문은 미디어교육 자체에 대한 필요성과 정의 등 기본 이해를 바탕으로 인터넷 매체를 대상으로한 미디어교육 실천 과제들을 종합적으로 제시한 종합보고서 성격인 듯하다.

따라서 개괄적인 이해를 돋는 유용하나 실천 가능한 대안에는 구체성이 다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듦다. 따라서 이번 토론판을 통해 논의되는 내용을 보완하여 보다 구체성 있는 실천 방안이 우선 순위와 함께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매체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미디어교육의 필요성과 의의 등은 이미 우리사회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인터넷 매체를 대상으로하는 특화된 미디어교육 실천 프로그램은 아직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토론판에서는 발제문에 대한 항목별 진단보다는 현단계 우리나라 미디어교육의 종합적인 현실 진단과 바람직한 발전 방안에 대해 토론자의 의견을 정리하고자 한다.

## 2. 현단계 미디어교육 실태 및 평가

현단계 우리나라 미디어교육의 실태 분석을 토대로 문제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무성한 논의에 비해 실속은 없는 편이다.

현단계 우리나라 미디어교육에 관한 논의 수준은 외부적 상황에 의해 부풀려진 만큼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각종 세미나나 발표회 또는 좌담회의 논의 내용이 대동소이하고 때로는 동어반복만을 일삼는 경우까지도 있다. 이는 미디어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전략의 성과라는 측면도 있으나 실질적인 미디어교육 제도화 또는 정착을 위해서는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 2) 학교 미디어교육이 주로 학교 밖에서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 미디어교육의 역사적 전개 특성상 학교 보다는 상대적으로 사회에서 즉, 학교 밖에서 미디어교육이 주도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런 논의 방식을 바꾸어 학교 현장 중심의 논의가 필요한 지금에 와서도 여전히 학교 밖으로 미디어교육에 관한 논의가 밀려나 있는 게 오늘의 현실이다. 물론 미디어교육은 성격 상 학교 밖과도 밀접한 교류가 필요한 내용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미디어교육이 정착되는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보면

근본적인 해결 과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다.

3) 여전히 미디어교육과 수용자운동이 혼동되고 있다.

이 부분 역시 우리나라 매체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역사적 배경과도 관련이 있는 사안인데 미디어교육을 언론수용자운동이나 모니터운동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물론 미디어교육과 수용자운동은 많은 점에서 유사성을 지니고 있지만 결코 동일시 할 수 없는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확실히 해 둘 필요가 있다. 사회단체 중심의 미디어교육이 학교 중심의 미디어교육으로 이동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논의 과제이기 때문이다.

4) 대부분의 미디어교육이 단편적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체계성, 연계성이 부족하다.

교사 개인이나 지도자 한사람의 실험적 실시 수준으로는 실천력있는 미디어교육의 정착이 요원하다는 점에서 체계적이고 상호 연계된 미디어교육 실시 및 논의의 장이 부족한 현실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5) 한국형 미디어교육 모형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없다.

과학적인 분석 결과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미디어교육 수준은 세계적으로도 크게 뒤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 우리나라 만의 독특한 매체환경과 교육환경을 감안 할 때 미디어 또는 미디어교육 선진국으로 알려진 다른 나라들에 비해 매우 특별한 사례나 경험들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를 주체적으로 모형화하고 유형화하는 노력이 부족해서 아직까지 우리나라 미디어교육은 실제보다는 훨씬 위축된 상태로 국내외에 알려져 있는게 현실이다.

6) 외국의 미디어교육 사례나 소개가 연구자 개인의 경험과 접근통로에 따라 지나치게 단편적, 임의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물론 외국의 미디어교육 사례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미디어교육의 전개과정에서 많은 기여를 해온게 사실이다. 그러나 일부 학자나 서적 또는 인터넷을 통해 단편적이고 주관적으로 소개되고 있는 내용 중에는 실제와는 다르게 전달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일부 유럽 국가나 영연방 국가 중심의 미디어교육 사례에 비해 미국 또는 아시아 국가의 미디어교육 사례 등이 소홀하게 다루어진 경향도 이런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7) 미디어교육의 제도적 추진을 위한 협의체가 전무한 실정이다.

현재까지 미디어교육 제도화 논의는 개별적이고 산발적인 의견 개진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한때 한국언론학회 산하에 미디어교육 정규교과 추진분과가 활동한 적이 있으나 지금은 중단된 상태이다. 한국미디어교육학회 임원진을 중심으로 신임 교육부 장관이 임명될 때마다 방

문하여 미디어교육의 제도화 필요성을 역설해 왔지만 이 역시 아직까지는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8) 미디어교육 연구에 비해 미디어교육 현장 실천 사례 축적이 미흡한 편이다.

미디어교육은 현재 소수의 연구자들이지만 지속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더욱이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미디어교육 전공과정에서는 올 해 1학기 현재 모두 열 네편의 석사학위 논문이 나왔다. 이 외에도 여러 학자들이 모두 10여 편의 관련 논문은 발표한 상태이다. 이에 비하면 학교 현장에서의 실천사례는 거의 축적되지 못하고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그나마 1997년 12월 이래 매년 개최되고 있는 미디어교육 전국대회(한국미디어교육학회 주최)에서 발표되는 사례발표가 종합 사례발표 기회로는 유일하다고 할 수 있겠다.

9) 새로운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미흡하다.

올해 급격히 늘어난 각종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을 보면 새로운 내용이 없이 모두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대부분이다. 타 단체의 사례를 조금씩 변형시키거나 그동안 해오던 프로그램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일선 지도자나 단체들의 무성의 또는 한계에서 비롯된 문제이기도 하지만 전문학자나 관련 지원기관의 안이한 자세에서 기인한 문제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좋은 프로그램 개발이 미디어교육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가장 아쉬운 부분이다.

10) 여전히 즉시 활용 가능한 교재가 미흡한 편이다.

물론 교재 개발은 가볍게 이루어질 수 없는 장기적 투자와 노력이 필요한 사업이다. 따라서 학자, 지도자, 지원기관간의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가능한 사업이다. 현재는 개별 단체나 학교 등에서 교육용 자료 형태로 만들어 사용하고 마는 일회적 교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좋은 교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다만 최근에는 이런 교재 미흡을 중요한 해결과제로 보고 몇몇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서두르고 있는 점이 다행이라 하겠다.

11) 체계적인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보다 일회적이고 행사 중심의 프로그램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과 한세대학교 교육대학원에 설치된 미디어교육 전공과정 외에는 아직 대학에서의 뚜렷한 미디어교육 지도자 양성 과정이 없다. 물론 한양대학교 교육공학과 등 몇몇 관련 대학원에서 미디어교육 관련 논문을 쓰는 학생들은 있으나 이를 미디어교육 지도자 양성과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과거 서강대학교 미디어센타, 서울 YMCA 등에서 미디어교육 교사 강습을 실시한 바 있고 최근에는 정부관련 단체나 기관을 비롯, 여러 사회운동 단체들이 미디어교육 교사 강좌를 개설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기본 개념과 중요성 강조 그리고 몇몇 사례 발표를 시험적으로 논의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을 뿐 아니라 그것도 정기적인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으로 정착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12) 미디어교육 관련 학계인 언론학적 접근과 교육학적 접근의 균형적 조화 가 부족하다.

미디어교육 관련 연구 논문이나 사례 발표 등 학문적 논의가 주로 언론학 분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미디어교육의 성격상 이 두 학문 분야가 고루 참여하는 연구 성과가 많아야 내실 있는 연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요한 해결과제이다.

13) 미디어교육 관련 연구 지원이 부족하다.

언론학, 교육학 모두 미디어교육은 아직 일반화된 연구 영역이 아니어서 연구에 필요한 지원이 전무한 상태이다.

14) 최근에는 미디어교육 관련 단체나 모임, 기구(통신 공간 포함)가 오히려 내실없이 범람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 미디어교육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공표되면서 다양한 미디어교육 기관이 생겨나고 있는데 전체적인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최근에는 다소 난립하는 경향까지도 생겨나고 있다. 진지한 준비과정이나 성실한 교육 실시 등 노력 없이 난립하는 미디어교육 관련 기관이나, 단체 또는 통신공간 등은 오히려 미디어교육의 질적 퇴보를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15) 미디어교육의 대상 매체가 주로 기존 텔레비전, 신문에 한정, 새로운 뉴미디어 특히 인터넷 대상 미디어교육은 아직 초보 단계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런 점에서 본 발제문에서 제기한 다양한 의견들은 매우 의미 있는 제언들이라 할 수 있겠다. 다만 이런 제언들이 실제 교육현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관련 단체나 기관 또는 관련자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실천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3. 우리나라 미디어교육 발전 과제

현단계 우리나라 미디어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 과제를 항목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학교 현장 실천사례의 축적 필요
- 2) 미디어교육 관련 교사들간 실질적 논의 활성화
- 3) 미디어교육 전공 교사들의 선도적 활동 기대
- 4) 각종 해외 탐방 프로그램 활용 또는 도입
- 5) 학교와 매체사 그리고 사회, 가정의 연계 활동 지향
- 6) 한국형 미디어교육 유형 개발
- 7) 단계별, 장별, 매체별, 주제별 등 세분화된 미디어교육 유형 개발
- 8) 다양한 교재 개발
- 9) 관련 부처의 인식 제고
- 10) 정규 교과목화를 위한 교과과정, 교재(시안) 개발
- 11) 미디어교육 시범학교 운영
- 12) 각종 미디어교육 지원 기금의 체계적 사용을 위한 지침 마련
- 13) 미디어교육 백서 발간
- 14) 대학 관련 학과에서의 미디어교육 강좌 개설(교육대학 포함)
- 15) 종교계(특히 기독교계) 학교에서의 선도적 운영
- 16) 미디어교육의 제도적 추진을 위한 범 협의체 구성
- 17) 미디어교육 실천 및 연구 모임 활성화
- 18) 미디어교육 관련 사이버 공간 내실화

# 인터넷 내용등급제와 자율규제론의 허상

민 경 배 (사이버문화연구소 소장)

## 1. 들어가며 - 유머 한 마디 : 뽀까뽀까

어느 탐험가가 아프리카를 탐험하다가 그만 식인종에게 붙들리고 말았다. 근데 그 식인종 추장이 그 탐험가를 처형대에 매달아 놓곤 하는 말이

“너 뽀까뽀까 당할래? 죽을래?” 하는 것이다.

탐험가는 살려 준다는 말에 뭔지도 모르고 뽀까뽀까를 선택했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식인종은 불에 시뻘겋게 달군 쇠꼬챙이로 그 탐험가의 항문을 푸우욱.....

반신불수가 되어 돌아온 그는 하루하루 힘겨운 삶을 보냈다. 그런데 그의 동료 탐험가가 아프리카로 간다는 것이었다. 그는 동료한테 혹시라도 그 식인종한테 잡히거든 절대로 뽀까뽀까 당하지 말고 차라리 죽음을 택하라고 말했다. 동료도 그의 불쌍함을 알기 때문에 그러겠다고 대답했다.

근데 이게 웬일! 그 동료도 식인종에게 잡혀 버렸다. 식인종 추장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뽀까뽀까 당할래? 죽을래?” 하며 물었다. 그 동료는 탐험가의 모습을 떠올리며 차라리 죽겠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추장이 하는 말

“여봐라! 이놈을 죽을 때까지 뽀까뽀까 해라!!”

## 2. 자율규제 - 무늬만 자율규제, 내용은 자의검열

인터넷에 떠도는 철 지난 유머보다도 더 썰렁하게 우스운 일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 태연스럽게 벌어지고 있다. 7월 1일부터 시행된 인터넷 내용등급제가 바로 그것이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설명을 그대로 따를다면 내용등급제란 “정보제공자들이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내용을 정해진 방법으로 분류하여 등급을 표시하면, 정보이용자와 자녀들은 웹브라우저나 정보내용을 선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표시된 등급을 참조하여 접속할 정보의 종류와 수준을 미리 결정할 수 있는 자율적인 규제방안”이다. 적어도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듯 보인다. 하지만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생각하는 ‘자율’이란 개념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의미와 크게 다르다는 점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

우리의 자애로운 식인종 추장은 탐험가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자신의 운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너 뽀까뽀까 당할래? 죽을래?” 이제 선택은 탐험가 본인에게 달려있다. 그리고 그가 어떤 선택을 하던 결과는 뽀까뽀까 당하는 일 뿐이다. 마치 동네 건달들이 어린 학생의 코를은 돈을 뺏으면서(속칭 뻥 뜯는다고 한다) “맞고 줄래? 그냥 줄래?” 하는 말과 같은 식이다. 건달들에게 둘러싸인 불쌍한 학생은 이제 자율적으로 선택하면 된다. 이것이 바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새롭게 정의한 ‘자율’의 의미이다. 얼마나 절묘한가!

하지만 정상적인 사고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이것을 진정 ‘자율’이라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것은 첫째, 선택의 범주가 타율적으로 주어진 것(뽀까뽀까 혹은 죽음 / 맞고 주는 것 혹은 그냥 주는 것)이기 때문이며, 둘째 어떤 선택을 하던 결과는 마찬가지(뽀까뽀까 / 돈을 빼앗김)로 강제되기 때문이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자율규제라고 강변하는 내용등급제도 이런 식이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정해놓은 등급기준에 맞춘 선택이 강요될 뿐 아니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구사항을 어길 경우 법적인 처벌이 가해진다는 점에서 어디까지나 무늬만 자율인 강제규제인 것이다.

이 정도의 이야기 풀려고 도입부에 철 지난 유머를 장황하게 늘어놓은 것은 아니다. 필자는 이 글에 위의 유머를 소개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3가지 심각한 사고를 저질렀다. 첫째, 저작자의 사전 동의도 구하지 않았고 출처도 밝히지 않음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했다. 둘째, 행여나 인터넷에 올려져서 청소년들이 읽게 될지도 모르는 이 글에 ‘불에 시뻘겋게 달군 쇠꼬챙이로 그 탐험가의 항문을 푸우욱.....’이라는 지극히 폭력적이고 잔인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법에 포괄적으로 명시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불온통신적 성격이 농후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등급표시를 하지 않았다.셋째로 대수롭지 않은 유머를 정부 당국의 정책 비판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함으로써 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현행법을 위반한 행위이며, 마지막 세 번째는 어디까지나 패드립에 해당한다. 물론 인터넷에 떠도는 유머를 인용한 것이고, 또 인터넷에 올릴 것을 목적으로 작성한 글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법이나 내용등급제 위반으로 큰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패드립이다. 모종의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걸려고 작정하면 걸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때 앞의 두 가지 현행법 위반 사항이 ‘걸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다.

이처럼 내용등급제는 유해한 표현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을 촉진한다는 표면적인 취지를 넘어 개인의 사상을 통제하고 표현을 제약하기 위하여 자의적으로 동원되는 검열장치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 자신의 나체를 홈페이지에 올렸다는 이유로 홈페이지 강제 폐쇄를 당한 김인규 미술교사 사건이나 학교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역시 강제 폐쇄된 자퇴생들의 인터넷 모임인 ‘아이노우스쿨’ 사건 등 최근 벌어진 일련의 사태들이야말로 인터넷에 대한 정부의 강도 높은 검열을 예시하는 가장 분명한 증거들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 3. 내용등급제 – 소프트웨어가 너희를 심판하리라!

흔히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내용등급제는 마치 식품 표식처럼 특정 웹사이트에 어떤 내용물이 담겨 있는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표시라는 식의 설명이다. 그리고 그 정보는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표시된다.

<표1>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 내용등급체계 中

등급(R) 범주(c)	0	1	2	3	4	
음란 퇴폐	노 출 없음	. 반바지, 수 영복, 민소 매 상의를 입은 상태 의 노출	. 속옷 입은 상 태의 노출 . 둔부 <sup>1)</sup> 가 노출 되지 않은 상 반신 전라의 뒷면 노출	. 남녀의 둔부 또는 여성의 가슴 노출 . 착의상태 <sup>2)</sup> 에서 국부 및 둔 부를 강조 <sup>3)</sup> 하는 자태 및 탈의모습 . 전신 전라의 정면, 뒷면 노 출 또는 하반신 전라 노출 . 지하철, 공원 등 공공장소 에서의 의도적 속옷 노출	. 남녀의 성기, 국부, 음모 또 는 항문 노출 . 착의상태라도 국부를 강조한 색정적 자태 및 윤곽 또는 굴 곡 보임 내용 . 어린이 또는 청소년을 성 유 희 <sup>4)</sup> 의 대상으로 묘사한 내용	
	섹 스	성 없음	. 가벼운 키 스·포옹 . 목, 얼굴 애무 . 착의상태의 성 애적 표현 . 성적 흥분된 표정 내용	. 격렬한 키스· 포옹 . 목, 얼굴 애무 . 착의상태의 성 애적 표현 . 성적 흥분된 표정 내용	. 하반신이 얹혀있는 성행위 묘사 내용 . 포옹, 성적애무를 선정적으 로 묘사한 내용 . 성교육적 내용도 성체위를 직접적으로 묘사한 내용 . 성적 흥분상태의 표정으로 가슴, 국부 애무 또는 자위 행위 묘사 내용	. 정사, 구강성교, 성기애무 등 (착의상태포함) 노골적인 성 행위 . 혼음, 동성애, 수간, 시간 강간, 항문성교 등 이상성교 . 강간, 근친상간 묘사 내용
	퇴 폐	퇴 폐 없음	NA (Not Available)	NA	. 동성간의 성애 표현 내용 . 피임기구, 성기구 또는 성기 조형물 전시 . 변태적 복장 및 도구 내용	. 성고문 <sup>5)</sup> , 학대 등 가학 피가한적 변태성욕 묘 사 내용 . 인조성기 애무, 자위 내용 . 낙태, 매춘을 정당화한 내용

출처 :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국내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 1999. 12

이러한 등급 방식은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낳는다. 첫째, 이미 미국시민권연합(ACUL)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인터넷 내용물은 객관적으로 입증된 식품의 성분과 같은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주관적인 의식이 담긴 표현물이라는 점이다. 작가의 의도나 예술적 가치를 무시한채 단지 성기가 노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음란물이란 명예를 뒤집어씌운 김인규 미술교사의 사건만 보더라도 정보제공이란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등급 분류가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초래하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둘째, 이러한 등급 분류를 소프트웨어를 통한 기계적인 방식으로 처리한다는 점이다. 하루에도 수없이 등장하고 사라지는 그 많은 홈페이지들과 내용물들을 일일이 체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기에 내용선별소프트웨어를 통한 기계적 필터링 방식이 채택된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여기서 잠시 위의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조선시대 화가 단원 김홍도의 그림에 등급을 부여한다고 가정해 보자.



1등급 - 가벼운 키스 · 포옹



2등급 - 착의상태의 성애적 표현



3등급 - 여성의 가슴 노출



4등급 - 남녀의 성기, 음모 노출

이런 식이다. 김홍도 작품의 미술사적 가치나 의미는 전혀 고려되지 않는 채, 단지 남녀가 부둥켜 안고 있고, 성기가 묘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소프트웨어는 이 그림들을 음란물로 판단해 버릴 것이다. 아마도 소프트웨어는 국보급 화가 김홍도가 음란물 작가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위의 그림들이 포함되어 있는 김홍도 관련 사이트나 고미술 사이트 전체를 음란 사이트로 간주하여 청소년들의 접근을 차단시켜 버린다. 그 결과 우리의 청소년들은 학교 미술 교

과서에도 등장하는 아래와 같은 유명한 그림들조차 인터넷을 통해서는 관람할 수 없는 웃지 못할 사태마저 벌어질 것이다. 이 무슨 황당한 코미디란 말인가?



#### 4. 정보통신윤리위원회 - 그들의 혼란스러운 정체성

“내가 너 시다바리가?”

영화 <친구>의 열풍에 힘입어 유행어가 되어버린 이 말을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리바이벌하고 있다. “우리가 정통부 시다바리가?”

즉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어디까지나 정부기구가 아닌 민간자율기구이며, 따라서 내용등급제 역시 민간자율규제라는 논리이다. 사실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다. 내용등급제의 실질적인 운영주체의 성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내용등급제가 ‘타율규제’인지 ‘자율규제’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잣대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실질적인 지위는 무엇인가? 애초에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하여 만들어졌으며, 위원에 대한 위촉이나 예산을 포함한 제반 운영이 정통부의 관할 하에 있는 이 기구가 민간자율기구라는 근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설령 백번 양보하여 법률적 지위라는 측면에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정부기구가 아닌 민간기구라고 인정한다 해도 사태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이들이 담당하고 있는 기능과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내용물을 심의하여 금지 및 규제의 행위와 대상을 결정하는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고, 나아가 강제집행력과 처벌 권한까지 가지고 있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그 법률적 지위와 상관없이 내용적으로는 명백한 정부기구임에 틀림없다.

결론을 말하자면 이렇다. “니들 정통부 시다바리 맞아!”

#### 5. 청소년 보호 - 관리가 아닌 권리의 보호가 요구된다

이제 마지막으로 인터넷 규제를 위해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되고 있는 청소년 보호라는 명분에 대해 생각해 보자. 인터넷 공간에 각종 유해한 정보들이 난무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

이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이러한 유해 정보들에 무방비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며, 이는 그다지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과 청소년 보호라는 명분을 그냥 단선적으로 연결시키는 논리가 과연 타당한 것인가는 다시 한번 생각해볼 일이다. 즉 ‘청소년 보호=차단’이라는 등식은 언제나 유효한 참명제인가? 그리고 이것이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유일한 대처 방안인가?

필립 아리에스의 설명처럼 아동과 청소년이란 개념은 16세기 들어서야 비로소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근대적 가족 모델이 등장한 이후부터 보호와 관리의 대상으로 새롭게 위치지워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푸코가 지적했듯이 사회적 통제 시스템으로서의 차단과 격리는 근대 이후 한결 세련된 방식으로 확산되어 갔다. 즉 ‘청소년 보호=차단’이란 등식은 근대적 사회 관리체계의 산물에 다름아닌 것이다. 여기서 이들의 논의를 상세하게 서술할 여유는 없다. 다만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청소년 보호=차단’이라는 등식은 어디까지나 근대적인 아날로그 세계에서나 유효했던 명제라는 사실이다.

정보화와 지구화의 거대한 패러다임은 청소년들의 문화를 더 이상 국지적이고 지역적인 경계 내에서 존재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 그들은 이미 너무나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하고 있으며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해 가고 있다. 차단과 격리만이 문제 해결의 유일한 대안이라는 생각은 이미 낡은 것이 되어 버렸다. 그런데 지금의 인터넷 내용등급제는 여전히 이들을 유해정보로부터 차단하고 격리시키는 데에 목적을 둔 구시대적 발상에 머물러 있다.

물론 청소년들은 여전히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하지만 그것이 청소년들을 미성숙한 주체라고 전제하고, 훈육의 대상으로 사고해서는 안될 것이다. 청소년 보호가 그들의 알 욕구와 의사소통 능력을 제한함으로써 자율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더더욱 안될 것이다.

진정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면 새로운 환경의 변화를 인정하고 그에 걸맞는 방향과 수단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흔히 말하는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즉 “무엇으로부터 보호할 것인가”를 떠나서 이제는 “무엇을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로 관심의 영역을 바꾸어야 한다. 이제부터 우리가 정작 보호해야 할 것은 청소년들의 사회적·문화적 권리이다. 청소년 보호가 단순히 이들을 관리하는 네거티브적인 방향이 아니라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포지티브적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모색이 요구된다.

## 6. 나가며 – 리셋 버튼을 누르자

내용등급제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지금의 문제는 어쩌면 쌍방향적이고 개방적인 커뮤니케이션의 공간인 인터넷에 대한 중요한 정책이 애초부터 일방향적이고 폐쇄적인 방식으로 결정되고 시행되었다는 데에서 짹튼 것일지도 모른다. 흔히 우리는 컴퓨터 이용자들의 리셋(reset) 중후군을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런 경우야말로 과감히 리셋 버튼을 누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즉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것이다.

청소년 보호와 표현의 자유는 대립적인 명제가 아니다. 이들 두 가지는 결코 양자택일의 문제가 될 수 없다. 그간의 장구한 사회적 격론 속에서 나올 이야기들은 이미 다 나왔다. 그리고 다른 이야기들 다 집어치우더라도 현행 내용등급제에 대한 사회적 저항과 반대가 거세게 일고

있다는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이를 재검토해야 할 당위성은 충분히 성립된다. 이제부터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인정하고 이를 토대로 각계의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노력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합리적인 자율규제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솔로몬의 지혜를 찾아야 한다.

# 인터넷 컨텐트 자율규제의 문제들

최승훈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대외협력팀 <shchoi@icec.or.kr>)

## 1. “자율”규제인가 아니면 자율“규제”인가?

인터넷 컨텐트 자율규제에 대한 논의는 사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개정안(이하 개정안)이 느닷없이<sup>26)</sup> 던져진 시점, 다시 말해 인터넷 컨텐트에 대한 정부규제, 보다 정확하게는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던 시점에서 시작되었어야 했다. 왜냐하면, 필자가 이해하기에, 개정안은 기존의 인터넷 내용규제 방식에 대한 정부 스스로의 문제 제기였고, 개정안이 찾고자 했던 해결방안이 바로 “자율”규제였기 때문이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자율“규제”에 문제를 제기했고, 그러한 엇갈림은 인터넷내용등급제에 대한 지루한 공방으로 이어졌다. 인터넷내용규제의 목표, 혹은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인터넷내용규제의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가 “인터넷내용등급제”라는 하나의 자율규제 장치 안에서 뒤엉켜버렸던 이 이상한 공방은 이제 시계를 한 바퀴 돌아 원래의 출발점에 돌아와 있는 느낌이다.

연초부터 계속되었던 특정 인터넷 컨텐츠에 의한 사회적 논란들(혹은 인터넷 컨텐츠 규제에 관한 사회적 논란들)은 이 두 문제가 적절하게 다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전자의 문제는 규제 목표 혹은 정당화의 문제로 프라이버시 및 개인의 표현의 자유의 보호, 소유권(ownership) 및 지적재산권의 보호, 소비자의 정보선택 및 접속권의 보호 및 무엇보다 “청소년(혹은 미성년자)과 인간 존엄성에 대한 엄격한 보호”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수준을 의미한다. 후자의 문제는 전자의 사회적 합의를 인터넷의 미디어적 특성, 즉 인터넷 영역의 문화적 다양성, 인터넷 컨텐트 관련 기술적 도구들의 이용 가능성 등에 맞게 구현하는 방식의 문제를 의미한다. 따라서 “자율”규제의 문제는 규제방식의 문제로, 자율“규제”的 문제는 사회적 합의의 문제로 구분하여 인식되어야 하며, 현재의 사회적 합의 수준에서 어떠한 규제방식이 올바른가의 문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자율규제와 관련하여 토론되어야 할 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정보통신검열반대공동행동이 지난 6월26일 개최했던 “정부의 인터넷 내용규제와 표현의 자유, 무엇이 문제인가”와 이번 청소년사이버문화정책 토론회는 (인터넷 컨텐트 규제에 관한 사회적 합의와 규제 방식의 문제가 적절하게 다루어질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제 공이 올리고 새로운 라운드가 시작되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

## 2. 자율규제의 개념을 둘러싼 문제들

발표문이 규제 방식의 문제로 자율규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은 아주 적절하다고 하겠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간 존엄성과 청소년(미성년자) 보호”라는 규제의 목표 및 정당성은 규제

26) 이 표현은 망법 개정안이 인터넷 컨텐트 자율규제에 관한 논의가 전혀 없던 상태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묘사한다.

환경의 변화와 무관하게 일정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발표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자율규제의 문제는 인터넷 “미디어규제의 합리화”라는 사회적 요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국제적으로 각광을 받아 왔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인터넷 자율규제에 대한 논의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을 뿐이며, 그 개념 역시 여러 가지 의미로 혼용되고 있다. 그 결과, 인터넷의 계속적인 성장에 있어서 인터넷 자율규제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자율규제 체제를 어떻게 구성하고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공감대는 여전히 존재하지 않는다.

발표문에서는 자율규제를 “민간영역이 전통적인 정부영역에 해당되었던 규제영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규제의 합리화 및 효율성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자율규제의 “자율적” 측면을 잘 설명해 주는 개념정의라 하겠다. 하지만 이러한 개념정의는 자율규제의 “규제적” 측면을 설명하는데서 문제에 봉착한다. 물론 발표문에서 불법정보에 대한 종국적인 규제권한은 여전히 국가가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그러한 방향의 개념정의는 정부의 역할 부분에 들어가면 “협력”, “지원”, 등 정부(혹은 법적)의 역할을 제한하는 측면만을 부각시켜 자율규제를 법적 규제의 안티테제로 이해하게 할 위험이 있다. 다시 말해, 그러한 개념정의는 자율규제가 탈규제(de-regulation) 혹은 비규제(non-regulation)와 무엇이 다른지를 설명하기 어렵게 만든다.

그러한 의미에서, 발표문의 ‘인터넷 자율규제시스템의 기본방향’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합동규제시스템(co-regulation) 혹은 규제적 자율규제(regulated self-regulation), 강제적 자율규제(enforced self-regulation) 등이 자율규제의 규제적 성격을 잘 드러내고 있는 개념이라 생각된다. 인터넷 자율규제는 정부(혹은 법을 통한)의 직접적인 규제의 대안이나 대체물이 아니다. 오히려 인터넷에 있어서 자율규제 기구들이 법을 대체할 수 있는 중요한 원천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 의문이 제기되어야 한다. 따라서 자율규제에 대한 본질주의적 접근-규제의 모든 요소들(규범, 판결, 강제 및 기타 요소들의 구성) 뿐만 아니라 그러한 요소들을 관리하는 장치들 역시 전통적으로 규제의 대상이 되어왔던 민간영역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은 자율규제의 개념에 대한 논의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부연하자면, 자율 규제의 영역에서 다뤄지는 이러한 본질주의적 접근은 미국 IT기업의 이해관계의 표현으로, 자율규제가 정부의 회피, 정부와의 대결, 정부에서의 계산된 분리 등으로 특징지워지는 미국식 세계화 논리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 컨텐트 자율규제의 개념은 인터넷 컨텐트의 통제에 있어서 “정부, 인터넷 사업자, 정보이용자가 책임을 분담하는 시스템”으로 표현되는 것이 보다 논리적일 것이다. 합동규제(co-regulation)라는 개념은 바로 그러한 규제의 책임 분담을 잘 표현하는 용어이다.

### 3. 자율규제의 전제조건들

사람들은 흔히 인터넷은 규제가 불가능하다거나 인터넷 규제는 국민국가의 통제를 넘어서는 문제라고 말한다. 하지만 발표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와 같이, 특정한 수준의 규제가 가능할 뿐 아니라 인터넷에 참여하고 있는 각 영역들의 책임분담을 통해 그러한 규제가 수행될 수 있다.

### 3.1. 자율규제의 정당성과 목표

자율규제를 포함하여 모든 규제적 개입의 출발점은 달성수단, 즉 규제 방식이 아니라 정책목표가 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규제의 정당화는 시장이 특정한 구조적 문제들(이를테면 독점과 트러스트 같은)을 해결할 능력이 없음(시장 실패)를 근거로 제시된다. 하지만 경제적 자율규제(economic self-regulation)와 사회적 자율규제(social self-regulation)는 달리 보아야 한다. 경제적 자율규제가 시장 혹은 다른 경제생활의 조절과 관련되어 있는 반면, 사회적 자율규제는 “산업화의 치명적인 결과들로부터 사람 혹은 환경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미디어 규제, 특히 컨텐트 자율규제는 명백하게 후자의 범주에 속한다. 왜냐하면, 미디어는 사회를 형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바, 신념의 체계는 물론 국민들이 의식하고 살아가는 문화적 토양을 형성하는데 막대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미디어에는 우리사회가 보존해야 할 공익적 목표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공익적 목표들 중에서 특히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문제가 바로 “미성년자와 인간 존엄성에 대한 엄격한 보호”이다. (Price/Verhulst 2000, 142~144면)

인터넷이 제공하는 새로운 서비스들과 세계화의 확대에 관련된 논의들은 새로운 기술이 미디어 규제의 공익적 목표들에 도전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적 자율규제로서의 미디어 규제의 공익적 목표들은 기술적인 변화의 결과로 무의미해 지거나 무효화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도전이 의미하는 바는 규제의 목표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입법과 기타 장치들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요구이고, 이러한 요구는 자율규제에 대한 접근으로 이어진다.

### 3.2. 인터넷 자율규제를 위한 법적 접근의 전제

인터넷의 미디어적 특성에 적절하게 조응하는 가장 적절한 법적 접근을 밝히는 데 있어서 다음의 두 가지 문제 영역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 번째는 유해하거나 불법적인 컨텐트의 유형들을 분명하게 정의하는 일이다. 두 번째는 인터넷에서 정보가 교환되는 서로 다른 수단들 혹은 서비스 기반들(platforms)과 관련되어 있다.

불법 컨텐트, 유해컨텐트의 구분에 관한 논의는 컨텐트 규제에 관한 국내의 논의들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았었고, 어떤 의미에서는 무시되어 왔다. 하지만, 불법 컨텐트의 배포는 유해 컨텐트의 배포와는 달리 여러 가지 쳐벌들로 귀결되기 때문에, 정보와 표현의 자유를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불법 컨텐트에 전면적인 제한을 가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불법 컨텐트와 유해 컨텐트가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은 법적 규제 환경은 합법적인 유해 컨텐트의 유통을 어렵게 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게 될 것이다. (Machill/Rewer 2001, 51~52면) 이러한 상황은 특히 사업자들의 자율 규제를 어렵게 만든다. “불법”은 법의 위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불법” 컨텐트의 처리가 사업자에게 위임될 경우, 광범위한 민간 검열을 야기하거나(다음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들이 집단적으로 소송에 직면하는 상황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건전 컨텐트의 수준에 따른 각기 다른 규제체계가 필요한데, 불법 컨텐트의 처리는 법집행기구에, 유해 컨텐트의 처리는 자율규제기구에 맡겨지는 것이 적절하다. 이 문제는 본 토론회의 다른 섹션에서 다시 다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접하는 웹 사이트는 컨텐트가 인터넷을 통해 교환되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 인터넷의 서비스 기반은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어, 이메일, 에프티피(ftp), 인터넷 채팅(IRC), 뉴스그룹 등 고전적인 서비스 기반 이외에도, 실시간 전송 서비스(인터넷 방송 등), PtoP 방식의 다양한 서비스 기반들이 존재하며, 각각의 경로들은 각기 다른 목적들을 위해 이용된다. 따라서 각기 다른 규제 및 보호 방안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발표문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규제목표의 달성을 위한 “유일한 기술”이나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채팅, BBS, PtoP 등의 역동적인 컨텐트들에 대한 등급분류(rating)와 내용선별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즉, 자율규제 장치들에 대한 다중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 3.3. 자율규제 장치들

발표문은 1996년 런던인터넷상거래협회<sup>27)</sup>와 영국ISP협회<sup>28)</sup>가 동공발표했던 “R3-Safety Net Project”를 원용하여 책임, 등급분류, 신고를 자율규제의 원리로, 사업자 행동강령, 인터넷내용등급제(혹은 등급 및 내용선별 시스템), 인터넷 핫라인 등을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자율규제 장치들로 소개하고 있다. 이 세 가지 자율규제 장치들은 이미 여러 국가들의 실험을 거쳐 어느 정도 표준적인 자율규제 모델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신뢰성있는 장치들이다. 특히 인터넷내용등급제<sup>29)</sup>와 인터넷 핫라인<sup>30)</sup>은 이미 우리나라에서 시도되고 있거나 준비 중인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두 모델에 대한 논의는 “우리나라 자율규제의 모델”에 관련된 부분에서 다시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사업자 행동 강령의 문제만을 다룬다.

사실, 컴퓨터 관련 분야의 사업자 행동(또는 윤리) 강령은 매우 오래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예를 들자면, 1966년 컴퓨터 기계 협회(Association for Computing Machinery)가 행동강령을 채택하여 일국 단위의 행동강령들이 쏟아져 나왔고, 1978년에는 국제정보처리연맹(IFIP)이 윤리강령을 채택하기도 했다. (Berleur 2001) 하지만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신념을 표현하는 수준의 윤리강령이 아니다. 자율규제의 장치로서 사업자 행동강령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인터넷 컨텐트 자율규제 시스템의 한 부분으로서의 행동강령을 의미한다. 따라서 행동강령은 사업자 자율규제의 주요한 수단이며 발표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민관 합동규제 시스템의 중심축이 될 것이다.

발표문에서는 사업자 행동강령의 유형을 인터넷사업자 단체형, 정부 주도형, 개별 기업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유형 구분은 각 유형의 행동강령의 구체적인 성격을 분명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특히 어떠한 행동강령도 정부 규제에 완전히 독립되어 존재할 수 없다는 면에서 그러하다. 인터넷 사업자형이든 개별 기업형이든 선언적인 윤리강령이 아니라면, 정부 규제와 구체적으로 관련될 것이다. 물론 그러한 관계의 수준은 다양할 수 있다.

27) <http://www.linx.net/> 참조

28) <http://www.ispa.org.uk/> 참조

29) <http://www.rating.or.kr> 참조

30) 최근 안전한온라인을위한민간네트워크(<http://www.safeonline.or.kr>)가 주최한 한 워크샵에서 한국사이버 감시단(<http://www.wwwcap.co.kr>)이 민간단체형의 인터넷 핫라인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 발표자의 기억으로는 아마도 국내 최초의 인터넷 핫라인 구현에 관한 공개적인 논의일 것이다. 물론 올해 초부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대외협력팀이 인터넷 감시망 구축 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지만, 이것은 엄밀하게 표현하자면 민간형 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이다.

여기에는 정부가 행동강령 수립을 위한 형식적인 조건을 설정하는 것으로 역할을 한정하고, 행동강령의 내용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사업자들에게 완전히 위임하는 형태, 정부가 형식 뿐 아니라 행동강령이 만들어지는 실질적인 조건들까지 설정하는 형태, 사업자들이 전체에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협상의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비공식적인 규범이 법 질서의 일부가 되게 하는 형태(이 경우 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임)가 있을 수 있다. (Price/Verhulst 2000, 137~138면) 행동강령의 구체화는 바로 이러한 다양한 수준의 행동강령 중 어느 쪽이 적절한가를 판단하는 일일 것이다.

### 3.4. 사업자 자율규제

발표문은 자율규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기본 전제로 민간영역, 특히 사업자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왜냐하면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자신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명확한 인식 없이는 정부영역의 지원과 정책이 의미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제도적 의미에서 자율규제의 주체는 인터넷 사업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사업자 자율규제는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그렇다면,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 발표문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방안으로, 사업자 책임의 내용을 분명히 해주고,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해 사법권한 행사 및 법집행 절차를 합리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자들은 보다 구체적인 동기부여를 요구할 것이다. 왜냐하면, 첫째 사업자 자율규제는 새로운 비용을 발생시키며, 둘째, 자발적 시스템은 “무임승차” 문제를 불가피하게 불러올 뿐 아니라 셋째, 앞서 언급한 문제들이 해결되더라도 여전히 사업자들에게 자율규제는 어렵고도 고통스러운 결단이기 때문이다.

자율규제 장치들의 실현, 특히 기술적인 실현(내용선별 소프트웨어[혹은 인터넷 접속 서비스]의 보급, 자율심의를 위한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 새로운 컨텐츠의 생산, 관련된 연구비용 등)은 많은 비용을 요구한다<sup>31)</sup>. 이익을 목표로 하는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에 대한 확신없이 이러한 분야에 투자하기는 사실 어려울 것이다. 또한 새로운 시장(안전한 컨텐트 유통 시장)의 출현은 높은 수준의 이용자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를 필요로 하는데, 사업자들은 이러한 이용자 리터러시의 제고를 위한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무임승차”의 문제는 보다 심각한데, 자율규제의 발전과 강령의 준수를 위해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자들이 있는 반면, 다른 사업자들은 그것을 무시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경쟁하는 사업자들의 자율규제를 어렵게 만들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인터넷 사업자들의 사업관행(불법·유해정보를 묶인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자들을 네트에 끌어두는 것으로 이익을 얻거나 그러한 상황을 필요악이라고 생각하는 관행) 속에서 불법·유해 컨텐트에 대한 자율규제를 결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중요한 것은 자율규제에 대한 사업자들의 확신, 다시 말해 비용 대 이익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일이다. 이 문제는 윤리적으로 선언되어야 할 성격이 아니라 실증적으로 증명되어야 할 성격의 일이다. 사업자들이 상업적 측면 뿐 아니라 사회적·윤리적 우월성을 가질 때 더 큰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AOL의 경

31) <http://www.saferinternet.org> 참조. EC DG-13의 인터넷 실행계획 홈페이지는 자율규제에 관련하여 EC 가 지출한 사업비와 민간에서 지출한 비용을 비교적 상세하게 밝히고 있다.

우처럼). 이 부분은 앞으로 연구가 집중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사실 사업자 자율규제의 동기부여에는 정부의 역할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발표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업자 책임의 내용을 분명히 해주고,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집행절차의 합리화는 물론,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또한 자율규제를 주저하는 사업자들의 결심을 이끌어 내기 위한 엄정한 법집행과 사업자들이 현실적으로 부담하기 힘든 이용자 미디어 리터러시의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awareness)를 정부가 책임지는 등의 구체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 3.5. 정부의 역할

인터넷 컨텐트 자율규제에 있어 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발표문에서는 정부의 역할을 따로 다루지 않고 자율규제의 여러 개념 혹은 영역들에 걸쳐 묘사해 놓았기 때문에 발표자의 생각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대체로 “지원”과 “협력”으로 요약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정부의 역할로 설명하고 있다. 앞서 자율규제의 개념을 논의하면서 언급했듯이 그러한 방향에서는 자율규제 시스템에서 정부의 역할을 온전하게 설명하기 어렵다. 또 다른 의미에서 자율규제는 법에 의해 강제되는 규제(enforced self-regulation)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자율규제에 관련된 입법행위의 주체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대부분의 자율규제의 장치들, 기구들은 입법적인 뒤받침없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 실례로, 영국의 ISPA 행동강령과 호주의 IIA 행동강령 등 실효성있는 사업자 강령들은 모두 자율규제 관련 법들과 연동하여 운영되고 있다. 자율규제 관련 입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 토론회의 법·제도 관련 섹션에서 다시 자세하게 다루어질 것이다.

정부는 또한 자율규제 장치 및 자율규제 기구들에 대한 감독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는 자율규제 시스템의 효율성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정부의 감독은 자율규제 기관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하고 무임승차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어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높여 줄 것이다. 또한 정부의 감독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데도 궁극적인 역할을 하는데, 자율규제 기구 및 장치들이 헌법 상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민간 검열을 행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감독해야 한다. 민간 검열은 법집행절차에 의해 여과될 수 있는 정부에 의한 검열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는 제3자의 위치에서 자율규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히 중요한 정부의 역할은 자율규제의 중요한 원천인 이용자의 미디어 리터러시를 높이는 일일 것이다. 자율규제가 사업자들에게 과외비용으로 인식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자율규제를 통해 만들어지는 안전하고 유익한 시장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전적으로 공익적인 일이며 정부의 몫이다.

정리하자면, 자율규제 시스템에서 정부는 자율규제 기구들의 협력·지원자일 뿐 아니라 자율규제 관련 입법의 주체이자 그 법의 실현을 위한 감독자이며, 자율규제 시스템의 순수히 공익적인 부분에 참여하는 제3자이다.

#### 4. 자율규제 장치들의 구현을 둘러싼 문제들

가장 실천적인 의미에서, 인터넷 컨텐트 자율규제의 문제는 자율규제 장치들의 구현에 관련된 문제이다. 다행히 우리는 인터넷 내용규제에 관련된 각종 자율규제 장치들의 실험과 그 실패와 성공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여과없이 경험할 수 있었다. 발표문에 소개되고 있는 사업자 행동강령, 인터넷내용등급제, 인터넷 핫라인 등이 바로 그러한 인터넷 컨텐트에 대한 자율규제를 실현하는 장치들이다.

발표문에서 개별 장치들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각 장치들에 대한 설명은 필요없을 것이다. 다만 여기서 덧붙이고 싶은 것은 그러한 자율규제 장치들의 구현 과정에서 지켜져야 할 원칙이라 할 수 있는 이용자에 대한 권한 부여와 이용자에 대한 교육·홍보의 중요성이다.

사실 위에서 열거한 자율규제 장치들은 인터넷 컨텐트 자율규제 관련 논의의 새로운 출발점을 제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베텔스만 보고서<sup>32)</sup>에서 체계적인 시스템으로서 처음 웹에 소개되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이듬해 봄에 책<sup>33)</sup>으로 다시 출판되었는데, 재미있는 것은 책으로 출판된 내용에는 처음의 보고서에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문제가 자율규제 시스템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첨가되었다는 점이다. 미디어 리터러시가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자율규제 시스템이 왜 인터넷의 미디어적 특성에 잘 들어맞는 규제 방식인지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다.

토론자가 보기에, 여기서의 미디어 리터러시는 사업자 자율규제의 영역에서 이미 다루어졌던 미디어 리터러시와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 다시 말해 그것은 자율규제의 종국적인 목표로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즉 이용자로의 권한위임(user empowerment)를 의미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인터넷은 개방성·익명성을 속성으로 지니고 있는 동시에 쌍방향적인 미디어이다. 이러한 쌍방향적 미디어에서 이용자는 정보의 소비자이자 생산자이며 서비스의 고객이자 제공자이다. 따라서 이 새로운 미디어에서 이용자의 역할은 거의 절대적이다. 자율규제 장치들은 이러한 이용자 역할의 증대를 규제의 부정적인 조건으로 보지 않고 규제의 긍정적인 조건으로 이해한다. 그러한 이해는 자율규제의 원칙을 구성하는데, 바로 이용자 권한강화 및 그것을 위한 교육·홍보(awareness)이다.

이용자권한 강화는 모든 자율규제 장치들에 구현되는 자율규제의 원칙이다. 예를 들어 인터넷 내용등급제(PICS기반의 등급시스템)는 등급분류와 내용선별 과정을 분리하고 등급분류를 어느 한 기관이 독점할 수 없게 만듦으로써 컨텐트 선택의 주체를 규제기관에서 이용자에게로 이동시킨다<sup>34)</sup>. (Balkin, Noveck & Roosevelt 2000, 245~258면) 인터넷 핫라인은 인터넷 상의 특정 컨텐츠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신뢰성있는 경로를 제공함으로써 컨텐트 문제에 대한 이용자들의 권한을 강화시킨다. (Machill & Rewer 2001, 60~61면) 이러한 장치들은 다시 사업자 행동강령과 정부의 자율규제 입법에 포함됨으로써 그러한 이용자권한 강화를

32) [http://www.stiftung.bertelsmann.de/internetcontent/english/frameset\\_home.htm](http://www.stiftung.bertelsmann.de/internetcontent/english/frameset_home.htm) 참조

33) Jens waltermann & Marcel machill(ed). Protecting Our Child on the Internet: Towards a New Culture of Responsibility. Bertelsmann Foundation Publishers, Gütersloh. 2000.

34) 이러한 등급시스템의 원리를 잘 보여주는 예로 New ICRA 등급 시스템을 들 수 있다.  
<http://www.icra.org> 참조

제도화시킨다.

다시 말해 인터넷 컨텐트 자율규제는 인터넷의 미디어적 특성에 잘 조응하는 장치들을 통해 실현되고 있으며 또 실현되어야 한다. 인터넷 컨텐트 자율규제가 인터넷 내용규제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뿐 아니라, 인터넷 미디어 자체와 표현의 자유에 잘 조응할 수 있다는 사실은 왜 인터넷 컨텐트 자율규제를 고민해야 하는지에 대한 보다 적절한 대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육·홍보(awareness)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고 토론을 마치고자 한다. 사실 교육·홍보라는 용어는 영어로 표현되는 'awareness'라는 용어의 한 측면(행위적 측면)만을 의미할 뿐이다. 내용적인 의미에서 'awareness'는 이용자들의 자각, 혹은 의식의 고취를 의미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교육(education)과는 구별되어야 할 용어이다. 좀 무리한 해석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교재, 강사, 교육 시스템, 도덕(등의 체계, 규범) 등을 떠올리게 하는 교육(education)이라는 말과는 달리 'awareness'는 경험, 자극, 실천, 행동(에 입각한 교육 내지 홍보) 등을 떠올리게 한다. 다시 말해 인터넷 매체의 특성에 맞는 혹은 인터넷 컨텐트 자율규제의 한 부분으로서의 교육·홍보의 방향까지도 지시하고 있는 용어인 것 같다.

좀 더 부연하자면, 인터넷 컨텐트 규제의 목표가 특정한 행동의 처벌 뿐 아니라 그러한 행동의 억제 혹은 예방까지 포함한다면, 규제의 효과는 행동의 변화 및 새로운 행동의 실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이고, 그것은 무엇보다도 그러한 행동이 경험되는 공간, 즉 네트 안에서 일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이다. 이를테면, 정보이용자들은 네트 바깥의 등급분류 위원회에서 매겨진 등급을 준수보다는 자신이 네트의 언어로 스스로 등급을 매기고 그것을 이용하여 자신이 접하는 컨텐트를 통제하는 경험 속에서 더 많은 행동의 변화와 새로운 행동과 규범을 경험하고 습득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 컨텐트 자율규제 시스템의 일환으로서 교육·홍보는 규제의 궁극적인 목표, 네트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통제에 접근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 5. 남는 문제들

토론자로서 발표자의 입장에 별다른 이견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 사소한 문제들 하지만 원칙적으로 볼 때 발표자의 입장과 다르지 않은 문제들을 중심으로 인터넷 컨텐트 자율규제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보았다. 규제의 방식과 목표에 대한 분명한 구분을 요구하면서 인터넷 컨텐트 규제와 표현의 자유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는데, 그것은 문제를 회피하기 위함이 아니다. 인터넷 컨텐트 규제의 한 방식으로서 자율규제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발표자가 생각하기에, "표현의 자유"는 인터넷 규제의 한 방식, 또는 인터넷내용등급제 같은 하나의 장치들에 한정하여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포괄적이고 중요한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전면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또한 우리가 경험했던 현대사 속에서, "표현의 자유"와 "정의의 구현" 같은 사회적 합의에 관련된 문제들이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적절하게 토론해 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흥분하고 단정지어 잘못된 결론으로 나아가기도 한다. "표현의 자유"를 문제삼는다고 해서 미디어 규제의 목표에 관한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합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논의는 규제 방식의 변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 및 적절한 규제 방식에 대한 논의 속에서 함께 녹아들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

- Balkin, Jack M., Beth S. Noveck & Kermit Roosevelt (2000). Filtering the Internet: A Best practices Model. pp. 199~291. in Protecting Our Children on the Internet: Towards a New Culture of Responsibility. Bertelsmann Foundation Publishers, Gütersloh.
- Berleur, Jacques (2001). Self-Regulation: Content, Legitimacy, and Efficiency: Governance and Ethics. Proceeding INET 2001. Conference Proceedings, ISOC. Stockholm. Sweden. (available in web, [http://www.isoc.org/isoc/conferences/inet/01/CD\\_proceedings/G06/Berleur.htm](http://www.isoc.org/isoc/conferences/inet/01/CD_proceedings/G06/Berleur.htm))
- Burkert, Herbert (2000). The Issue of Hotlines. pp. 263~318. in Protecting Our Children on the Internet: Towards a New Culture of Responsibility. Bertelsmann Foundation Publishers, Gütersloh.
- Machill, Marcel & Alexa Rewer (2001). Internet Hotline: Evaluation and Self-regulation of Internet content. pp.45~79. Verlag Bertelsmann Stiftung. Gütersloh.
- Price, Monroe E. & Stefaan G. Verhulst (2000). The Concept of Self-Regulation and the Internet. pp. 133~198. in Protecting Our Children on the Internet: Towards a New Culture of Responsibility. Bertelsmann Foundation Publishers. Gütersloh
- Williams, Nigel (1999). The Contribution of Hotlines to Combating Child Pornography on the Internet. Proceedings combating child pornography on the internet. Conference Proceedings, Foreign Ministers of Austria. Vienna, Hofburg. ([http://www.stop-childpornog.at/ab\\_williams.asp](http://www.stop-childpornog.at/ab_williams.asp))

# 인터넷 콘텐트 규제와 청소년보호

김 기 중 (동서법률사무소 변호사)

1. 표현행위에 대한 규제는 그 매체를 불문하고 형사적 제재와 행정적 규제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민사적 금지청구의 대상이 되는 표현행위를 규제의 유형으로 상정해 볼 수 있으나, 정부 규제나 자율규제를 논하는 자리에서 개인간의 문제인 민사적 금지청구의 대상이 되는 표현행위를 굳이 범주화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 2. 이른바 불법정보와 규제주체

우선 형사적 제재의 대상이 되는 표현행위를 누가 규제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황성기연구원과 황승흠교수는 발표문에서 이 문제를 분명하게 지적하지 않거나 당연히 행정규제의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 점에 동의하지 않는다.

황승흠교수는 불법정보와 청소년유해정보를 구분하며 형사적 제재의 대상이 되는 표현행위를 ‘불법정보’로 분류하는 듯하고, 황성기연구원도 같은 방식으로 분류하면서도 불법정보의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적하지는 않고 있다. 우선 불법정보가 무엇인지 정의하지 않고서는 불법정보에 대한 취급방법을 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아래에서는 형사적 제재의 대상이 되는 표현물을 불법정보라 한다. 황승흠교수는 정보통신망이용음란죄의 대상이 되는 표현물,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대상이 되는 표현물, 청소년이용음란물죄의 대상이 되는 표현물, 저작권법이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죄의 대상이 되는 표현물, 국가보안법과 선거법위반죄의 표현물을 불법정보로 예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견해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불법정보에는 명예훼손죄의 대상이 되는 표현물도 중요한 예시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다른 형사적 제재의 대상이 되는 표현물을 어떻게 취급할지의 문제를 우선 논외로 하고, 저작권법이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죄의 대상이 되는 표현물을 불법정보에 포함시키면서 자율규제나 행정규제로 이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은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가장 강한 형사적 제재조차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표현물에 대해 피해자의 고소와 같은 절차의 유무에 관계없이 이를 불법정보로 사회에서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 저작권법이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죄의 대상이 되는 표현물을 행정규제시스템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권리자의 침해주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한다.

셋째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대상이 되는 표현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또는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을 행정규제 시스템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피해자의 이의제기 내지 삭제요청 등과 같은 행위를 전제로 해야 한다.

넷째 형사적 제재의 대상이 되는 표현물(저작권법위반 내지 명예훼손죄의 표현물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 또는 처벌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 사법적 규제에 선행하거나 사법적 규제와 함께 행정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타당한

지는 의문이다. 표현행위를 처벌하는 형사법 규범은 대부분 불확정 개념으로 되어 있는데다, 사회가 처한 현실이나 그 행위가 이루어진 조건과 당사자 사이의 관계에 따라 그 결론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표현행위에 대한 형사적 제재는 사법기관의 엄밀한 증거조사와 사려깊은 고려 끝에 이루어지며, 사법기관에 의해 일정한 결론이 내려진 이후에도 그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이 다반사다. 형사적 제재의 대상이 되는 표현물은 크게 ‘음란’, ‘명예훼손’, ‘이적표현’ 등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으며, 어느 것 하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지 않는 것이 없다.

이런 어려운 주제에 관해 효율성과 신속성을 추구하는 행정부분에서 규제를 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오만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특정 대기업의 비리를 폭로하는 표현물을 인터넷에 게시하였다고 할 때 이를 명예훼손인 불법정보로 보고 삭제하도록 하는 행정규제를 하는 것이 타당한가. 특정 정당의 총재와 상대 정당의 특정 여성의원이 서로 정치적 뜻을 같이하는 것을 본 시민이 두 사람의 정치적 야합을 비판하기 위해 “두 사람이 들러붙었다”고 하며 선정적인 자태로 얹혀있는 두 사람을 상상하며 그런 만화를 게재했을 때 명예훼손이나 음란인 불법정보라 하여 삭제하도록 하는 행정규제를 허용할 수는 없다고 본다.

황성기연구원의 견해처럼 불법정보에 대해 사법규제 이외의 부분(황성기연구원은 이 부분을 인터넷감시망이라 부른다)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불법정보에 대한 신고 및 고발 정도일 것이다.

### 3. 이른바 불법정보의 범위

우리 사회에서 표현물에 대한 행정규제나 자율규제 모델을 찾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이른바 불법정보의 범위가 과도하게 넓다는 점이다. 이는 불법정보의 범위를 과도하게 넓혀놓은 사법부 때문이지, 우리의 역량이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 사법부는 표현행위에 대한 형사적 제재의 대표적인 3가지 범주, 즉 음란, 명예훼손, 이적표현 등 범주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익형량의 관점에서 결론을 내려왔기 때문에 3가지의 범주 모두에서 유죄를 인정하는 범위가 넓다. 그 정도는 특히 음란의 경우에 더욱 심하다.

사법부가 허용하고 있는 성표현의 정도를 전제로 하고서는 적어도 인터넷분야에서 어떠한 형태의 행정규제나 자율규제 모델도 제 기능을 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법과 제도의 모델을 제안한 황승흠교수나 황성기연구원의 발표는 사실 큰 실효성이 없다. 행정규제의 모델을 주장하는 기관이나 학자 등은 먼저 사법부에 대해 불법정보의 범위를 엄격하게 좁혀 달라고 청원하는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법원이 설정한 성표현의 한계를 보자. 법원은 체모가 드러난 누드상태에서 우유를 마시며 우유의 일부를 몸으로 흘려보내는 모습의 이승희 누드사진은 물론이고 체모가 드러나지 않은 황색잡지 오렌지걸(모델의 의상상태나 자세가 과도하게 선정적이라는 이유)도 음란물이라고 하였으며 심지어 한 농부의 고속도로상에서의 알몸시위를 성기를 노출하였다라는 이유로 공연음란죄로 처벌하기까지 하였다.

사법부가 설정한 이같은 엄격한 기준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자율규제나 행정규제를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한다.

첫째 사회에서 제거되어야 하는 불법정보인 음란물의 수위가 이 정도면 현재 인터넷의 표현수준에 비추어 모든 규제시스템의 역량은 불법정보를 추려내는데 동원되더라도 모자랄 것이다. 불법정보도 추려내지 못한 상태에서 행정규제나 자율규제가 제 기능을 할 수는 없다. 행정규제나 자율규제는 불법정보는 발견하여 신고하는데 그 임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역량을 투여하여 불법정보를 찾아내 신고한 후 그 판단을 사법기관에 맡기고, 남은 역량을 나머지 넓은 범위의 표현물에 대해서 청소년이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판단되는 표현물을 가려내는 일을 하는 데 그 임무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국제적인데다 바다와 같이 넓은 정보망이라는 특성 때문에 인터넷의 내용규제는 특정 사회에 직접적인 해를 가할 수 있는 범위의 표현물에 대한 최소규제만이 구현이 가능하다. 그런데 행정규제 내지 자율규제가 결코 넘어설 수 없는 마지막 기준인 사법부의 제한기준은 현재 우리 사회의 도덕질서와 사회윤리를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최대규제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행정규제나 자율규제도 최대규제기준을 적용하여 인터넷에 개입해야 하는데, 인터넷에 대한 최대규제기준은 현실에서 구현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형평성의 문제, 선별취급의 문제, 실효성의 문제, 검열의 문제, 타당성의 문제 등이 제기되는 것이다.

황성기연구원은 사법기관이 그 권한행사를 다소 경직되고 신중하지 못하게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문제제기를 하였는데, 일단 그 문제제기는 타당하나 법원 판결의 문제점은 성표현에 대해 경직되고 신중하지 못한 태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도덕질서의 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하여 혼란한 사회에서 혼들리지 않은 모범을 보이겠다는 비현실적인 지사적 이상주의에 있다고 생각한다.

사법부의 기준을 뒤짚어 말하면 음란물이 아닌 표현물의 수준은 체모가 드러나지 않은 알몸이거나 체모가 드러나지도 않고 과도하게 선정적이지도 않은 성표현물 정도인데, 청소년유해매체의 기준을 조금만 상향조정하면 사법부의 기준은 곧 청소년유해매체의 기준이 될 수 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기준을 조금 도식적인 예로 설명하면, 사람의 전면누드사진중 체모나 성기가 드러나 있으면 음란물이고, 손으로 체모나 성기를 가리면 성인물이며, 여성누드의 경우 체모외에 가슴까지 가리면 청소년물로 판정하게 될 것이다(남자누드의 경우 성기만 가려도 청소년물이 될 것이다). 청소년허용기준이나 성인허용기준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표현물에 대한 모든 심의제도(방송위, 유선방송위, 영상물등급위, 간행물윤리위, 청소년보호위, 정보통신윤리위)는 성인에 대해서 성적 표현물을 어느 범위까지 허용하고 허용하는 표현물중 어느 범위의 표현물을 특별히 관리할 것인가(이른바 X등급)와 같은 고유의 업무를 하지 못하고, 오로지 미성년자에게 접근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모든 표현물 심의기구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하부기관이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청소년보호와 인터넷내용규제를 위한 모든 주장들은 우선 우리 사회에서 허용되는 성표현의 수준을 높이는 쪽으로 모아져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음란물의 범위가 먼저 대폭 축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기 논의되는 등급제나 자율규제시스템 등은 현실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음란물에 대한 기준은 적어도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준, 즉 “인간존엄 내지 인간성을 왜곡하는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표현”의 경우처럼 인간성 침해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남녀의 성기를 직접 묘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남녀의 성관계를 직접 묘사하는 것도 그것이 인간존엄을 왜곡하는 것이 아닌한 허용되는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 이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제도의 측면에서 청소년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 현재의 청소년 보호에 관한 논의는 사실은 청소년 보호에 관한 논의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음란물(현재 사법부의 판단기준에 의한)을 어떻게 추방할 것인가, 해외부분의 음란물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의 문제일 뿐이다.

4. 황승흠교수의 발표문중 우리 법제가 비체계적이며 낙후하다는 등의 현상인식에 관한 부분에는 동의한다. 특히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 제도의 문제점 지적에 공감한다. 하지만 개선 방향으로 제시한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동의하기 힘들다. 그 이유는 첫째 앞에서 지적한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규제제도를 형식적으로 배치해 놓았다는 점, 둘째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에 대한 고지책임을 부과하자는 주장은 이미 지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법률 개정법률안 초안(이른바 통신질서확립법)에 규정되었다가 이후 다양한 비판에 직면하여 삭제된 제도라는 점, 셋째 청소년유해매체물 제도를 인터넷에 맞게 수정하자는 주장은 청소년 유해매체물 제도 자체가 인터넷에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제도인지 의문이며 이 제도가 과연 내용등급제와 어울리는 제도인지도 의문이라는 점 등 때문이다.

# 법·제도의 정비에 붙여

한상희 (건국대 법과대학 교수)

## 1. 매체규제의 전제사항

### ① 매체규제는 법률문제가 아니라 헌법문제

- 최고가치로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서의 의미
  - 사전억제금지, 엄격심사기준,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의 법리
-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방법
  - 방법규제(method regulation)
  - 내용규제(content-neutral regulation): 구조규제(structure regulation)
  - 성향규제(content-tendency regulation)

### ② 규제가 가지는 3면적 구조

- 표현자의 기본권 vs. 국가의 공익(사회질서) vs. 매체산업의 보호
- 국가는 이 부분에서 직접규제자로 기능하거나, 간접적 조정자로 기능할 수 있음.
  - 전자의 경우-국가는 스스로 가치를 결정하고 이를 강제함.
  - 후자의 경우-매체이용자와 매체기업간의 역관계에 의하여 가치가 결정되고 국가는 이 가치의 실천을 담보하는 지위를 가짐: 하지만, 이 경우 매체이용자를 매체「소비자」로 파악할 것인가, 아니면 인격발현자로 파악할 것인가에 따라 국가의 역할이 달라질 수 있음.
- 규제의 비용은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하는가?

### ③ 규제의 구조문제

- 규제유형: 매체특성에 의거한 개별적 규제 vs. 내용특성에 의거한 일반적 규제
- 규제목적: 일반적 사회윤리 보호 vs. 청소년(등 사회적·문화적 약자)보호
- 규제방법: 자율규제(행정지도 전제) vs. 행정규제(규제의 처분성 인정) vs. 형사규제
- 규제절차: 감시, 감독, 통제, 교정, 처벌의 initiatives와 procedure.

## 2. 「개념정의의 명확화」와 관련하여

### ① 전기통신개념에서 인터넷개념으로의 전환은 필수적 - 전통적 의미의 통신과 구별하여 정보통신의 특성을 반영하는 개념화작업이 필요

### ② 사업자 개념과 책임범위의 정비

- 정보통신망접속서비스제공자·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정보제공자의 구분의 타당성문제
  - 행위자개념과 책임귀속자개념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가? - 책임귀속의 문제는 당해 행위 또는 결과에 대한 실질적 지배권(여기서는 편집권)의 여하에 의하여 결정됨
- 책임개념의 명확화 필요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세분할 경우 그 각각에 민사

적 책임(이 경우 선관주의의무인정여부도 결정되어야 함), 행정적 책임(행정상 의무불이행 책임 또는 행정질서위반책임) 및 형사적 책임(정범책임 또는 공범책임)을 구분하고 그 범주에 따라 책임귀속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책임범위와 관련하여 제2안(정보매개서비스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책임이 없으나, 규제기관의 삭제고지에 대해서는 복종할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과태료부과)의 문제점
  - 삭제고지의 법적 성격이 명확해져야 함.(행정지도? 처분? 통지?)
  - 사후적 위험·결과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제1안에 비하여 제2안은 사전적 예방의 책임을 부여하고 있어 사전예제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음.

### ③ 불법정보 vs. 청소년 유해정보의 이원화

- 헌법 제23조 제1항의 취지상 반드시 요청되는 작업임.
- 하지만, 불법정보의 행정상 효과에 대하여는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의 법리와 연계지울 필요가 있음.
  - 발제에서 말하는 불법정보의 경우 행위가 야기하는 위험 또는 결과에 대한 사후적 통제의 대상 - 이를 사전적으로 통제할 경우, 특히 행정규제에 의한 통제방식을 취할 경우 검열 또는 사전허가제에 의한 위헌적 방식이 될 가능성이 많음.
  - 따라서 별도의 법률규정을 두어 엄격한 요건통제하에 행정적 삭제처분 내지는 삭제고지제도를 설치하여야 할 것임.

## 3. 불법정보에 대한 규제시스템에 관하여

- 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직제, 구성, 권한, 절차, 불복방법 등에 관한 별도의 논의가 필요함
  - 매체규제 특히 인터넷규제는 표현의 자유에 있어 가장 침예한 기본권적 가치가 달려 있는 부분임
  - 이에 그 규제기관으로서의 윤리위원회는 방송위원회 못지 않는 민주적, 절차적, 실체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함.
- ② 삭제고지제도에 관하여
  - 불법정보에 대한 삭제고지의 법적 성격에 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삭제고지는 처분인가 아니면 통지행위인가 또는 행정지도인가?
    - 이 성격여하에 따라 그 발동요건이나 효력, 불복의 방식이 달라짐.
- ③ 정보재심위원회에 관하여
  - 행정구제법상 원처분주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는가?
  - 삭제고지에 대하여 잠정적 효력을 인정하여 가처분적 성격을 부여하는 것은 법체계상 유효할 것인가?

## 4. 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에 관하여

- ① 포괄지정제도의 활용: 사업자 보호를 위하여 포괄지정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설정 및 고시가 있어야 할 것임(콘텐츠의 개체성·가분성의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음-e.g. 김교사 부부나체사진사이트의 경우)
- ② “연령확인의무는 원칙적으로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함”
  - 왜 정보제공자가 아닌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여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설시 필요함.
  - 만일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가 의무를 부담한다면, 이 또한 편집권을 가지는 정보제공자에 상당한 지위를 가지게 되고 또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이 지워져야 할 것임.
- ③ 정보통신망접속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기술적 장치 마련의무 및 대이용자홍보의무는 동 제공자의 영업비용의 증가요인이 됨 – 이에 대한 보상적 규정이 존재할 필요는 없는지?

## 5. 기타 문제

- ① 실체적 규제기준의 확립
  - 콘텐츠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시스템이 현재 방송위원회, 영상물심의위원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어 매체별 특성을 감안한다 할지라도 그 기준설정에 있어 상당한 괴리가 예상될 수 있으며, 더러 실재하기도 함.
  -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최소한 이들 네 기관간에 기준의 통일을 위한 협조·협의체제를 구축하고 이견을 조정할 수 있는 틀(예컨대, 청보위에 조정역부여)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② 자율규제의 신화?
  - 인터넷산업의 특성상 사업자단체 또는 정보제공자단체의 설치·운영이 가능할 것인가?
  - 자율규제는 반드시 민주적·진보적인가? 혹은 이익집단화된 단체와 정부의 조합주의적 타협만을 조성할 가능성은 없는가?
  - 행정적 규제는 반드시 억압적, 퇴행적인가?
- ③ 사전억제는 모두 검열인가?
  - 내용중립적규제와 내용성향규제는 구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보호라는 공익목적상 내용중립적규제는 필요악 – 이를 구조규제의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발상의 전환과 기본적 연구조사가 필요함.

# “기술적 접근방안”에 대한 검토의견

한 동 훈 (한국통신 인터넷통신팀 국장)

## 1. 기술적 구현방법론

- 본고에서 제안한 유해물 필터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적 접근 방안은 과거 ISP에게 인터넷 국제회선에서 유해물 차단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에 비해 한층 진일보된 접근방법론으로 인식
-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경우 각 ISP별 통신망 구성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방식을 적용할 수는 없지만 현재 가능한 방법으로는 ADSL의 사업자측 장비인 DSLAM과 NAS(BRAS)를 이용하여 구성할 수 있음
- 즉 NAS의 VR(Virtual Router) 기능을 이용하여 유해차단서비스를 원하는 가입자의 트래픽을 분리후 유해사이트 URL인 경우 차단 DB목록 조회후 연결을 거부하는 방식과, DSLAM에서 서비스가입자와 비가입자의 연결 (VC)을 서로다른 VP로 분리. ATM교환기에서 서비스가입자를 위한 별도의 특정 NAS(BRAS)로 트래픽을 우회시킨후 차단 DB목록과 비교하여 차단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 있음
  - \* NAS 장비별 VR 기능 제공수
    - . Redback: 100개, Unisphere: 50개, Shaster: 64개, Assured: 8개

## 2. 검토의견

- NAS의 VR 기능을 이용한 차단은 L-4 스위치와 차단 DB 정보시스템이 필요하며, 패킷 처리과정에서 지연등 성능저하 발생이 예상되며 시스템의 성능 및 동시가입자수 등을 고려한 보다 구체적인 기술적 검증이 필요
- URL에 의한 차단효과는 차단목록 데이터베이스와 상관 관계가 깊기 때문에 DB 충실도가 매우 중요함 그러나, 전세계의 유해사이트의 수에 비해 제한적인 수준이므로 효과여부는 미지수 일것으로 판단됨
- 결론적으로 본고에서 제안한 유해사이트 차단방식은 각 ISP별 통신망 구성 방식에 적합한 방법론을 찾아 구현할 수 있다고 사료되나 실제 서비스의 도입여부는 ISP의 영업전략

에 좌우되는 것으로 시장원리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안임

- 대안으로 통신망에서 단순히 URL 필터링 기능에 의한 차단방식 보다 최근 새로운 기술인 MPEG-7을 이용한 이미지(질감)차단 검색방식이 유해사이트 차단에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기술적 접근방안”에 대한 검토의견

신 종 철 (송우I&T 연구소장)

## 1. 인터넷의 발전과 영향

- o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 확대
  - 2001년 6월말 기준으로 2,000만 이용자 돌파
  - 이중에서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가 약 600만 정도
- o 2004년까지 차세대 인터넷망 구축 추진 중
  - 통신 속도의 고속화 (고정 이용자 25 Mbps, 이동 이용자 2 Mbps)
  - 실감형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
  - 유무선 서비스의 통합
- o 인터넷은 단순한 통신 수단이나 의사 전달을 위한 매체의 차원을 넘어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도하는 사회적 기반구조로 자리 잡음
  - 누구나, 어떤 내용이나, 누구에게나 무제한적으로 전달 가능
  - 사회적 가치 기준보다 개인적 가치 기준이 우선 적용됨
  - 공급 측면에 대한 규제나 통제의 어려움
  - 상업주의의 범람 가능 (성인 인터넷 방송 등)
- o 미리 변화와 발전의 방향을 예측하고 미리 대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음

## 2. 정부의 역할

- o 인터넷 내용 등급제
  - 영화나 비디오 등과는 달리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생명주기가 짧으며, 컨텐츠 제공자가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효율적 실행의 어려움이 예상됨
  - 따라서 공급자보다는 수요자 측면의 보호정책이 바람직함
- o 인터넷 기술과 컨텐츠의 변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미리 대비책을 준비하기 어려움. 따라서 규제나 규정은 최소화하는 대신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o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인터넷 청정지역과 준청정지역의 설정을 제안함
  - 청정지역 (학교) : 정부 주도로 엄격한 보호체계 구축  
학생 및 지역사회에 대한 개방 확대 및 활용 촉진

- 준정정지역 (가정, PC방, 도서관 등) :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민간 사업자에게 개방적 시스템  
구축 유도 민간 사업자(ISP, 필터링서비스제공업자 등)의 역할 확대

o 정부와 민간 사업자의 역할 분담

- 정부 : 시장원리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방향과 지침의 제시

사업자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지원 대책 (차단목록 DB 구축 등)

- 민간사업자 : 사용자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개발

상호 경쟁을 통한 서비스 향상

지나친 상업주의 경계

o 특히 정통부와 ISP는 사용자 확대측면에만 관심을 두지 말고,

인터넷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과 적극적 자세가 필요함

### 3. 실행 방안

o 차단목록 데이터베이스

-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며, 매일매일 새로 생겨나고, 또 변화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자료의 확보와 지속적인 개선이 중요함
- 데이터베이스의 품질이 차단의 효율성을 좌우함
- 심의기구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 현실적으로는 민간사업자를 육성하여 사용자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함
- 그러나 국내 시장 규모를 감안하여 육성 및 지원대책이 필요함

o 학교 (청정지역)

- 각 학교마다 프록시 서버 설치 (초중고교 약 10,000개)
- 주기적인 차단목록 개선을 포함한 운영과 관리는 외부 전문가에게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함
- 스마트 등을 활용하면 직접적인 비용부담의 경감 가능

o 가정, PC방, 도서관 등 (준정정지역)

- PC에 설치하는 차단 소프트웨어는 실효성이 부족함
- ISP에서 부가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 전문 서비스제공자가 가입자 서비스로 제공하는 방안도 있으며, 미국에서는 연 5만원 정도의 회비로 상용화되고 있음

구 분		사용자 PC	필터링 서버
PC용 차단 소프트웨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 차단 S/W + 차단목록 DB</li> <li>o 특정 단어나 패턴 검색방식의 차단 S/W</li> </ul>	
ISP 필터링 서비스	사용자 인증 시스템 경유		서비스 가입자를 식별하여 등록된 가입자에게 필터링 서비스 제공
	외부 네트워크 직접 연결	<p>다음 연결지점을 고정시키는 간단한 S/W 설치</p>	외부 네트워크 연결지점마다 필터링 서버 설치  접속된 가입자에게 필터링 서비스 제공
가입자 서비스		관리용 S/W 다운로드 (사용자 등록 및 권한 설정)	차단목록 DB 사용자에 따라 차별적 서비스 제공

청소년보호 2001-10

청소년사이버문화 정책의 수립 필요성과 방안

발행인 金聖二

발행처 國務總理 青少年保護委員會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편 집 青少年保護委員會 保護基準課

전 화 (02) 3703-2072

발행일 2001. 7. 2.

인 쇄

ISBN 89-8473-061-0